이 과제는 2010년 고용노동부의 학술연구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음

정부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평가(Ⅴ)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 -

2010. 08.

연구기관: 한국고용정보원

고 용 노 동 부

본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용역과제로 한국고용정보원(총괄연구책임자: 주무현)
에서 2010년 수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제 출 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의 수탁연구과제 『정부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 08.

연구진

총괄연구책임자: 주무현(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연구책임자: 최강식(연세대학교 교수)
참여연구자: 강성진(고려대학교 교수)
조윤형(코넬대학교 방문학자)
곽난희(연세대학교 박사과정)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2

제2장 외국인투자유치정책과 투자실적분석 ··· 6

제1절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 현황 ··· 6

제2절 외국인직접투자현황 ··· 25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와 일자리창출 ··· 29

제1절 서론 ··· 29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 30

제3절 연구동향 ··· 31

제4절 외국인직접투자의 일자리창출 파급효과 ··· 35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 61

제4장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고용영향평가 ··· 64

제1절 연구내용 및 방법 ··· 64

제2절 실태조사 분석결과 ··· 66

제3절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고용영향평가 심층조사결과 ··· 103

제5장 결론: 고용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123

참고문헌 ··· 127

부록 ··· 129

표 목 차

<표 1-1> 국민경제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 ··· 1
<표 2-1> 외국인투자 및 무역관련 특별지역 지정제도 비교 ··· 8
<표 2-2> 경제자유구역법 특별법적 내용 ··· 14
<표 2-3>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지점의 차이 ··· 16
<표 2-4> 국세 및 지방세 감면대상 및 방법 ··· 18
<표 2-5>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 ··· 20
<표 2-6> 지자체의 지원내용 ··· 20
<표 2-7> 기타 지원내용 ··· 20
<표 2-8> 지정요건 및 대상업종 ··· 21
<표 2-9> 지정내용 ··· 21
<표 2-10> 외국인직접투자추이 ··· 25
<표 2-11> 투자유형별 외국인직접투자추이 ··· 26
<표 2-12> 투자규모별 기간별 외국인직접투자추이 ··· 27
<표 2-13>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추이 ··· 28
<표 3-1> 산업연관표 형식 ··· 38
<표 3-2> 생산유발계수표 형식 ··· 38
<표 3-3> 인센티브 수혜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실적 ··· 42
<표 3-4>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실적(전체) ··· 43
<표 3-5> 인센티브 수혜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목적별 투자실적 ··· 45
<표 3-6> 산업별 목적별 외국인직접투자실적(전체) ··· 46
<표 3-7> 산업연관표와 한국표준산업분류 ··· 47
<표 3-8> 인센티브 수혜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취업유발효과 ··· 49
<표 3-9> 인센티브 수혜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고용유발효과 ··· 50
<표 3-10> 전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취업유발효과 ··· 51
<표 3-11> 전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고용유발효과 ··· 52
<표 3-12> 인센티브 수혜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목적별 취업유발효과 ··· 54
<표 3-13> 인센티브 수혜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목적별 고용유발효과 ··· 55
<표 3-14>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목적별 취업유발효과 ··· 56
<표 3-15>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목적별 고용유발효과 ··· 57

<표 3-16> 인센티브 수혜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의 고용 및 취업유발효과 종합 ………… 58
<표 3-17> 고용유발효과에 대한 분해 ……… 58
<표 3-18> 고용(취업)계수 고정시 고용(취업)유발효과 예측 ……… 59
<표 3-19> 인센티브 수혜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유발효과 ………… 60
<표 3-20>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유발효과 ……… 61
<표 4-1> 응답업체 특성 ……… 68
<표 4-2> 업종특성 ……… 69
<표 4-3> 귀사의 기술력 ……… 70
<표 4-4> 한국시장이 갖는 장점 ……… 71
<표 4-5> 2009년 인력현황 ……… 72
<표 4-6> 평균 근속년수 ……… 73
<표 4-7> 평균연령 ……… 74
<표 4-8> 귀사의 경영권 위치 ……… 75
<표 4-9> 외국자본이 경영권 획득시 투자방식 ……… 76
<표 4-10>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 77
<표 4-11> 외국자본의 한국투자동기 ……… 78
<표 4-12> 외국자본의 한국투자에 대한 매력요소(1순위) ……… 79
<표 4-13> 경영활동 중 애로사항(1순위) ……… 79
<표 4-14> 시급하게 개선할 사항(1순위) ……… 81
<표 4-15> 향후 투자계획 ……… 82
<표 4-16> 투자결정시 한국의 노사관계 고려도 ……… 83
<표 4-17> 올해 한국투자실적 ……… 83
<표 4-18> 올해 한국투자실적_투자확대의 이유 ……… 84
<표 4-19> 올해 한국투자실적_투자축소의 이유 ……… 84
<표 4-20> 국내투자환경 ……… 85
<표 4-21> 개선해야 할 투자인프라(복수응답) ……… 85
<표 4-22> 외투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복수응답) ……… 86
<표 4-23> 해당지역의 단점(복수응답) ……… 86
<표 4-24> 목표의 적합성 ……… 87
<표 4-25>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실현가능성 ……… 87
<표 4-26> 고용영향목표 고려여부 ……… 88

<표 4-27> 고용영향목표 고려방안 ··· 89
<표 4-28> 외투유치활성화지원정책 필요성 ··· 90
<표 4-29>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지원요건의 적절성 ··· 91
<표 4-30> 지원수준의 적절성_입지지원정책 ··· 91
<표 4-31> 지원체계의 적절성 ··· 92
<표 4-32> 입지지원정책_고려여부 ··· 93
<표 4-33> 현금지원_고려여부 ··· 93
<표 4-34>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_고려여부 ··· 94
<표 4-35> 사업집행과정의 적절성 ··· 94
<표 4-36> 추진체계 내에 고용영향 고려의 필요성 ··· 95
<표 4-37>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확산 ··· 96
<표 4-38> 성과관리에서 고용영향의 고려여부 ··· 96
<표 4-39>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 ··· 97
<표 4-40> 고용영향평가 고려 ··· 97
<표 4-41> 외투활성화정책의 기여도 ··· 98
<표 4-42> 고용창출효과시 가장 큰 애로사항 ··· 99
<표 4-43> 제도적 개선방안 ··· 101
<표 4-44> 필요한 노동시장정책 ··· 102
<표 4-45> 고용증가정도 ··· 103
<표 4-46> 외국인투자 및 무역관련 특별지역 중 해당되는 부분 ··· 105
<표 4-47> 목표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 105
<표 4-48>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 이유 ··· 106
<표 4-49> 고용영향 고려하고 있다고 평가한 이유 ··· 107
<표 4-50> 고용영향목표 고려방안 ··· 108
<표 4-51>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지원정책의 필요성 ··· 109
<표 4-52> 지원요건 및 대상의 적절성 ··· 109
<표 4-53> 지원요건이나 대상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및 개선방안 ··· 110
<표 4-54> 지원수준의 적절성 ··· 111
<표 4-55> 지원수준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및 개선방안 ··· 111
<표 4-56> 지원체계의 적절성 평가 ··· 112
<표 4-57> 지원체계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및 개선방안 ··· 112

<표 4-58> 지원체계의 고용영향의 고려여부 ········· 113
<표 4-59> 사업집행과정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와 개선방안 ········· 114
<표 4-60> 추진체계 개선방안 ········· 115
<표 4-61> 성과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16
<표 4-62> 성과관리에 고려된 고용영향의 구체적인 내용 ········· 116
<표 4-63> 성과관리 고용영향제고 구체적인 방안 ········· 117
<표 4-64>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_개선방안 ········· 117
<표 4-65>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_고용영향의 구체적인 내용 ········· 118
<표 4-66>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_고용효과제고방안 ········· 118
<표 4-67> 국민경제 및 고용효과 ········· 119
<표 4-68> 고용효과제고시 가장 애로 사항 ········· 120
<표 4-69> 고용효과제고를 위한 실천적인 방안 ········· 120
<표 4-70> 고용효과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 121
<표 4-71> 고용효과제고를 위한 노동시장정책 ········· 122

<부록 Ⅰ>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 129
<부록 Ⅱ>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심층조사 ········· 144
<부록 Ⅲ> 부표 ········· 156
<부표 1> 행태별 외국인직접투자실적 ········· 156
<부표 2> 주요 국가별 국내유입 외국인직접투자실적 ········· 157
<부표 3> 산업별 고용·취업유발계수 ········· 158

【 요 약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외국인직접투자(FDI)는 투자를 유치한 현지국에 자본형성효과, 생산성증대효과, 고용효과, 무역촉진효과 등 다양한 경제적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각국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경제규모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유입이 미미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FDI가 크게 증가

-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외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외개방을 단행하고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대한 제한을 대폭 철회하는 개방화정책을 시행

- 외국인투자를 보호하는 조치 외에 외국인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조세 및 관세지원제도, 현금지원제도, 산업단지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

○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영향파급효과 분석 및 고용창출제고를 위한 투자유치개선 방향을 외국인투자유치정책적 측면과 투자유치지역의 고용연계성이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영향분석 평가

- I/O분석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파급효과를 국민경제, 업종 및 지역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

○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방안의 효율성 평가

- 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유인방안을 투자업종, 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 등)별로 살펴보고 이러한 유치제도가 현실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평가

○ 사업추진체계(전달체계)의 효율성 평가

- 외국인직접투자사업의 전달체계(추진체계)가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개별 사업추진 단위간 협의·연계가 잘 이뤄지고 있는가 등을 평가

○ 외국인직접투자 사업목표의 고용과 연계가능성 평가

【 요 약 】

- 사업의 목표가 고용 및 노동시장에 대하여 고려를 포함하고 있는가, 제시된 고용관련 목표는 실현가능하고 바람직한가, 예상되는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등

○ 외국인직접투자 사업집행과 고용연계성

- 사업집행시 창출되는 일자리에 대한 사업추진 주체와 인력양성 주체간 협의·연계체계가 있는가, 정책으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에 필요한 인력양성과 관련된 DB 등 자료를 작성·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등

○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 및 관련정책담당자(투자유치담당)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평가지표를 통해 설문조사, 제도의 비교,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계량분석을 수행

○ (설문조사) 업종별, 지역별, 투자유형별로 외국인투자기업을 표본추출하여 평가목적에 부합하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 사업의 목표부합성, 전달체계의 효율성, 고용창출효과의 제고방안을 조사

- 특히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고용창출여력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투자유치정책이 설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모색을 포함

○ (심층조사) 외국인투자지역 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영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심층조사를 수행

○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영향의 긍정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 고유목표 달성도, 정책과 고용간의 연계성, 고용에 대한 영향분석 등을 기초로 고용창출여력 확대 방안 모색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실적과 투자정책의 변화

제1절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및 정책

○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의 직접투자, 차관, 증권투자, 기술이전 등을 총칭하는데 투자목적에 따라 portfolio투자, Greenfield투자, M&A투자와 같은 형태로 구분

○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정의

【 요 약 】

- 외국인이 내국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외국인 1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투자금액-5천만원 이상) 10% 미만을 소유하면서 ①임원의 파견계약의 체결 ②1년 이상의 장기간 제품 및 부품 공급계약 체결 ③기술도입 및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함
- 또한, 해외 모기업 등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자회사)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장기 차관을 포함

○ OECD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란 외국인이 어떤 기업에 대하여 경영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a significant degree of influence on the management)을 행사하는 등 장기적으로 그 기업과 지속적 이해관계(a lasting interest)를 수립하고자 하는 목적의 자본거래를 총칭

- 통상 10% 이상을 FDI로 보도록 권고하고 있음. 한편, 지점 및 사무소 설립도 포함하고, 관계 회사간 차관거래도 포함

○ portfolio투자란 지속적 경제관계수립이 아닌, 단기적인 금융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통상 10% 미만의 증권투자, 일반 차입 등을 의미

○ Greenfield투자란 국내에 새로운 형태의 기업을 창업하거나, 광의로는 생산 및 영업설비 등 기업설비능력을 확장하는 투자까지 포함

○ M&A투자란 기업의 외적 성장을 위한 발전전략으로,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소유지분을 확보하는 투자를 의미

○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는 1960년 외자도입촉진법의 제정부터 시작되어 1962년 외국인투자 통계 및 관리를 시작

○ 1962년부터 1979년은 상업차관 중심의 외자도입 추진기로서 외국인의 국내산업 지배에 대한 우려로 직접투자보다는 상업차관 및 IBRD 등의 공공차관 도입에 역점을 둠 총 외자도입의 80% 이상이 상업차관과 공공차관임

○ 1980년대 초반 제 2차 석유파동 및 개도국의 채무불이행선언 등으로 차관중심의 외자도입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외국인투자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집중

- 특히 1984년 7월 제한업종에 대한 일률적인 50%의 투자비율 제한을 폐지

【 요 약 】

○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개방경제의 가속화가 이루어진 1990년~1997년에는 WTO 체제 출범과 OECD가입 등 변화된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을 추진

-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유치가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이란 인식하에 강력한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추진
- 1998년 11월에 기존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외국인투자유치 및 촉진을 위한 외국인투자법으로 제정하였고, 1999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외투업무가 재경부에서 산자부로 이관

○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개념, 신고절차, 지원제도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1998년 기존의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여 외촉법을 제정

- 외국인투자의 정의 및 자유화, 외국인투자 절차,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후관리,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루고 있음

○ 1970년 수출자유지역 지정·운영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2004년부터 수출자유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을 통합·운영하고 있음. 현재 마산, 익산, 군산 등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운영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6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운영하기 위하여 2009년 1월 특별법으로 전환

○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만 국세·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며, 기존주식취득이나 5년 이상 장기차관은 외국인투자에는 해당하지만, 정책목적과 차입적 성격으로 인하여 조세감면대상에서는 제외

○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가 공장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을 유치협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

-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로 지정절차가 진행되며 제조업, 고도기술, 산업지원서비스업, 관광업, 물류업, R&D 등이 대상업종이며 지원내용으로 조세감면, 임대료감면 등이 있음

【 요 약 】

○ <표 1> 외국인투자 및 무역관련 특별지역 지정제도 비교

구분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법적 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정 목적	◦대규모 외국인투자유치	◦수출지원목적의 가공무역, 물류업 등을 위한 입지지원	◦외국인투자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지정 권자	◦시·도지사 (산업자원부 협의)	◦산업자원부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
요건	◦지정요건 -외국인투자금액 *업종별로 차이 -제조업, 물류, 관광업, R&D 등	◦지정요건 -산업단지, 화물터미널 -공항·항만 및 배후지 ◦입주자격 -제조업, 물류업, 무역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등	◦투자유치, 지역경제활성화, 부지확보성, 기반시설 등을 감안하여 지정
조세 감면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100%, 2년간 50% 법인세 감면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과 동일한 조세감면 -제조업 1천만달러 -물류업 5백만달러 -10년간 감면 * 2005. 1월부터 5년간 감면	◦법인세, 소득세, 관세, 지방세 감면 -1천만달러 이상 제조업 및 관광업, 5백만달러 이상 물류업 -5년간 감면
임대료 감면 기간	◦최대 50년(갱신 가능)	◦입주기업: 50년(갱신가능) 지원기업: 10년(갱신가능)	◦경제자유구역청이 정함
대상 지역	◦단지형: 10개 개별형: 19개	◦10개(마산, 익산, 부산 등)	◦인천, 부산·진해, 광양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도를 관광 등 투자유치친화적 지역으로 지정(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02년)

○ 현행 지원제도는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외국투자가에게는 '기본서비스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협상력(Leverage Power)을 갖춘 인센티브제도가 필요

- 경쟁국들도 Cash Grant를 주요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도 해외진출시 수혜받고 있으며 영국, 아일랜드, 이스라엘 등은 투자금액의 5~40%를 현금으로 지원

○ 외국인투자유치포상금제도: 지자체 및 민간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참여를 유도하고 PM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포상금제도를 운영

○ 프로젝트매니저(PM)제도, 외국인투자에 대한 One-Stop 서비스 등을 운용

【 요 약 】

제2절 외국인직접투자의 실적

○ 외국인투자는 해가 갈수록 그 규모와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신고기준으로 보면 1996년까지는 968건, 32억달러에 머물렀으나, 1999년에 2,104건, 155억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4,146건의 높은 유입실적을 보임. 2009년에도 3,131건, 114억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

○ 평균금액 면에서 볼 때 1999년 건당 평균 7.3백만달러의 직접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2000년 이후 평균금액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최근 2008년 이후 건당 3백만달러를 상회하며 다소 증가하는 추세

○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유형에 따라 신규투자와 증액투자, 장기차관 등으로 구분

- 여기서 신규투자는 제조업의 공장설립이나 서비스업의 사업장 설립으로 이루어지는 신설형(Greenfield)투자로 볼 수 있으며, 증액투자는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구주취득이나 신주취득하는 M&A형 투자로 볼 수 있음

○ 전체 투자건수에서 신규투자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동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투자건수 규모면에서 볼 때 증액투자의 약 2배 가까운 실적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투자금액 면에서 볼 때 신규투자금액은 2007년을 제외한 최근 5년간 증액투자금액보다 매우 낮음

○ 투자규모별 기간별 외국인직접투자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1백만달러 미만의 상대적 소액 투자건수나 비중은 2000년 이후 큰 변동을 보이고 있지 않음

- 1백만달러~1천만달러 규모의 경우에는 2006년 이후 투자건수와 투자규모면에서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비해 1억달러 이상의 고액 투자의 경우 투자건수나 금액 면에서 모두 증가하는 추세

○ 제조업의 경우 투자건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보다 감소하여 2009년에는 17.4%를 차지

- 이에 비해 도소매업의 투자건수의 비중은 1995년에는 32.5%였으나 최근 증가하는 추세 그러나 투자금액을 보면 제조업과 도소매업 모두 2005년 이후 증가

- 금융보험업은 건수와 금액에서 2008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09년 다소 감소

【 요 약 】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와 일자리창출

제1절 분석모형

○ 외국인직접투자가 한국의 일자리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 분석모형을 사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유발한 일자리규모를 추정

- 외국인직접투자는 공장설립 및 사업장 확대로 인한 직접적인 고용효과뿐만 아니라, 해당기업의 생산활동 및 투자활동 증가에 따라 전·후방산업의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침.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직·간접적인 일자리창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산업간 상호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이 타당함
- 산업연관분석에서 특정 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증대에 따른 직·간접적인 일자리창출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인직접투자의 증대로 인한 경제전체의 생산유발액의 크기를 먼저 계산함

○ 최종수요의 발생이 생산을 유발하고 그 생산이 다시 노동수요를 유발하는 파급메커니즘에 기초하여 최종수요와 노동유발을 연결시킴으로써 노동유발효과분석과 생산활동증가가 일자리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제2절 분석 자료

○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지식경제부 외국인직접투자 원자료에 바탕을 둠. 하지만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정과정을 적용

- 외국인직접투자의 파급효과를 계산함에 있어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금액이 아닌 도착금액을 기준으로 효과를 계산
- 외국인직접투자 원자료가 미화달러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원화가치로 적절하게 전환하는 것이 필요
- 투자년도를 원자료상의 외국인직접투자 신고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
- 본고에 이용된 자료의 기간은 1990년부터 2008년까지임. 분석의 편의상 1기를 1990년부터 1995년으로, 2기를 1996년부터 2001년으로, 3기를 2002년부터 2008년까지로 정의. 또한 산업연관표가 5년 단위로 발표되는 점을 감안하여 1기에는 1995년도 산업연관표를, 2기에는 2000년도 산업연관표를, 3기에는 2005년도 산업연관표를 적용하였음

【 요 약 】

○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상의 산업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 원자료간의 산업분류를 매칭

○ 본 장의 목표가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 일자리창출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있음을 주지한다면, 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정책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이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여야 함

- 하지만 현재 지식경제부가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자료 하에서는 특정 외국인기업이 한국을 투자지역으로서 택한 동기가 투자환경의 개선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그와 무관한 독립적인 의사결정의 산물인지 식별이 불가능함
- 개별 외투기업의 투자신고금액 및 주요 사업의 산업분야를 바탕으로 각종 외국인투자인센티브(e.g., 세제지원, 입지요건, 현금지원) 최소투자금액요건을 만족하는 기업들만을 추출하여 투자금액을 계산함

제3절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파급효과(취업 · 고용유발효과)

○ 외국인직접투자가 한국의 일자리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 분석모형을 사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유발한 일자리규모를 추정.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

- 1기(1990년-1995년)에 유입된 인센티브 수혜조건에 부합하는 외투기업의 직접투자금액은 약 68억달러로 집계되었는데, 산업전체에 유발한 취업인원은 158,285명으로 도출됨. 자영업자나 무임금가사노동자를 제외한 고용유발인원은 122,881명으로 추정되었음. 음식점 및 숙박, 금융 및 보험 그리고 통신산업 순으로 취업유발인원이 타산업에 비해 크게 나타남
- 2기(1996년-2001년)에 유입된 인센티브 수혜조건에 부합하는 외투기업의 직접투자금액은 약 222억달러로 전기에 비해 절대적 규모가 크게 증가함. 2기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산업전체에 유발한 취업인원은 462,226명으로 도출됨. 자영업자나 무임금가사노동자를 제외한 고용유발인원은 314,334명으로 추정되었음. 도소매, 금융 및 보험 그리고 운수산업 순으로 취업유발인원이 타산업에 비해 크게 나타남

○ 인센티브 수혜요건을 만족하는 목적별 투자의 고용파급효과는 인센티브수혜요건을 만족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실적을 바탕으로 고용효과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요 약 】

- 1기(1990년-1995년)에 유입된 인센티브 수혜조건에 부합하는 외투기업의 직접투자 중에서 M&A형 투자가 없기 때문에 취업 및 고용 유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인센티브 수혜조건 기업이 유발한 취업인원은 165,295명(고용인원 127,553명)은 모두 green field형 투자에 의해 유발된 것임
- 2기(1996년-2001년)에 외국인직접투자가 산업전체에 유발한 취업인원은 469,446명으로 도출되었으며, 이 중 132,696명은 M&A에 의해 유발된 취업인원이며, 336,750명은 greenfield형 투자에 의해 유발된 취업인원임. 자영업자나 무임금가사노동자를 제외한 고용유발인원은 320,061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중 101,118명은 M&A형 투자에 의해 유발된 고용인원이며, 218,943명은 greenfield형 투자에 의해 유발된 고용인원임. M&A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투자금액에서 34.78%이며, 취업유발인원에서 28.4%, 고용유발인원에서 31.6%를 차지해, 투자금액에 비해 취업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greenfield형 투자보다 다소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3기(2002년-2008년)에 외국인직접투자가 산업전체에 유발한 취업인원은 575,860명으로 도출됨. 이 중 169,114명은 M&A에 의해 유발된 취업인원이며, 406,746명은 greenfield형 투자에 의해 유발된 취업인원임. 자영업자나 무임금가사노동자를 제외한 고용유발인원은 422,220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중 124,771명은 M&A형 투자에 의해 유발된 고용인원이며, 297,449명은 greenfield형 투자에 의해 유발된 고용인원임. M&A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투자금액에서 29.02%이며, 취업유발인원에서 29.3%, 고용유발인원에서 29.5%를 차지해, 1기에 비해 M&A형이 취업 및 고용유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상승하였으며, 반면 고용유발효과는 다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금까지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유발되는 취업 및 고용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봄. 분석결과와 같이 높은 일자리창출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한 가지 주의깊게 살펴볼 내용은 외국인직접투자의 높은 증가율에 비해 취업 및 고용효과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임

【 요 약 】

- 인센티브 수혜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의 외국인직접투자를 기준으로 일자리창출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은 2기에 414%, 3기에 72% 증가한 반면 고용유발효과는 각각 156%, 31%, 취업유발효과는 192%, 21%의 증가밖에 나타나지 않음
-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고용계수와 취업계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임. t기의 총 고용(취업)유발효과는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음

  총 고용유발효과 t = 고용계수 t × 생산유발계수 t × 외국인직접투자액 t
- 위의 식을 각 요소의 변화율에 의한 효과로 분해하기 위해 로그차분하면 다음과 같이 <표 2>로 나타낼 수 있음

○ <표 2> 고용유발효과에 대한 분해

	총고용유발 로그차분	고용계수 로그차분	생산유발계수 로그차분	외국인투자 로그차분
3기~2기	0.268 (100%)	−0.404 (−150%)	0.032 (12%)	0.640 (238%)
2기~1기	0.939 (100%)	−0.335 (−35.7%)	0.091 (9.7%)	1.183 (126%)

-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총고용유발 로그차분값은 고용계수로그차분, 생산유발계수로그차분, 외국인투자로그차분의 합과 같음. 이와 같은 관계를 이용하여 고용유발을 감소시켰던 요소를 찾아보면, 바로 고용계수에서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예를 들어 설명하면, 2기에 비해 3기에 늘어난 고용유발효과는 외국인투자 증가가 그 효과의 238%(0.640/0.269)의 기여를 하는 반면에 고용계수는 그 효과에 −150%(−0.404/0.269)에 기여, 생산유발계수의 증가는 그 효과의 12%(0.032 /0.269)에 기여
-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고용(취업)계수와 생산유발계수가 1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는 가정 하에서 외국인투자의 고용유발효과를 나타내면, <표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때의 고용유발효과의 증가율은 투자금액의 증가율과 동일함
- (평가방법) ① 자체정부업무평가보고서, 국회 등 유관기관의 정책평가보고서 등 ② 연구수행자가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해당정책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정성적으로 판단

【 요 약 】

○ <표 3> 고용(취업)계수 고정시 고용(취업)유발효과 예측

		1기	2기	3기
고용 유발 효과	실제	122,881	314,334	410,985
	계수고정시	122,881	631,804	1,083,698
	차이(증가율)	-	317,470(101.0%)	672,713(163.7%)
취업 유발 효과	실제	158,285	462,226	559,806
	계수고정시	158,285	813,836.71	1,395,929.07
	차이(증가율)	-	351,611(76.1%)	836,123 (149.4%)

○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일자리창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이용.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일자리창출은 주로 도소매, 방송 및 통신, 금융 및 보험과 같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타산업에 비해 급격히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과, 서비스 산업의 취업계수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 상대적으로 취업유발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기업들의 선도적인 육성 및 국내기업들의 투자증진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점적인 유치가 병행하는 정책이 국내일자리창출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라 여겨짐

○ 산업연관분석모델 자체가 본질적으로 정태적(static)분석방법이기 때문에, 추정치에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따른 자본축적 및 타산업 부문과의 시간 흐름에 따른 상호연관에 따른 파급효과는 배제되어 있음. 따라서 위 결과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국내일자리창출규모를 과소추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또한 산업연관표 자체가 5년마다 발표되어 산업간 연관관계의 연도별 변화를 분석에 완벽하게 반영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금융 및 서비스산업과 같이 취업 및 고용계수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크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해 일자리창출의 효과가 가장 큰 산업분야라고 주장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

○ 현재 가용한 외국인직접투자 자료 하에서 특정 외투기업이 한국을 투자지역으로서 선택한 동기가 투자환경의 개선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그와 무관한 독립적인 의사결정의 산물인지 식별이 불가능함

【 요 약 】

- 투자환경개선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유입금액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에는 제약이 따름. 따라서 추정된 외국인직접투자의 일자리창출효과의 크기에는 일정부분 오차가 존재할 수 있음

제4장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고용영향평가

제1절 평가항목 및 연구방법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정책목표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유인방안을 살펴보고 이러한 유인방안이 현실에 얼마나 적합한가 그리고 실현가능성이 높은가를 평가

○ (평가지표) ① 목표가 현실에 얼마나 적합한가, ② 정책이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고용관련계획 포함)을 반영하고 있는가, ③ 목표가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등

○ (평가방법) 연구수행자가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해당정책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정성적으로 판단

-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수행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전달체계(사업의 추진체계)가 사업목적달성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개별 사업추진 단위간 협의·연계가 잘 이뤄지고 있는가 등을 평가

○ 정책추진체계의 합리성

- (평가지표) ① 정책의 추진체계가 사업목적달성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② 개별 사업추진 단위간 협의·연계가 잘 이뤄지고 있는가 등
- (평가방법) 연구수행자가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해당정책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정성적으로 판단

○ 정책집행의 적절성

- (평가지표) ① 정책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② 정책비용의 집행체계는 적절한가, ③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책임관리체계는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④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확산이 잘 이뤄지고 있는가 등

【 요 약 】

- (평가방법) ① 자체정부업무평가보고서, 국회 등 유관기관의 정책평가보고서 등 ② 연구수행자가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해당정책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정성적으로 판단

○ (설문 및 심층조사를 위한 연구방향 설정) 정책담당자, 투자유치관련 전문가 및 담당자, 투자기업 등을 방문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및 설문방향을 설정

○ (설문조사) 외국인직접투자기업 및 관련 정책담당자(투자유치 담당)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평가지표를 통해 설문조사를 수행

- 설문조사는 업종별, 지역별, 투자유형별로 외국인투자기업을 표본추출하여 평가목적에 부합하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 사업의 목표부합성, 전달체계의 효율성, 고용창출효과의 제고방안, 정책의 수용성 등을 조사
- 설문조사의 최종 회수표본은 241개이며,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조사를 수행
- 설문조사는 2010년 5월 중에 이루어졌으며 전문조사회사에서 담당

○ (심층조사 실시)

- 투자유치활성화 관련한 기관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영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심층면접을 수행
- 1) 외국인투자지역 2) 자유무역지역 3) 경제자유 구역 등 투자담당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 심층조사의 최종 회수표본은 30개이며,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조사를 수행

제2절 실태조사 분석결과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이 국민경제의 발전 및 고용창출이라는 목표에 얼마나 적합하며 이러한 목표가 실현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5점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국민경제에 기여가 3.85점, 고용영향에 기여가 3.90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목표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경제에 기여와 고용영향에 기여가 각각 3.56점으로 나타나 목표의 적합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임

【 요 약 】

○ 외국인투자유치 및 활성화정책의 계획 및 목표 내에 고용영향(고용유지 및 창출, 인적자원개발, 인력의 양성 및 공급)이 고려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52.3%)하였으며, 28.6%는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19.1%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목표에 고용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에 대해 생각하는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자의 비중이 전체 63.1%로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을 설정하고 조세감면, 관세혜택, 임대료감면 등과 같은 입지지원정책과 더불어 현금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정책의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으며, 5점척도 평균으로 비교하면 입지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7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임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지원정책의 지원요건 및 대상의 적절성에 관한 설문에서 입지지원정책와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에 대하여는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현금지원에 대하여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냄
-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74점으로 현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3.37점)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그린필드형의 경우 입지지원정책에 상대적으로 강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M&A형은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의 지원요건 및 대상이 적절하한가에 대한 질문을 5점척도로 평가(점수가 높을수록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음)한 결과 입지지원정책은 3.25점으로 나타났고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정책은 3.19점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 현금지원정책은 2.97점을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을 보여줌

【 요 약 】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의 지원요건 및 대상이 적절하한가에 대한 질문을 5점척도로 평가(점수가 높을수록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음)한 결과 입지지원정책은 3.10점으로 나타났고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정책은 3.03점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 현금지원정책은 2.85점을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을 보여줌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의 지원체계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을 5점척도로 평가(점수가 높을수록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음)한 결과 세 가지 지원정책 모두 3점 미만을 기록

– 입지지원정책은 2.95점이고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정책은 2.90점이며 현금지원정책은 2.79점을 기록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지원요건이나 지원결정시 평가항목 그리고 지원에 따른 의무내용에서 고용영향(고용창출이나 교육훈련 등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입지지원정책의 고용영향 고려여부에 관한 설문에서 전체 81.3%가 아니오라고 응답

– 현금지원정책이 고용영향을 고려하고 있는가에 관해 전체 81.7%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임

–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정책이 고용영향을 고려하고 있는가에 대해 전체 응답업체 중 83.0%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 5점척도로 평가한 결과 2.84점을 기록하여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음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추진체계에 고용영향(고용창출 및 유지, 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에 대한 질문을 5점척도로 평가한 결과 3.80점으로 나타나 고용영향고려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주고 있음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성과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음

【 요 약 】

- 즉, 정책의 성과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5점척도로 평가한 결과 2.79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확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외국인투자유치의 성과관리에서 고용영향평가요소가 고려되어 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업체 241개사 중 그렇다는 의견이 7.5%, 아니다라는 의견은 13.7%로 나타났으며 78.8%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5점척도 기준에서 평점이 2.78점으로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음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에서 고용영향평가를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75.9%이며 그렇다는 의견은 7.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이 국민경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해당지역산업의 연관효과 제고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국민경제에 기여한다는 의견과 고용효과에 기여한다는 의견이 각각 3.67점으로 나타나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이 고용창출효과와 관련하여 가장 큰 애로사항을 주관식으로 질문한 결과 우수인력확보를 응답한 비율이 7.1%로 나타났고, 3.3%는 인력 확보, 2.5%는 생산인력, 1.7%는 전문 인력을 선택하였음

- 따라서 인력확보와 관련된 사항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중이 법, 문화, 언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음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이 고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노동시장정책을 주관식으로 질문한 결과 지역 내 인력양성을 통해 고용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업체가 5.0%에 이르고 있음

○ 응답업체의 4.6%가 교육훈련, 그리고 1.2%가 외국어 함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요 약 】

○ 만일 위와 같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 고용증가를 묻는 설문에서 전체 응답업체의 24.5%는 5~10%의 고용증가를, 응답업체의 25.7%는 5% 미만의 고용 증가를 예상하고, 30.3%는 고용창출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제3절 심층조사 분석결과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이 국민경제의 발전 및 고용창출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 응답기관은 목표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해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정책의 계획 및 목표 내에 고용영향(고용유지 및 창출, 인적자원개발, 인력의 양성 및 공급)이 고려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응답기관의 76.7%가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고려하고 있지 않다 6.7%, 잘 모르겠다 16.7%로 나타남

- 외국인투자 및 무역관련 특별지역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이 경우 3년간 고용규모 유지)하고 있으며 입주심사시 고용창출을 평가요소로 고려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목표에 고용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 평점 4.50점으로 대부분 그렇다는 의견을 제시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이 해당 투자지역이나 투자기업의 고용영향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적

- 투자규모 외에 신규고용창출 규모를 중심으로 투자 인센티브를 조정하고 대규모 고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고급인력의 고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 고용창출효과에 따른 업종별 차등지원
-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산업군의 유치전략
- 외국인투자유치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공급을 위한 지자체단위의 인력양성 및 공급체계 기반 구축(일반기업체, 외투기업, 학교, 지자체, 고용지원센터 등 인력공급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
- 외국인투자유치 MOU 체결시 고용창출문항을 추가

【 요 약 】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지원정책의 필요성을 5점척도로 평가한 결과 입지지원정책은 4.63점,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정책은 4.47점, 현금지원정책에 대해서는 4.03점으로 나타남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지원정책의 지원요건 및 대상의 적절성을 5점척도로 평가한 결과 입지지원정책 3.83점,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 3.73점, 현금지원정책은 3.40점으로 나타남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지원정책의 지원수준의 적절성을 5점척도로 평가한 결과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 3.67점, 입지지원정책은 3.60점, 현금지원정책은 3.20점으로 나타남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추진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입지지원정책) 각종 인허가 과정을 원스톱서비스 행정체계로 보완, 기반시설 등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 (현금지원) 지원기준의 명확화가 필요, 현금지원의 상향
-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 지원이 생색내기 위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비 지원금을 확대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지원정책이 지원요건이나 평가항목, 그리고 지원에 따른 의무내용에서 고용영향(고용창출이나 교육훈련 등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입지지원정책) 30개 응답기관 중 고려하고 있다는 기관이 46.7%로 입주 우선순위에 고용창출이 많은 기업을 배려하여 운영
- (현금지원정책) 30개 응답기관 중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이 50.0%로 고용의 양과 질에 따라 현금지원의 차등 등을 운영
-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 30개 기관 중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30.%임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지원정책이 잘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0%, 그렇지 않다 10%, 그저 그렇다 40%, 다소 그렇다 26.7%, 매우 그렇다 13.3%로 나타나 5점척도 기준시 평점 3.23점으로 나타남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사업의 추진체계에 고용영향(고용창출 및 유지, 인적자원개발, 인력의 양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다소 그렇다 50%,

【 요 약 】

매우 그렇다 43.3%, 그리고 그저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각각 3.3%로 나타나 5점척도 기준시 평점 4.33점으로 매우 높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

○ 고용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 추진체계의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

- 교육시설과 의료시설 등 생활여건을 개선
-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영향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추진할 만큼 외국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거나 경쟁국에 비해 투자환경이 좋은 편이 아니라는 문제점이 있으나 투자유치활동과정에서 투자유치기업의 고용영향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필요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자격에 고용부분을 명확하게 명기
-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지역별로 육성
- 인건비, 교육훈련비의 지원확대 및 절차 간소화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성과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다소 그렇다 33.3%, 매우 그렇다 13.3%, 그저 그렇다 40%, 그렇지 않다 10%, 전혀 그렇지 않다 3.3%로 나타나 5점척도 기준으로 평점 3.43점을 기록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성과관리 개선방안으로 신고금액이 아닌 도착금액을 통해 평가하고 아울러 향후 도입규모 자체보다는 FDI에 따른 전·후방 효과를 고려하여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필요

○ 외국인투자유치의 성과관리에서 고용영향평가요소가 고려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그렇다 16.7%, 아니다 33.3%, 잘 모르겠다 50%로 나타남

○ 성과관리에 고용영향평가가 고려되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모든 외자기업에 대한 고용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기업의 고용목표와 실제고용현황 등의 비교를 통해 관리하며 향후 고용목표보다 실제고용인원이 상회할 경우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 포상금 기준 금액 산정시 평가항목에 "고용창출효과(신규고용창출규모 등)" 반영(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촉진에 관한 규정)

○ 성과관리에 고용영향이 고려되어 있지 않거나 되어 있더라도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성과관리를 통해 고용영향에 따른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가능성 및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요 약 】

- 고용효과를 고려하는 것은 좋으나 고용창출을 사전요건으로 할 경우 투자촉진에 저해되는 측면이 있음
- 사후적인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만들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도 및 각종 지원정책과 연계 필요성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는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3.3%, 그렇지 않다 13.3%, 그저 그렇다 36.7%, 다소 그렇다 33.3%, 매우 그렇다 3.3%로 5점척도 기준으로 평점 3.34점을 기록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에서 고용영향평가를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그렇다’ 16.7%, ‘아니다 ’40%, ‘잘 모르겠다’ 43.3%로 나타남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에서의 고용효과제고방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의 강화를 통해 국·내외 고용유지, 창출을 위한 전담부서 및 적극적 관리를 위한 담당자 필요
- 고용인원 창출을 명문화
- 외투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인력확보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지속적인 고용관리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
- 고용계획 이행여부의 정도 평가 필요
- 투자유치시 고용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제공과 협의가 필요하며 특히 맞춤형교육 등을 통한 기업의 필요인력을 충원

○ 외국인투자직접투자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는 평점 4.30점으로 나타났고, 고용효과는 4.13점으로 집계됨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고용효과를 제고함에 있어 가장 애로사항에 대한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내국인 고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자격(어학 및 전문분야 자격취득)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인력양성기능을 강화
  · 지역 내 교육인프라 부족
- 정주환경(교육, 문화, 교통 등) 문제, 지역 내 우수한 고급인력(맞춤형인력) 수급지원체계 미흡

【 요 약 】

- 투자유치의 결과로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인력 수급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인원 충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며 해당 지자체의 경우 투자유치에만 집중하고 있어 투자유치와 입주 후 필요한 고용인력 공급의 창구를 통합 또는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하여 인력공급의 원활화를 도모
- 우수외국인력의 공급이 부족한데, 즉 고급 인력일수록 수도권에 거주하려는 경향이 커 우수인력의 확보가 곤란
- 인력공급과 수급간의 미스매치 문제 발생, 특히 지역의 한계상 인력확보문제에 애로사항이 많음

제5장 결론: 고용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입주환경 개선)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고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주요방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 R&D센터의 유치를 통한 고급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고려
- 정주환경(교육, 문화, 교통 등) 개선, 특히 교육시설 및 문화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 조성하여 인구유입 유발(일할 수 있는 인력 확충)
- 수도권 집중의 심화로 인한 지방투자기피완화를 위한 지방인프라의 적극 지원(산업단지주변 도로건설 등)
- 지방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의 수도권과의 차별화
- 외투기업의 수요처가 될 국내 대기업의 신규사업 지방투자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지원
- 외국인투자지역(임대형)의 경우 10년 이상 사업유지시 기업이 원할 경우 분양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제도 변경
- 근본적으로 외투활성화를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은 입지에 외투지역을 설치 · 지정
- 입주심사시 고용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하고 외투기업의 신규입주시 해당기업의 인력 채용을 신규로 일정부분 충족하는 시스템 개발
- 산업단지의 조성시 단지가 활성화가 되기까지 공단지역 내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토록 지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 요 약 】

-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에 국내외 기업 및 연구소 등 유치

○ 투자유치지원정책 개선

- 입주시 제출한 고용인원 대비해서 더 많이 인원을 고용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임대료감면의 혜택을 주는 방안 고려
- 고용창출효과가 큰 물류유통 등 서비스분야로 외자유치범위를 확대하여 고용창출효과를 제고
- 외투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지원을 통해 고용창출은 물론, 고용유지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함
- 인센티브대상요건으로 투자금액이 낮더라도 고용창출이 많은 기업 (특히, 서비스업종) 포함
-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에 대한 국비 지원규모(지방비에 대해 50% 매칭)를 상향조정 (국비 50%→100%)
- 20년 이상 장기무상임대 관련 국비 및 지방비 매칭비율(75%: 25%)을 국비 100%로 상향 조정 (지자체의 경우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부담능력이 없음)
-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비율 상향 조정 (국비 50%→100%)

○ 투자에 따른 성과관리 체계 개선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관리에 있어서도 관리 및 담당자의 성과관리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내국인 고용규모 및 고용기간 등 외국인투자기업유치로 인한 국내경제기여도를 수치화할 필요가 있음(추상적이며, 예측적인 측면의 성과관리는 지양하고 목표대비성과를 객관적 수치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으로 성과관리)
- 내국인고용규모에 따른 세제혜택과 임대료 감경, 현금지원 등의 절차를 고용성과별로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시스템
- 인센티브 등 지급시 실질적인 고용효과를 평가 대상으로 삼는 등 다각화된 성과관리 및 평가 필요

【 요 약 】

○ 노동시장정책개선

- 기업에 필요한 전문분야의 교육 및 체계적 인력양성 시스템은 물론, 외국투자기업에 국내 고용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고용강제정책이 필요(고용에 따른 차등인센티브부여제도 및 국내법상 고용을 유발하기 위한 법령제도 개선상황 등의 제도정비 필요
-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일자리 현황 및 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에 부합하는 교육훈련 등을 통한 지역 내 인력 양성체계를 구축
- 지역대학들과 연계를 통한 인력양성체제 마련하며 외국인투자기업종사자의 재교육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 지역 내 인력양성 및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업종의 전문화가 필요한데 즉, 투자지역의 업종의 규모화 및 집중화를 도모하고 이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업종 전문가 양성에 집중 투자를 할 경우 인력수급의 미스매치가 완화

○ 외국인직접투자활성화정책의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를 제고하도록 사업내용이 개선되는 경우 투자유치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고용효과를 예상하고 있음

- 현재보다 고용창출이 5-10%미만 증가할 것이다가 4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현재보다 고용창출이 10-20% 미만 증가할 것이다 30%, 현재보다 고용창출이 5% 미만 증가할 것이다 20%,'현재보다 고용창출이 30% 이상 증가할 것이다 3.3%로 조사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외국인직접투자(FDI)는 투자를 유치한 현지국에 자본형성효과, 생산성증대효과, 고용효과, 무역촉진효과 등 다양한 경제적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각국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경제규모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유입이 미미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FDI가 크게 증가

–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외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외개방을 단행하고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대한 제한을 대폭 철회하는 개방화정책을 시행

– 외국인투자를 보호하는 조치 외에 외국인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조세 및 관세 지원제도, 현금지원제도, 산업단지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

<표 1-1> 국민경제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

(단위: %)

구분	한국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매출	14.8	79.5	36.1	35.9	24.4	2.6
고용	8.3	49.2	20.4	30.8	16.6	–
부가가치	11.1	86.7	26.8	35.8	–	–
FDI누계/GDP	8.1	126.3	36.5	26.5	12.9	2.1

자료: 산업자원부(2006. 10), 「외국인직접투자 중장기비전 및 전략」

○ 외국인직접투자실적(신고기준)을 보면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에 32억달러에 머물렀음

–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1999년에 155억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도

152억달러의 높은 유입실적을 보여주고 있음

- 2000년 들어와서 투자건수는 연간 3000건을 상회하고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투자건수 및 투자금액이 다소 하락
- 그러나 2004년부터 투자건수가 증가하여 2005년에 3,699건, 2007년과 2008년에는 3,560건과 3,744건으로 증가
- 2009년 1/4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투자가 감소하였으나 2/4분기부터는 투자가 증가세로 전환

○ 그 동안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효과에 관한 실증연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긍정적 고용효과를 낳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효과는 업종이나 투자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갖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도 있음

○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유치의 활성화 및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창출시너지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특히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투자유치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그 동안 외국인직접투자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음

-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고용에 미치는 영향, 무역 및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
- 또한 노사관계 측면에서 외국인직접투자와 노사관계와의 관련성과 관련한 연

구도 수행

○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영향파급효과분석 및 고용창출제고를 위한 투자유치개선 방향을 외국인투자유치정책적 측면과 투자유치지역의 고용연계성이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 추진실적 평가

○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유형별, 업종별, 투자규모별 현황 및 관련 분야의 국내산업의 현황 비교분석 평가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의 실태를 규명

○ 특히 그린필드형 투자의 경우 투자지역의 국내 노동시장 현황을 분석

(2)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 효율성 평가

○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방안의 효율성 평가
-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유인방안을 투자업종, 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 등)별로 살펴보고 이러한 유치제도가 현실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평가

○ 사업추진체계(전달체계)의 효율성 평가
- 외국인직접투자사업의 전달체계가 사업의 추진체계가 사업목적달성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개별 사업추진 단위간 협의·연계가 잘 이뤄지고 있는가 등을 평가

(3)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 고용연계성 효과 평가

○ 외국인직접투자 사업목표의 고용과 연계가능성 평가
- 사업의 목표가 고용 및 노동시장에 대하여 고려를 포함하고 있는가, 제시된 고용관련 목표는 실현가능하고 바람직한가, 예상되는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등

○ 외국인직접투자 사업집행과 고용연계성

- 사업집행시 창출되는 일자리에 대한 사업추진 주체와 인력양성 주체간 협의·연계체계가 있는가, 정책으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에 필요한 인력양성과 관련된 DB 등 자료를 작성·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등

⑷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영향분석 평가

○ 그 동안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는데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의 차별성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효과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평가

○ 이를 위해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파급효과를 분석

- I/O분석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파급효과를 국민경제 및 업종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

⑸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영향의 긍정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 고유목표 달성도, 정책과 고용간의 연계성, 고용에 대한 영향 분석 등을 기초로 고용창출여력 확대방안 모색

○ 앞에서의 분석을 토대로 현 단계에서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 고용영향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고용창출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

○ 특히 외국인직접투자가 각 지역별 투자유치전략과 연계되어 있고 이는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만큼 투자유인으로서 인적자원 확충 방안이 모색되고 이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선순환체계를 마련

나.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 및 관련정책담당자(투자유치담당)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평가지표를 통해 설문조사, 제도의 비교,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계량분석을 수행

○ 설문조사는 업종별, 지역별, 투자유형별로 외국인투자기업을 표본추출하여 평가목적에 부합하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 사업의 목표부합성, 전달체계의 효율성, 고용창출효과의 제고방안을 조사

- 특히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고용창출여력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투자유치정책이 설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모색을 포함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고용영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심층조사를 수행

제2장 외국인투자유치정책과 투자실적분석

제1절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 현황

가. 외국인투자정책의 변화

○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는 1960년 외자도입촉진법의 제정부터 시작되어 1962년 외국인투자 통계 및 관리를 시작

○ 1962년부터 1979년은 상업차관 중심의 외자도입 추진기로서 외국인의 국내 산업 지배에 대한 우려로 직접투자보다는 상업차관 및 IBRD 등의 공공차관 도입에 역점을 두었음. 총 외자도입의 80% 이상이 상업차관과 공공차관임

○ 1980년대 초반 제2차 석유파동 및 개도국의 채무불이행선언 등으로 차관중심의 외자도입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외국인투자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집중
- 특히 1984년 7월 제한업종에 대한 일률적인 50%의 투자비율 제한을 폐지

○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개방경제의 가속화가 이루어진 1990년~1997년에는 WTO체제 출범과 OECD가입 등 변화된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을 추진
-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유치가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이란 인식하에 강력한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추진
- 1998년 11월에 기존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을 외국인투자 유치 및 촉진을 위한 외국인투자법으로 제정하였고, 1999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외투업무가 재경부에서 산자부로 이관

나. 외국인투자유치 근거법령

⑴ 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개념, 신고절차, 지원제도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1998년 기존의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여 외촉법을 제정

- 외국인투자의 정의 및 자유화
- 외국인투자 절차
-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 외국인투자지역지정
-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후관리
-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운영

⑵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970년 수출자유지역 지정·운영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2004년부터 수출자유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을 통합·운영

- 마산, 익산, 군산 등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운영 중

⑶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6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운영하기 위하여 2009년 1월 특별법으로 전환

<표 2-1> 외국인투자 및 무역관련 특별지역 지정제도 비교

구분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법적 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정 목적	○대규모 외국인투자유치	○수출지원목적의 가공무역, 물류업 등을 위한 입지지원	○외국인투자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지정 권자	○시·도지사 (산업자원부 협의)	○산업자원부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
요건	○지정요건 –외국인투자금액 *업종별로 차이 –제조업, 물류, 관광업, R&D 등	○지정요건 –산업단지, 화물터미널 –공항·항만 및 배후지 ○입주자격 –제조업, 물류업, 무역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등	○투자유치, 지역경제활성화, 부지확보성, 기반시설 등을 감안하여 지정
조세 감면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100%, 2년간 50% 법인세 감면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과 동일한 조세감면 –제조업 1천만달러 –물류업 5백만달러 –10년간 감면 * 2005. 1월부터 5년간 감면	○법인세, 소득세, 관세, 지방세감면 –1천만달러 이상 제조업 및 관광업, 5백만달러 이상 물류업 –5년간 감면
임대료 감면 기간	○최대 50년(갱신 가능)	○입주기업: 50년(갱신가능) 지원기업: 10년(갱신가능)	○경제자유구역청이 정함
대상 지역	○단지형: 10개 개별형: 19개	○10개(마산, 익산, 부산 등)	○인천, 부산·진해, 광양

*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도를 관광 등 투자유치친화적 지역으로 지정(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02년)

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개관

(1)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의 직접투자, 차관, 증권투자, 기술이전 등을 총칭하는데 투자목적에 따라 portfolio투자, Greenfield투자, M&A투자 형태로 구분

1)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의 법적 정의

○ 외국인이 내국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기업의 株式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 외국인 1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이상을 소유하거나(투자금액 – 5

천만원 이상)

- 10% 미만을 소유하면서 ① 임원의 파견계약의 체결 ② 1년 이상의 장기간 제품 및 부품 공급계약 체결 ③ 기술도입 및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것

○ 해외모기업 등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자회사)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장기차관

2) OECD 정의(OECD Benchmark Definition of FDI)

○ 외국인이 어떤 기업에 대하여 경영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a significant degree of influence on the management)을 행사하는 등 장기적으로 그 기업과 지속적 이해관계(a lasting interest)를 수립하고자 하는 목적의 자본거래를 총칭

· OECD에서는 통상 10% 이상을 FDI로 보도록 권고하고 있음

○ 지점 및 사무소 설립도 포함하고, 관계회사간 차관거래도 포함

3) 개념의 구분

○ portfolio투자: 지속적 경제관계 수립이 아닌, 단기적인 금융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통상 10% 미만의 증권투자, 일반차입 등

○ Greenfield투자: 국내에 새로운 형태의 기업을 창업하거나, 광의로는 생산 및 영업설비 등 기업설비능력을 확장하는 투자까지 포함

○ M&A투자: 기업의 외적 성장을 위한 발전전략으로,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소유지분을 확보하는 투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은 특히 직접투자라는 외국인의 국내법인과의 지속적 경제관계의 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

4) 간접투자

○ 외국인직접투자(FDI)이외, 증권시장에서 통상적인 주식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투자로서 주로 증권거래법이나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규율됨
  · POSCO, 삼성전자 등 외국지분이 60~70%인 기업도 외촉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은 아님

⑵ 외국인투자 용어 정의

1) 외국인

○ 외국 국적 보유 개인[1)]

○ 외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제경제협력기구

2) 출자목적물

○ 출자목적물의 개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해 출자하는 것

○ 출자목적물의 종류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 자본재
-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배당금)
- 산업재산권, 저작권 중 산업 활동에 이용되는 권리,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 등
- 국내지사 폐쇄 또는 주식소유 내국법인 해산의 경우, 당해 청산에 따라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
-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등

1) 대한민국 국적보유 개인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 포함

⑶ 외국인투자 자유화

1) 외국인투자 보호 및 자유화

① 외국인투자 보장 및 보호

○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등 대외송금 보장
- 주식 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대금, 차관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와 기술도입계약대가 등
- Safeguard 조항의 면제
  · 외국환거래법상 천재지변·전시 등으로 인해 취해지는 외국환거래정지 또는 제한조치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음(외국환거래법 제6조제4항)

○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민대우 보장
- 원칙적으로 외국투자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

2) 외국인투자제한

① 외국인은 OECD 등 국제규범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외촉법상 제한 사유(OECD 자본자유화규약에 근거)
-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방위산업체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 필요

②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 행정·사법·입법등 공공성격의 업종으로 외촉법 적용대상이 아님

○ 제외업종 예시

– 우편업, 중앙은행, 증권 및 선물거래소, 교육행정, 환경행정, 산업진흥행정, 외무행정, 국방행정, 종교단체 등

③ 외국인직접투자 제한업종

○ 제한업종은『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에서 告示

– 2개 미개방(TV방송업, Radio방송업)

– 26개 부분개방(한국통신 등 통신업, 한국전력 등 발전·송전·배전, 신문발행업, 항공·운송업 등)

④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 타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내국민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 매년 통합하여 공고

다. 경제자유구역법 특별법 개정 내용

(1) 기존법 내용상 이미「특별법적 요소」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점을 고려

○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계획 미수립지 및 인근지역 개발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의무 신설(제6조의 2, 제6조의 3)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임대주택 공급근거 및 조성토지 처분기준 마련

– 지침에 따라 타법을 준용하여 오던 조성토지의 처분가격·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제9조의 7)

○ 외국인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임대주택용지(10% 이내) 공급의무화 및 10년간 분양전환 제한(제24조의 2)

○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진입·간선도로, 공동구 등) 설치비용 지원액을 종전「일부」에서「전액 또는 일부」로 개정(제18조)

○ 외국연구소 지원 및 외국교육기관 지원 범위 확대(안 제16조 및 제22조)

- 연구시설유치를 위해서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외국교육기관(초·중·고·대학)뿐만 아니라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

○ 구역청장의 사무확대 (제27조)

- 「주택법」상 분양가심의관련 사무, 「소음·진동규제법」상 시설관리사무, 「약사법」상 약국관리 사무 등 기존에 기초지자체장이 수행하던 사무를 원스톱서비스를 위해 구역청장이 수행

○ 구역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구역청장 임기 및 구역청 공무원 파견기간 연장(제27조의2, 제27조의5)

- 구역청장 임기(3년, 연임 가능), 구역청공무원 파견기간(5년 이내)

<표 2-2> 경제자유구역법 특별법적 내용

구분	내용
다른 계획과의 관계(3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계획을 제외한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용
지정의 효과 (8조)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11개 법률 15개 계획의 수립이 있는 것으로 간주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촉진법」 예정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관광진흥법」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기본계획 ■「공유수면매립법」 매립기본계획 ■「연안관리법」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 ■「하천법」 하천기본계획 ■「수도법」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인·허가의제 (11조)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이 있는 경우 40개 법률 75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 농지법(농업진흥지역해제·농지전용), 하천법(하천점용허가), 공유수면매립법(공유수면매립면허), 골재채취법(골재채취허가), 국유재산법(국유재산사용허가), 주택법(주택사업계획승인), 산지관리법(토석채취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지형도면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가산단, 일반산단 실시계획승인) 등
다른 법률 적용 배제 (17조)	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10개 법률의 일부 조항 적용배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용의무 적용배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업종 대기업참여제한배제) ■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학교총량제 적용배제) ■근로기준법(무급휴일 및 무급생리휴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업종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 축조허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정품목제조 의무위탁 배제)
특례적용 (9조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10개 사항에 대해 일반법에 비해 완화된 규제 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용적율 기준의 150% 범위 내에서 완화적용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률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설치 및 부지면적 자율적 적용 ■농지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농지전용 허가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외국교육기관 설립허용 ■초중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국제고등학교에 외국인 교원 임용자격 등 완화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외국의료기관 설립허용 및 부대사업 허용 ■관광진흥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용 ■방송법에도 불구하고 재송신 채널수 확대허용 ■임대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선정, 임대보증금 등 별도기준 마련 ■지방공무원법에도 불구하고 구역청 공무원 파견기간 연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임기보장(3년, 연임 가능)

<표 2-2(계속)> 경제자유구역법 특별법적 내용

구분	내용
사무처리 특례(27조)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원스톱서비스를 위해 28개 법률 200여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시·도지사(경제자유구역청장)가 직접수행 건축법(건축허가), 외국인토지법(외국인토지취득허가), 도로법(지방도 신설·유지), 산업집적활성화법(공장설립승인), 주택법(주택공급사무), 하수도법(하수도관리), 산지법(산지관리), 옥외광고물관리법(옥외광고물허가), 공유수면관리법(공유수면관리), 소음진동규제법(소음진동배출시설 허가 등), 약사법(약국개설, 의약품 조제관리) 등
조세·부담금 감면(15조)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개발사업자 및 입주기업에 대해 6개 조세 및 10개 부담금감면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소득세 3년 100%, 2년 50%), 관세법(3년 100%), 지방세법(취·등록세, 재산세) 감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발부담금), 농지법(농지보전부담금), 초지법(대체초지조성비), 산지관리법(대체산림자원조성비), 도시교통정비촉진법(교통유발부담금), 자연환경보전법(생태계보전협력금), 환경개선부담법(생태계보전협력금),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유수면관리법(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라. 외국인투자 절차

(1)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됨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현지법인 설립 또는 개인사업자를 통한 진출
- 외국환 거래법의 절차에 의한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한 진출 등임

(2) 현지법인과 개인사업자

1) 현지법인

○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의 국내 현지법인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5,000만원 이상 투자하여야 함

2)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도 5,000만원 이상의 투자일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되며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현지법인과 차이가 없음

○ 현지법인에 비해 개업과 휴·폐업이 간편하고 사회적 책임 등이 적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외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 및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영세규모의 사업에 주로 적용됨

3) 지 점

○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통상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상의 지점설치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원의 등기를 요함

<표 2-3>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지점의 차이

구분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점
근거법규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법인성격	내국법인	외국법인
동일체 여부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이 별도의 인격체 (회계·결산이 독립적임)	본점과 지사가 동일 인격체 (회계·결산이 동일체임)
신고수리, 허가기관	Invest KOREA, KOTRA 국내·해외투자 거점 무역관, 외국환은행 본지점	외국환은행지점(신고), 기재부(금융업 등의 허가)
최소(최대) 투자금액	최소: 건당 5,000만원 최대: 한도 없음	금액제한 없음

4) 연락사무소

○ 지점과 연락사무소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점이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데 반해, 연락사무소는 단지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 활동(시장조사, 업무연락 등)만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임

5) 외국인투자형태

①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②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 다만, 방위산업체를 영위하는 기업의 기존주식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③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④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

○ 외국인이 아래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자는 신고해야 함

○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재평가적립금 등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 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 외국인이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상속·유증·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 외국인이 전환사채・교환사채・주식예탁증서 기타 유사한 것으로 주식 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나 증서를 주식 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한 경우

마. 외국인투자인센티브

(1) 세제 지원

1) 국세 · 지방세 감면

<표 2-4>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대상 및 방법

<table>
<tr><th rowspan="2">조세감면대상</th><th colspan="3">조세감면방법</th></tr>
<tr><th>대상세목</th><th>감면기간</th><th>감면투자요건</th></tr>
<tr><td>ㅇ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ㅇ개별형 투자지역 기업</td><td rowspan="3">ㅇ국세
- 법인세
- 소득세

ㅇ지방세
- 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td><td>ㅇ7년간 감면
- 5년 100%,
2년 50%</td><td>ㅇ고도기술: 없음
ㅇ투자지역
- 제조업: 3천만$
- 관광업: 2천만$
- 물류업: 1천만$
- R&D : 5백만$</td></tr>
<tr><td>ㅇ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
ㅇ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ㅇ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ㅇ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td><td rowspan="2">ㅇ5년간 감면
- 3년 100%,
2년 50%</td><td>ㅇ제조업: 1천만$
ㅇ관광업: 1천만$
ㅇ물류업: 5백만$
*기업도시: 1천만$</td></tr>
<tr><td>ㅇ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ㅇ기업도시 개발사업자</td><td>ㅇFDI 3천만$ 이상
ㅇ외투 50% 이상으로, 총 사업비 5억달러 이상</td></tr>
</table>

○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만 감면이 가능함

- 기존주식취득이나 5년 이상 장기차관은 외국인투자에는 해당되지만 정책목적과 차입적 성격으로 인하여 조세감면대상에서는 제외

○ 조세감면의 신청 절차

- 재정경제부장관(경협총괄과)에게 소정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 신규투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 증자하는 경우에는 증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신고일로부터 2년

2) 관세 감면

○ 적용대상: 조세감면대상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직접 출자받은 자본재 또는 내국지급수단(투자자금)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적용기간: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

○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전액 면제

3)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 수의계약

- 국유재산 총괄청(기획재정부), 국유재산 관리청(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장은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임대 또는 매각 가능
  ·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방식에 의함

○ 임대료 및 기간

- 토지 등의 가액에 1%이상의 요율적용(전용단지는 협의요율)
  · 국유재산법상 임대료율은 용도별로 2.5%(행정·보존목족), 4.0%(공무원후생복지), 1.0%(경작용), 2.5%(주거용), 5%(기타)이상
- 50년 범위 내에서 임대기간 갱신가능(종전 20년)

○ 매각

- 토지 등 매각시 매입대금의 일시불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일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연 4% 이하) 할 수 있음
  · 납부기일 연기는 1년의 범위, 분할납부의 경우 20년의 범위

○ 특례조항

-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의 관계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임대기간은 50년의 범위내로 할 수 있으며, 기부 혹은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임대토지위에 영구임차물 축조가능

○ 감면대상: 외투지역 내의 국가소유 토지,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국가산업단지

○ 감면기준 및 감면비율

<표 2-5>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

감면대상	감면내용	
ㅇ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업체	100% 감면	
ㅇ고도기술 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서 1백만달러 이상 외국인투자	단지형투자지역	100%
	산업단지	50%
ㅇ일반 제조업 & 5백만달러 이상	단지형투자지역	75%
	산업단지	50%

* 공유재산의 감면대상 사업·감면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4) 지자체의 유치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 지원대상: 지자체의 부지매입비나 분양가·임대료감면 차액

○ 지원요건: 지자체가 유치하려는 외국인투자의 외국인투자비율이 1/3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 지원원칙: 국고지원비율은 수도권지역은 40%, 기타지역은 75%적용(나머지는 해당 지자체 부담)

<표 2-6> 지자체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ㅇ부지매입비 지원	ㅇ외국인투자지역,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내 용지 중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지의 매입비
ㅇ분양가액 차액 보조. 임대료감면	ㅇ지방자치단체 또는 토개공, 주공, 수자원, 산단공,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분양시 임대·분양계약서상의 임대료·분양가액과 정상적인 임대료·분양가액과의 차액

○ 기타 지원

– 외국인투자기업의 교육훈련보조금, 외국인투자지역 조성개발자금 등

<표 2-7> 기타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ㅇ교육훈련보조금	ㅇ내국인 20명 이상 고용하기 위한 교육시 훈련기간(최대 6개월)동안 1인당 월 2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와 50%를 분담
ㅇ외국인투자지역조성개발 자금 지원	ㅇ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해 국가산업단지에 준하여 지원 · 진입도로·용수시설(100%), 폐수종말처리시설(50%) · 의료·교육시설은 개별수요를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결정

⑵ 입지지원제도

1)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

○ 개념

-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가 공장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을 유치협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

○ 지정절차

-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

○ 지정요건 및 대상업종

<표 2-8> 지정 요건 및 대상업종

대상업종	지정요건
·제조업 ·고도기술, 산업지원서비스업	○ 투자금액 3천만달러 이상
관광업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로서 → 외투금액 2천만달러 이상
물류업	○ 복합화물터미널, 공동집배송단지 및 항만시설 운영사업으로서 → 외투금액 2천만달러 이상
R&D	○ 연구개발시설에 설치, 증설의 경우 ○ 500만달러 &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자로서 관련 분야 3년 이상 연구 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 상시고용규모 20명 이상

<표 2-9> 지정 내용

구분	외국인투자지역	
	단지형	개별형
조세감면	○법인세, 소득세: 5년 ○지방세: 5~15년	○법인세, 소득세: 7년 ○지방세: 7~15년
관세부과	○자본재 3년간 면제	
임대료	○부지가액 10/1,000수준(협의 후 결정)	○부지가액 10/1,000이상
임대료감면	○고도기술: 100%(1백만$이상) ○일반제조: 75%(5백만$이상)	○100% 감면
지원분담	○수 도 권: 국비 40% ○비수도권: 국비 75%	
비고	○일원화('04.12.31)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⑶ Cash Grant(현금지원제)

1) 필요성

○ 현행 지원제도는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외국투자가에게는 '기본서비스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협상력(Leverage Power)을 갖춘 인센티브제도가 필요

○ 특히, 고임금, 고지가 등 경쟁국에 비해 취약한 투자환경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도입 필요

○ 경쟁국들도 Cash Grant를 주요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도 해외진출시 수혜*

* 영국, 아일랜드, 이스라엘 등은 투자금액의 5~40%를 현금으로 지원

2) 지원내용

○ 외국인투자가와의 협상에 의해 투자금액 중 일정액을 외국인투자기업에 현금으로 지원

- 고도기술 수반여부,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등 고려

○ 현금지원 대상분야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1천만달러 이상)
- R&D시설(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5백만달러 이상)
- 부품·소재사업(부품소재특별법, 1천만달러 이상)

3) 현금지원의 용도

○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 토지의 매입비 및 임대료,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비, 인프라 시설 등

⑷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1) 필요성

○ 외국인투자유치는 투자유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역량과 서비스가 중요하나,

- 지자체공무원들은 격무로 인해 근무를 기피하고, 민간전문기관의 참여는 IR자료 작성 등 매우 제한적인 실정

○ 지자체 및 민간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참여를 유도하고 PM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포상금제도를 운영

- 중국의 경우 외국인투자유치시 프로젝트 소개자 및 관련공무원에게 총투자액의 0.6~1.0%를 인센티브로 지급

2) 내 용

○ 외국인투자유치유공자에 대해 외국인투자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 수혜대상: 지자체공무원, Invest KOREA의 PM(Project Manager), 해외무역관 종사자 등

- 지급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기준은 외투위원회에서 마련

(5) 프로젝트매니저(PM)제도

1) 프로젝트매니저의 지정 및 운영

○ Invest KOREA 단장이 소속직원, 파견관을 PM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당해 기관의 공무원을 PM으로 지정

○ 지정된 PM은 외국인투자가 및 관계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은 PM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

2) PM의 업무

○ 외국투자가가 요구하는 정보수집·제공 및 면담알선

○ 외국인투자관련 업무지원과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 외국인투자가 및 임직원과 가족의 국내생활 정착지원

○ 조세감면, 입지지원 등의 인센티브제공과 관련한 의견제시

⑹ 외국인투자에 대한 One-stop 서비스: 민원사무 특례

1) 일괄처리제 (법 제17조제1항)

○ 외투기업이 공장설립승인 등 사업승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민원을 그 성격에 따라 5가지 범주의 민원군으로 분류하고 주된 민원이 인·허가되는 경우 부수되는 민원도 함께 처리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2) 자동승인제 (법 제17조제5항)

○ 외국인투자에 관련되는 모든 민원에 처리기간을 부여하고 그 처리기간 내에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 그 처리기간의 만료일 다음날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3) 조건부승인제 (법 제17조제10항)

○ 첨부서류 등 일부요건이 미비된 경우에도 이를 사후보완을 조건으로 미리 承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4) 투명성 확보제

○ 거부사유의 명시 (법 제17조제5항)
- 처리기간 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거부결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외국투자가 등에 통보하여야 함

○ 거부사유의 해소시 허가의무 (법 제17제7항)

- 외국투자가가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허가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3일 이내에 당초의 허가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민원처리기구의 장은 당초의 거부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 등을 거부하지 못함

제2절 외국인직접투자현황

가.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추이

(1) 외국인직접투자의 연도별 추이

○ 외국인투자는 해가 갈수록 그 규모와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신고기준으로 보면 1996년까지는 968건, 32억달러에 머물렀으나, 1999년에 2,104건, 155억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4,146건의 높은 유입실적을 보여주었으며 2009년에도 3,131건, 114억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

<표 2-10> 외국인직접투자추이

(단위: 건, 백만달러, %)

연도	건수	금액		평균금액
95	878	1,970.4		2.244
96	968	3,205.5		3.311
97	1,056	6,971.1		6.601
98	1,401	8,858.0		6.323
99	2,104	15,544.6		7.388
00	4,146	15,264.9		3.682
01	3,344	11,287.6	(5,034)	3.375
02	2,411	9,095.3	(3,806)	3.772
03	2,569	6,470.5	(5,138)	2.519
04	3,077	12,795.6	(9,289)	4.158
05	3,669	11,565.5	(9,618)	3.152
06	3,108	11,247.4	(9,123)	3.619
07	3,560	10,515.5	(7,850)	2.954
08	3,744	11,710.5	(8,371)	3.128
09	3,131	11,484.0	(6,668)	3.668
누계('95-09)	39,166	147,986.6		3.778

주: 신고기준이며 ( )는 도착기준임
자료: 1.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외국인투자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정리
(http://www.mke.go.kr/info/foreigner/sumTotal.jsp)

○ 평균금액 면에서 볼 때 1999년 건당 평균 7.3백만달러의 직접투자가 이루어졌

으며 이는 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2000년 이후 평균금액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최근 2008년 이후 건당 3백만달러를 상회하며 다소 증가하는 추세

⑵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유형 및 규모별 추이

○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유형에 따라 신규투자와 증액투자, 장기차관 등으로 구분

- 여기서 신규투자는 제조업의 공장설립이나 서비스업의 사업장 설립으로 이루어지는 신설형(Greenfield) 투자로 볼 수 있으며, 증액투자는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구주취득이나 신주취득하는 M&A형 투자로 볼 수 있음

<표 2-11> 투자유형별 외국인직접투자추이

(단위: 건, 백만달러, %)

구분	건수			금액			평균 신규투자	평균 증액투자
	신규투자	증액투자	장기차관	신규투자	증액투자	장기차관		
95	559	318		1,028.4	942.0		1.840	2.962
96	595	372		1,812.7	1,390.9		3.047	3.739
97	638	399	19	4,021.2	2,886.3	63.7	6.303	7.234
98	798	545	58	4,133.8	3,635.4	1,088.8	5.180	6.671
99	1,462	614	28	8,553.0	6,354.2	637.4	5.850	10.349
00	3,077	1,041	27	5,463.1	9,439.2	353.8	1.775	9.067
01	2,263	1,045	34	6,346.3	4,331.0	609.7	2.804	4.145
02	1,570	825	15	5,678.2	3,220.9	195.6	3.617	3.904
03	1,665	882	22	2,455.1	3,935.7	79.8	1.475	4.462
04	2,018	999	60	6,200.8	5,555.6	1,039.1	3.073	5.561
05	2,476	1,170	23	3,758.0	7,715.5	92.0	1.518	6.594
06	1,958	1,103	46	4,340.5	6,510.5	391.4	2.217	5.903
07	2,343	1,154	62	5,054.2	4,919.4	540.8	2.157	4.263
08	-	-	-	4,421.0	6,263.0	1,027.0	-	-
09	-	-	-	4,018.0	6.590.0	876.0	-	-
전체	21,422	10,467	394	67,284.3	73,689.8	6,995.1	2.747	5.812

주: 신고기준
자료: 1.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이용하여 정리
(http://www.mke.go.kr/news/bodo/bodoList.jsp)
2. 건수는 이규용외(2009)에서 재인용

○ 전체 투자건수에서 신규투자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동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투자건수 규모면에서 볼 때 증액투자의 약 2배 가까운 실적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투자금액 면에서 볼 때 신규투자금액은 2007년을 제외한 최근 5년간 증액투자금액보다 매우 낮음

○ 투자규모별 기간별 외국인직접투자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1백만달러 미만의 상대적 소액투자건수나 비중은 2000년 이후 큰 변동을 보이고 있지 않음

- 1백만달러~1천만달러 규모의 경우에는 2006년 이후 투자건수와 투자규모면에서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비해 1억달러 이상의 고액투자의 경우 투자건수나 금액 면에서 모두 증가하는 추세

<표 2-12> 투자규모별 기간별 외국인직접투자추이

(단위: 건, 백만달러, %)

구분	1백만달러미만		1백만달러~1천만달러		1천만달러~1억달러		1억달러이상		누계(1995-200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32,605	4,661	4,951	17,348	1,586	46,141	287	79,837	39,166	147,987
1995년	660	166	188	601	47	1,204	0	0	878	1,970
1996년	729	179	189	597	55	1,451	6	978	968	3,205
1997년	777	178	211	775	66	1,559	14	4,459	1,056	6,971
1998년	1,046	194	247	964	102	2,965	18	4,736	1,401	8,858
1999년	1,651	252	305	1,176	136	4,362	41	9,755	2,104	15,545
2000년	3,608	483	418	1,545	125	4,022	29	9,215	4,146	15,265
2001년	2,905	385	336	1,104	95	3,225	24	6,574	3,344	11,288
2002년	2,048	277	289	971	70	2,054	23	5,794	2,411	9,095
2003년	2,235	307	264	910	75	2,356	10	2,898	2,569	6,471
2004년	2,548	345	403	1,505	125	3,616	22	7,330	3,077	12,796
2005년	3,106	413	442	1,451	122	3,705	20	5,996	3,669	11,566
2006년	2,511	365	458	1,514	135	3,684	19	5,685	3,108	11,247
2007년	2,967	408	446	1,550	151	4,335	13	4,222	3,560	10,515
2008년	3,162	395	408	1,497	171	4,580	21	5,239	3,744	11,711
2009년	2,652	315	347	1,189	111	3,023	27	6,958	3,131	11,484

주: 신고기준
자료: 1.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외국인투자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정리
(http://www.mke.go.kr/info/foreigner/sumTotal.jsp)

(3)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이

○ 제조업의 경우 투자건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보다 감소하여 2009년에는 17.4%를 차지

- 이에 비해 도소매업의 투자건수의 비중은 1995년에는 32.5%였으나 최근 증

가하는 추세이나 그러나 투자금액을 보면 제조업과 도소매업 모두 2005년 이후 증가

– 금융보험업은 건수와 금액 면에서 2008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09년 다소 감소

<표 2-13> 업종별 외국인직접투자추이

(단위: 건, 백만달러, %)

연도	1995		2000		2005		2008		2009		누계 (1995–200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878	1,970	4,146	15,265	3,669	11,566	3,744	11,711	3,131	11,484	39,166	147,987
농림어업 및 광업	3	2	14	4	10	3	16	1	15	16	166	383
제조업	451	1,041	832	6,877	748	3,078	601	3,007	544	3,725	9,565	56,225
전기가스수도업	0	0	9	207	8	91	21	148	17	141	143	3,550
건설업	16	64	31	48	46	92	39	168	27	8	480	2,723
도소매업	285	349	2,182	2,033	1,937	807	2,003	938	1,518	2,204	18,580	19,737
음식숙박업	18	93	97	469	108	307	179	37	265	176	1,414	5,710
운수창고업	21	8	62	280	75	364	124	704	100	265	988	4,083
통신업	2	2	59	191	18	638	9	25	5	1	258	2,114
금융보험업	27	312	153	1,925	151	3,920	177	4,608	94	1,252	1,729	28,675
부동산임대업	2	1	55	950	90	959	125	689	149	1,420	940	7,382
사업서비스업	45	89	570	779	355	964	333	1,143	310	1,947	3,782	8,902
문화오락서비스업	2	3	39	1,238	62	309	51	151	34	55	515	7,398
공공 및 기타서비스업	6	7	43	264	61	34	66	92	53	275	606	1,10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및 광업	0.3	0.1	0.3	0.0	0.3	0.0	0.4	0.0	0.5	0.1	0.4	0.3
제조업	51.4	52.9	20.1	45.1	20.4	26.6	16.1	25.7	17.4	32.4	24.4	38.0
전기가스수도업	0.0	0.0	0.2	1.4	0.2	0.8	0.6	1.3	0.5	1.2	0.4	2.4
건설업	1.8	3.2	0.7	0.3	1.3	0.8	1.0	1.4	0.9	0.1	1.2	1.8
도소매업	32.5	17.7	52.6	13.3	52.8	7.0	53.5	8.0	48.5	19.2	47.4	13.3
음식숙박업	2.1	4.7	2.3	3.1	2.9	2.7	4.8	0.3	8.5	1.5	3.6	3.9
운수창고업	2.4	0.4	1.5	1.8	2.0	3.1	3.3	6.0	3.2	2.3	2.5	2.8
통신업	0.2	0.1	1.4	1.3	0.5	5.5	0.2	0.2	0.2	0.0	0.7	1.4
금융보험업	3.1	15.8	3.7	12.6	4.1	33.9	4.7	39.3	3.0	10.9	4.4	19.4
부동산임대업	0.2	0.0	1.3	6.2	2.5	8.3	3.3	5.9	4.8	12.4	2.4	5.0
사업서비스업	5.1	4.5	13.7	5.1	9.7	8.3	8.9	9.8	9.9	17.0	9.7	6.0
문화오락서비스업	0.2	0.2	0.9	8.1	1.7	2.7	1.4	1.3	1.1	0.5	1.3	5.0
공공 및 기타서비스업	0.7	0.3	1.0	1.7	1.7	0.3	1.8	0.8	1.7	2.4	1.5	0.7

주: 신고기준

자료: 1.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외국인투자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정리
(http://www.mke.go.kr/info/foreigner/sumTotal.jsp)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와 일자리창출

제1절 서론

가. 외국인직접투자현황

○ 전 세계적 탈규제와 기업의 글로벌화 전략과 맞물려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절대적 규모는 지난 20년간 급격히 증가

–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급격히 증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

– 이러한 배경에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간 인수합병(M&A 시장의 확대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증가세 확대[2])에 있음

○ 기업인수합병형태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실물투자활동증대와 병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나, 최근 단기적 투기성향을 지닌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의 차익성 투자가 늘어나면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고용창출, 기술이전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

– 국내기업의 공장이전을 수반한 해외직접투자증가에 따른 일자리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창출이 더욱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임

나.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정종인 외(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 산업을 중심으로 한 M&A투자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 오호일·박창현(2006)은 이러한 인수합병 증대 원인에는 세계성장 호조를 배경으로 하는 기업의 수익증대, 주가상승과 기업투자 확대, 세계화 등에 따른 기업경영전략 및 비용 절감 노력 강화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자본 확충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고, 투자에 따르는 외화자금유입으로 인해 금융 및 외환시장의 안정에도 기여[3]

-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증대는 선진경영기법의 전수 및 기술이전과 같은 외부효과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성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채널[4]
-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해 해당 사업장의 직접적인 일자리창출뿐만 아니라 산업연관효과로 인해 전·후방 산업의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5]

○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개인의 존재는 고용상황에 전적으로 영향 받음

- 사회 각 구성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확보를 통해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정상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일상을 영위
- 일자리창출은 그 무엇보다도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
-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한 일자리창출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당면과제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 기대

○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취업·고용파급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함

-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별 일자리창출효과를 비교해봄으로써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도출
- 분석을 위해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였으며, 지식경제부의 외국인직접투자 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가. 연구방법

---

3) 일반적으로 실물투자를 동반하지 않는 단기 간접투자보다 공장 및 사업장 설립을 수반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거시적 충격에 따른 자본유출이 더욱 쉽지 않아 외국인직접투자의 증대는 실물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에 도움을 줌
4) 연태훈(2003)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동일산업 내 그리고 후방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추정하였음
5) 강성진·손상학(2009)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의 증대는 재벌기업의 투자를 감소시키는 반면, 비재벌기업의 투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의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외국인직접투자와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기존연구에 대해 검토
- 둘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표준산업분류기준을 산업연관표 산업분류와 매칭
- 셋째,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상 생산유발계수 및 취업·고용계수를 사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를 도출
- 넷째,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별 일자리창출효과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함의 도출

나. 구성

⑴ 구성의 단계

○ 제3절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와 고용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연구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음

○ 제4절에서는 산업연관분석모형 및 외국인직접투자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외국인직접투자의 일자리창출효과의 크기를 계산하였음

○ 끝으로 제5절에서는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⑵ 주의할 점

○ 산업연관분석은 어느 일정한 시점의 산업연관구조를 바탕으로 상호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용이하지만, 동파급효과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태적분석을 하는데 용이하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과의 해석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3절 연구동향

가. 기존연구

○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일자리창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에 비해

그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실정임. 아래에서는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고용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주요연구에 대해 간략히 요약함

- 기존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 및 생산성파급효과와 같은 문제에 집중되어 왔음
- 그에 반해 외국인직접투자가 일자리창출에 대한 직간접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은 미미한 수준임. 즉,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산업간 연계관계를 통해 파급되는 간접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이 불충분함

○ 일반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규사업장 설립 및 해당기업의 투자 및 생산활동증대로 인해 일자리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방향이외에도,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시장진출에 따른 구조조정 및 국내경쟁기업의 폐쇄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

-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증대가 일자리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이러한 두 가지 힘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 결정
- 기존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분석방법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가 일자리창출에 미치는 효과의 유의성에 관한 상반된 결과에 도달하고 있음

(1) 강성진・이홍식(2010)

○ 지난 20년간 한국의 탈산업화[6])와 직접투자간의 관계를 분석

-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의 장기자료를 산업연관분석에 적용하여 직접투자의 고용창출 혹은 고용감소 효과의 구체적인 규모 분석

○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를 동시에 고려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와 탈산업화 간의 높은 상관관계 발견

-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산업공동화현상을 외국인직접투자가 상쇄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탈산업화에 따른 일자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선, 해외이전부문을 대체할 고부가가치제조업분야와 서비스산업 육성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함

6) 저자에 의하면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제조업의 고용이 감소하거나 혹은 부가가치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을 의미함

⑵ 박성재・이규용(2009)

○ 개별기업의 자료를 사용하여 외국인투자변동에 따른 기업의 일자리창출(고용증감)간의 관계를 분석

- 구체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정보와 고용보험DB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결합하여 외투기업의 고용추이 및 고용구조 분석에 치중
- 2000년에서 2006년 사이 비외투기업의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2.5%로 나타난 반면, 외투기업은 연평균 증가율이 3.7%로 나타남. 즉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일자리창출효과가 비외투기업의 고용창출효과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⑶ 김영태 외(2008)

○ 외국인직접투자의 변동이 국내설비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시차분포모형을 이용하여 추정

- 실질 국민소득과 외국인직접투자금액7)을 설명변수로 하고, 종속변수는 국내취업자수를 하는 간단한 시계열회귀모형 설정
- 회귀분석결과 유의성이 높은 베타계수를 단순 합산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탄력성을 추정

○ 추정결과에 따르면 1997년에서 2007년 사이 외국인직접투자가 약 15.5 만 명의 취업을 유발

- 외국인직접투자 1%증가 시 취업자 수는 0.007%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린필드형 투자가 1% 증가 시 취업자 수는 0.009% 증가하고, M&A형 투자증가 시 0.0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서비스업의 경우 탄성치는 0.01%로 나타남

⑷ 연태훈(2004)

○ 기존의 연구가 외투기업의 절대적 고용규모와 투자금액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줬

7)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의 4기까지의 시차변수(lag variable)를 모형에 포함

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해당 유치국의 고용창출이 미치는 직간접효과 모두를 포괄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

- 산업별 수출과 고용간의 관계를 밝힌 Greenway et. al.(1999)의 모형을 수정하여 모델을 확장시킴8)

○ 해당산업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계수는 음의 값을 가지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전방산업 및 후방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신규사업장설립을 통해 고용을 증가시키기는 하나 시장구조의 변화를 야기하여 자체기업 및 경쟁기업의 구조조정을 야기하여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

(5) 정세은・김봉한(2009)

○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생산성, 고용, 투자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실증분석

-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에 대한 직접적 효과는 양(+)의 부호를 가지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6) 송영남(2005)

○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연구로서 한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저해요인을 분석

- 원자재 접근성 부재, 안보적 불안정성, 사회간접자본의 불충분성, 중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규모, 임금대비 낮은 노동생산성, 낮은 준법성, 재벌중심의 시장구조를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요 저해요인으로 분석

(7) 이동헌・손정헌(2009)

---

8) 산업별 대표기업을 설정한 뒤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에서 조건부 노동수요함수를 도출하고 있다. 균형생산량이 다시 해당산업의 전체생산량 및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두 가지 균형식을 결합하여 균형노동수요방정식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전방산업 및 후방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및 시장경쟁지수(HHI)를 포함하는 하는 모형식을 설정하였음

○ 영국의 웨일스 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정책에 따른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파급효과를 검토함

- 자동차 부품 및 전자산업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 1997년 기준으로 전체 제조업의 1/3가량인 7만 5천명이 외투기업에 의해 고용되어 있었는데, 이중 약 3만 명이 전자 및 자동차 부문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 기존연구의 한계점

○ 앞선 연구들이 외국인직접투자와 일자리증가간의 단순한 상관관계, 외투기업과 비외투기업간의 단순비교 및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데 그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음(강성진·이홍식, 2010)

- 또한 다수의 연구가 제조업중심으로 편향되어 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경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 존재
-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과거 약 20년 동안 외국인직접투자유입으로 인한 산업별 구체적인 일자리창출규모를 추정

제4절 외국인직접투자의 일자리창출 파급효과

가. 분석모형

○ 외국인직접투자가 한국의 일자리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 분석모형을 사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유발한 일자리규모를 추정

- 외국인직접투자는 공장설립 및 사업장 확대로 인한 직접적인 고용효과뿐만 아니라, 해당기업의 생산활동 및 투자활동증가에 따라 전·후방산업의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침.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직간접적인 일자리창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산업간 상호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이 타당함
- 산업연관분석에서 특정 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증대에 따른 직·간접적인 일자

리창출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인직접투자의 증대로 인한 경제전체의 생산유발액의 크기를 먼저 계산함

· 생산유발효과는 소비, 투자, 수출 등의 경제내 최종수요의 변화가 발생할 때, 각 산업부문에 미치는 산출물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투입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통해 계산함

· <표 3-1>에서 제1열, 제1산업의 중간투입내역 $x_{11}, x_{21}, ..., x_{n1}$을 총투입액 X_1으로 나눈 값을 $a_{11}, a_{21}, ..., a_{n1}$이라하면 이는 제1산업 생산물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 산업부문 생산물 크기를 나타내는 투입계수가 된다. 제1행, 제1산업의 경우를 보면 $x_{11}, x_{12}, ..., x_{1n}$을 총산출액 X_1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a_{11}, a_{12}, ..., a_{1n}$라 하면 이들은 1산업의 산출액이 각각의 산업에 배분된 정도를 의미함

· <표 3-1>에서 각 산업부문의 수급관계를 살펴보면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의 합은 총산출액과 일치하므로 아래와 같은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음

$$a_{11}X_1 + a_{12}X_2 + ... + a_{1n}X_n + Y_1 = X_1$$

$$a_{n1}X_1 + a_{n2}X_2 + ... + a_{nn}X_n + Y_n = X_n$$

· 이 연립방정식을 행렬식으로 표시하면 아래 식 (1)과 같음

$$AX + Y = X \qquad (1)$$

· 여기서 A는 투입계수 행렬, X는 총산출액 벡터, Y는 최종수요벡터를 나타내며 이를 전개하여 X에 대해 풀면 식 (2)를 얻을 수 있음

$$X = (I - A)^{-1} Y \qquad (2)$$

· 위의 식 (2)에서 $(I-A)^{-1}$행렬이 바로 생산유발계수가 됨. 위의 식에서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 Y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산출단위를 나타내는데 도출과정에서 역행렬이 이용되므로 역행렬계수라고도 함.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의 증가로부터 일어나는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승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케인즈의 투자승수와 구별하여 다부문승수(multi-sector multiplier) 또는 레온티에프승수(Leontief multiplier)라 불림(한국은행, 2004). 이러한 생산유발계수를 통하여 한 단위의 최종수

요의 증가가 전체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미치게 되는 생산유발효과를 계산할 수 있음

· 최종수요에서 다른 부문의 최종수요는 변동이 없고 오직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한 최종수요만 변화가 있다고 가정하면 식 (2)를 아래 식 (3)과 같이 쓸 수 있음

$$\triangle X = (I-A)^{-1} \triangle I_{fdi} \ . \qquad (3)$$

· 위의 식에서 I_{fdi}는 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을 28개 산업분류로 나타낸 벡터로 정의. 식 (3)을 이용하면 최종수요인 외국인직접투자 한 단위가 변할 때 산출량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음

· <표 3-2> 생산유발계수표를 행으로 보면, r_{11}은 전체 산업에 각각 1단위가 생산되었을 때 제1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고 r_{12}는 제2산업부문 생산과정에 배분된 정도, 그리고 r_{13}는 제3산업부문에 대한 배분의 정도를 표시. 따라서 생산유발계수표의 첫 번째 행렬의 합과 각 산업에 유입된 최종수요를 곱하면 전방연관효과에 따라 전체 산업에 1단위의 산출량이 증가하였을 때 제1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 따라서 최종수요벡터를 외국인직접투자 금액벡터로 놓고 식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triangle X = (I-A)^{-1} \triangle I_{fdi} . \qquad (4)$$

[9]

○ 최종수요의 발생이 생산을 유발하고 그 생산이 다시 노동수요를 유발하는 파급메커니즘에 기초하여 최종수요와 노동유발을 연결시킴으로써 노동유발효과분석과 생산활동증가가 일자리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총산출액으로 나눈 것을 노동계수라고 하는데, 노동계수는 취업계수와 고용계수로 구분됨. 노동량에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함한 노동계수를 취업계수라 하고, 노동량에 임금근로자만 포함한 노동계수는 고용계수라고 함

– 본 연구에서는 노동량 산출에 있어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주 및 무급

9) I^i_{fdi}를 i산업에 대한 직접투자의 합이라 가정하면, 3개의 산업으로 X를 계산한 행렬 계산식을 구성하면 아래와 같음

$$\begin{pmatrix} \triangle X_1 \\ \triangle X_2 \\ \triangle X_3 \end{pmatrix} = \begin{pmatrix} r_{11} & r_{12} & r_{13} \\ r_{21} & r_{22} & r_{23} \\ r_{31} & r_{32} & r_{33} \end{pmatrix} \begin{pmatrix} \triangle I^1_{fdi} \\ \triangle I^2_{fdi} \\ \triangle I^3_{fdi} \end{pmatrix}$$

근로자까지 모두 포함한 취업계수를 사용함. 취업계수(l_w)를 수식으로 나타내어보면 식 (5)과 같고 L_w는 취업자 수, X는 산출액을 나타냄

$$l_w = L_w / X \tag{5}$$

- 위의 식(5)를 산출액 증가에 따른 취업자 수의 변화의 관계로 나타내면 다음의 식 (6)과 같음

$$\triangle L_w = l_w \triangle X \tag{6}$$

- 식(4)와 식(5)를 각각 위의 식(6)에 대입시키면 다음의 식(7)을 도출. 식(7)을 이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별 일자리창출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있음

$$\triangle L = l_w (I - A)^{-1} \triangle I_{fdi} \tag{7}$$

<표 3-1> 산업연관표 형식

		중간수요 1 2 … … n	최종수요	총산출액
중간투입	1 2 n	x_{11} x_{12}… … x_{1n} x_{21} x_{22}… … x_{2n} x_{n1} x_{n2}… … x_{nn}	Y_1 Y_2 Y_n	X_1 X_2 X_n
부가가치		V_1 V_2 … … V_n		
총투입액		X_1 X_2 … … X_n		

<표 3-2> 생산유발계수표 형식

	1산업	2산업	3산업	행 합계
1산업	r_{11}	r_{12}	r_{13}	S_1
2산업	r_{21}	r_{22}	r_{23}	S_2
3산업	r_{31}	r_{32}	r_{33}	S_3
열합계	R_1	R_2	R_3	

나. 분석자료

○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지식경제부 외국인직접투자 원자료에 바탕을 두었음. 하지만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정과정을 적용

– 외국인직접투자의 파급효과를 계산함에 있어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이 아닌 도착금액을 기준으로 효과를 계산

· 실제투자활동에 이어지는 금액의 크기는 신고금액보다 해당기간의 도착금액에 더 의존하므로 실제도착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

– 외국인직접투자 원자료가 미화 달러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원화가치로 적절하게 전환하는 것이 필요

·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미화 달러 대 원화 기준환율의 연간 평균치를 적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파급효과를 계산

– 투자년도를 원자료상의 외국인직접투자 신고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

· 원자료상에 신고년도는 명시되어 있는 반면 실제투자년도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신고년도를 투자년도로 사용

– 본 고에 이용된 자료의 기간은 1990년부터 2008년까지임. 분석의 편의상 1기를 1990년부터 1995년으로, 2기를 1996년부터 2001년으로, 3기를 2002년부터 2008년까지로 정의. 또한 산업연관표가 5년 단위로 발표되는 점을 감안하여 1기에는 1995년도 산업연관표를, 2기에는 2000년도 산업연관표를, 3기에는 2005년도 산업연관표를 적용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상의 산업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 원자료간의 산업분류를 매칭[10)]

○ 본 장의 목표가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 일자리창출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있음을 주지한다면, 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정책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이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여야 함

– 하지만 현재 지식경제부가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자료 하에서는 특정 외국인기업이 한국을 투자지역으로서 택한 동기가 투자환경의 개선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그와 무관한 독립적인 의사결정의 산물인지 식별이 불가능함. 따라서 정책으로 인한 투자환경개선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유입금액을 추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정과정을 거침

10)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표 3-5> 참조

– 개별 외투기업의 투자신고금액 및 주요 사업의 산업분야를 바탕으로 각종 외국인투자인센티브요건을 만족하는 기업들을 선정함

– 앞장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주요 외국인투자인센티브정책으로 아래의 3가지 수단[11])이 존재함. 아래 명시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금액, 산업종류 및 입지상태와 같은 일정요건을 만족해야 함

· 세제지원

· 입지지원

· 현금지원(Cash Grant)

– 정부정책으로 인한 투자환경개선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유입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위 3가지 인센티브 세부항목별 최소투자금액요건을 최소한 1개라도 만족하는 기업들만을 추출함.[12]) 이렇게 추출된 금액을 정부정책으로 인한 외국인직접투자유입금액으로 가정하기로 함. 지식경제부에서 제공하는 외국인직접투자 원자료의 제한성으로 인해 해당 인센티브를 제공받기 위한 최하 투자금액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들을 추출했음을 주의바람. 이는 제한된 자료 하에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의 일자리창출효과를 계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작업임을 밝혀둠[13])

– 본 연구에서 인센티브 최소투자요건은 다음과 같은 요건 중에서 한 가지 요건 이상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을 인센티브 최소투자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으로 정의함

· 세제지원혜택의 인센티브 최소투자금액 요건은 기업에는 조세감면대상과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및 매각가격 혜택으로 구분이 가능함. 조세감면대상기업은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 산업 전체, 개발형 투자지역 기업(제조업 3천만달러, 관광업: 2천만달러, 물류업: 1천만달러, R&D: 5백만달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3천만달러 이상)가 있음.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및 매각가격 혜택에는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1백만달러 이상 투자기

11) 주요 인센티브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건에 대해서는 제2장의 3절 내용을 참조하길 바람

12) 최소 투자금액 이외에도 입주형태(e.g.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및 고도기술수반 사업여부 등과 같은 다른 요건이 존재하지만, 제한된 데이터로 투자금액 기준으로만 기업들을 추출함

13) FDI 정책은 인센티브 등 법·제도 외에 투자환경개선, 기 진출 기업 애로사항 해소, 투자설명회 등 포괄적이므로 본 작업의 결과가 정책의 효과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FDI 투자액의 고용창출 규모도 동시에 추정하였음. 한편, 본 연구의 원래 목적은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효과를 보는 것이므로, 전체 FDI 금액 혹은 인센티브 최소투자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의 투자액으로 볼 경우 순수 정책의 효과가 과대평가될 가능성도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임

업과 일반제조업이면서 5백만달러 이상 투자기업이 해당함
· 입지지원혜택의 인센티브 최소투자금액요건은 제조업, 고도기술 산업지원 서비스업 3천만달러 이상, 관광업 2천만달러 이상, 물류업 2천만달러 이상, 연구개발업 500만달러 이상이 있음
· 현금지원(Cash Grant)혜택의 인센티브 최소투자금액요건으로는 고도기술 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1천만달러 이상, R&D시설 5백만달러 이상 부품소재 산업 1천만달러 이상이 있음

○ <표 3-3>은 인센티브 수혜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군의 지난 20년간 국내투자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표 3-4>는 전체 외국인직접투자기업군의 투자실적을 나타내어 주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자료로 인해 세제지원, 입지지원, 현금지원 요건 중 적용 산업별 최소투자금액 만을 기준으로 기업들을 추출하여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 인센티브를 수혜한 기업들의 투자실적과 차이가 있음을 주의 바람

- 1기(1990년-1995년)의 인센티브 수혜조건에 부합하는 기업군의 외국인직접투자실적은 약 68억달러로 집계되었으며 86건으로 나타났음. 반면 전체 외국인직접투자기업군의 투자실적은 77억달러로 집계되었으며 819건으로 나타남. 산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 산업이 약 12억달러, 통신 및 방송 산업이 약 18억달러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서비스산업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집중현상은 전체 외국인기업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 2기(1996년-2001년)의 인센티브 수혜조건에 부합하는 기업군의 외국인직접투자실적은 약 222억달러로 집계되었으며 884건으로 나타났음. 반면 전체 외국인직접투자기업군의 투자실적은 약 251억달러로 집계되었으며 3,882건으로 나타남. 산업별로 살펴보면 통신 및 방송 산업이 약 23억달러, 도소매 산업이 약 18억달러, 비금속광물 산업이 33억달러, 금융 및 보험 산업이 약 17억달러,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이 약 13억달러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기에 비해 제조업분야로의 외국인직접투자가 많이 증가한 것이 두드러짐
- 3기(2002년-2008년)의 인센티브 수혜조건에 부합하는 기업군의 외국인직접투자실적은 약 421억달러로 집계되었으며 1,634건으로 나타났음. 반면 전체 외국인직접투자기업군의 투자실적은 약 477억달러로 집계되었으며 9,040건으

로 나타남. 산업별로 살펴보면 통신 및 방송 산업이 약 126억달러, 비금속광물 산업이 약 60억달러, 금융 및 보험 산업이 약 36억달러,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이 약 35억달러, 광산품 산업이 약 22억달러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 인센티브 수혜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실적

(단위: 미화 백만달러)

산업명	1기(1990년-1995년)		2기(1996년-2001년)		3기(2002년-2008년)	
	건수	도착금액	건수	도착금액	건수	도착금액
농림수산품	0	0.0	2	201.0	0	0.0
광산품	0	0.0	5	1,934.8	6	2,251.8
음식료품	0	0.0	1	30.0	0	0.0
섬유 및 가죽제품	6	519.1	11	1,171.7	12	374.0
목재 및 종이제품	22	493.1	92	1,153.4	139	1,160.4
인쇄 및 복제	0	0.0	32	393.5	58	517.5
석유 및 석탄제품	3	326.3	27	1,380.9	34	678.3
화학제품	2	19.6	29	818.9	60	627.1
비금속 광물제품	9	502.4	190	3,345.6	389	6,043.8
제1차 금속제품	4	68.5	45	21.4	68	88.4
금속제품	2	43.4	14	175.8	17	505.3
일반기계	13	230.2	152	1,003.7	207	995.1
전기 및 전자기기	11	860.2	79	1,394.1	224	3,550.2
정밀기기	0	0.0	4	33.2	4	82.1
수송장비	0	0.0	5	332.3	15	314.2
기타 제조업제품	0	0.0	0	0.0	0	0.0
전력, 가스 및 수도	0	0.0	14	0.0	40	378.6
건설	2	279.1	22	474.7	53	638.2
도소매	0	0.0	17	1,882.8	27	3,164.2
음식점 및 숙박	1	240.5	10	145.8	6	287.6
운수	1	173.3	30	1,469.9	53	2,703.7
통신 및 방송	5	1,823.2	15	2,325.0	38	12,600.0
금융 및 보험	4	1,223.0	9	1,709.0	34	3,628.9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	4.7	78	816.0	148	1,413.1
공공행정 및 국방	0	0.0	0	0.0	0	0.0
교육 및 보건	0	0.0	0	0.0	1	26.5
사회 및 기타서비스	0	0.0	1	16.7	1	85.7
기타	0	0.0	0	0.0	0	0.0
합계	86	6,806.5	884	22,230.2	1,634	42,114.7

자료: 지식경제부

<표 3-4>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실적(전체)

(단위: 미화 백만달러)

산업명	1기(1990년−1995년)		2기(1996년−2001년)		3기(2002년−2008년)	
	건수	도착금액	건수	도착금액	건수	도착금액
농림수산품	0	0.0	10	224.5	25	2.8
광산품	13	6.1	50	1,971.2	69	2,372.8
음식료품	8	4.9	10	34.5	14	12.4
섬유 및 가죽제품	29	536.1	67	1,202.8	81	401.2
목재 및 종이제품	49	521.1	92	1,203.4	139	1,234.1
인쇄 및 복제	10	5.2	32	413.3	58	543.5
석유 및 석탄제품	15	331.6	27	1,387.3	34	693.2
화학제품	24	38.4	64	849.5	107	686.3
비금속 광물제품	25	516.8	190	3,449.6	389	6,288.8
제1차 금속제품	15	73.5	45	53.2	68	127.1
금속제품	18	49.7	69	203.0	89	545.0
일반기계	73	274.7	152	1,075.9	207	1,112.2
전기 및 전자기기	27	882.0	81	1,432.9	230	3,643.1
정밀기기	7	3.9	29	44.3	31	87.7
수송장비	0	0.0	6	332.3	32	329.4
기타 제조업제품	0	0.0	0	0.0	2	0.2
전력, 가스 및 수도	5	17.8	14	9.5	40	463.1
건설	321	818.4	1,933	1,397.7	4,953	1,801.2
도소매	23	13.1	128	1,977.6	380	3,470.5
음식점 및 숙박	11	257.0	126	214.9	413	378.2
운수	7	177.9	85	1,609.0	131	2,941.8
통신 및 방송	26	1,918.4	75	2,688.2	174	13,354.8
금융 및 보험	6	1,230.0	77	2,003.1	289	4,575.3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88	81.8	408	1,279.1	803	2,334.5
공공행정 및 국방	3	9.5	28	6.1	43	19.2
교육 및 보건	10	4.7	48	24.1	140	121.6
사회 및 기타서비스	6	14.9	36	75.9	99	204.2
기타	0	0.0	0	0.0	0	0.0
합계	819	7,787.7	3,882	25,163.0	9,040	47,744.1

자료: 지식경제부

○ <표 3-5>와 <표 3-6>은 앞서 살펴본 인센티브 수혜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실적을 투자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나타낸 표임.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자료로 인해 개별기업의 투자를 목적별로 나눌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에서 산업별·연도별로 제공하는 목적별 외국인직접투자를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 접목시킴

- 먼저, 지식경제부에서 산업별 목적별 외국인직접투자를 본 연구의 분석기간에 맞게 재정리하여 각 산업의 목적별 비율을 구함. 지식경제부에서 제공하는 산업구분은 산업연관분석의 산업구분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음. 따라서 산업연관표에서는 두 개로 나누어지는 산업이 외국인직접투자 통계에서는 한 산업으로 정의되어 있는 경우, 투자금액을 동일한 비중으로 나누어 재정의함
- 산업별 목적별로 구해진 비율에 각 기간의 총투자금액을 앞서 살펴본 인센티브 수혜기업들의 투자실적과 외국인투자 전체 실적을 적용하여 각 산업과 기간에 대해 M&A형 투자와 greenfield형 투자로 나누어 자료를 정리함
- 1기(1990년–1995년)에는 인센티브수혜대상기업에서는 M&A형 투자가 나타나지 않으며, 전체실적의 경우에도 거의 나타나지 않음. 반면, 거의 대부분의 투자는 greenfield형 투자로 나타남
- 2기(1996년–2001년)에는 1기에 비해 M&A형 투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남. M&A형 투자는 비금속 광물제품, 목재 및 종이, 방송통신이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1기에 비해 많은 산업에서 M&A형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greenfield형 투자는 비금속 광물제품, 방송통신, 석유 및 석탄제품 에서 높은 투자를 나타냄
- 3기(2002년–2008)에는 M&A형 투자가 서비스업 관련 산업에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냄. 산업별 M&A형 투자는 금융 및 보험, 방송통신, 운수업에서 큰 비중으로 이루어졌음. greenfield형 투자는 방송 통신, 비금속 광물제품, 전기 및 전자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3-5> 인센티브 수혜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목적별 투자실적

(단위: 미화 백만달러)

산업명	1기(1990년-1995년)		2기(1996년-2001년)		3기(2002년-2008년)	
	M&A	Greenfield	M&A	Greenfield	M&A	Greenfield
농림수산품	0.0	0.0	0.6	200.4	0.0	0.0
광산품	0.0	0.0	16.7	1918.1	592.5	1659.3
음식료품	0.0	0.0	8.5	21.5	0.0	0.0
섬유 및 가죽제품	0.0	519.1	667.8	503.9	77.5	296.5
목재 및 종이제품	0.0	493.1	809.1	344.3	157.3	1003.1
인쇄 및 복제	0.0	0.0	322.4	71.1	42.2	475.3
석유 및 석탄제품	0.0	326.3	425.9	955.0	306.0	372.3
화학제품	0.0	19.6	252.6	566.3	282.9	344.2
비금속 광물제품	0.0	502.4	1834.8	1510.8	1440.1	4603.7
제1차 금속제품	0.0	68.5	12.0	9.4	47.3	41.1
금속제품	0.0	43.4	98.6	77.2	270.3	235.0
일반기계	0.0	230.2	288.2	715.5	348.1	647.0
전기 및 전자기기	0.0	860.2	400.3	993.8	1242.1	2308.1
정밀기기	0.0	0.0	11.5	21.7	21.5	60.6
수송장비	0.0	0.0	126.1	206.2	163.8	150.4
기타 제조업제품	0.0	0.0	0.0	0.0	0.0	0.0
전력, 가스 및 수도	0.0	0.0	0.0	0.0	378.6	0.0
건설	0.0	279.1	15.5	459.2	253.3	384.9
도소매	0.0	0.0	204.0	1678.8	1086.2	2078.0
음식점 및 숙박	0.0	240.5	15.6	130.2	6.0	281.6
운수	0.0	173.3	104.5	1365.4	1494.4	1209.3
통신 및 방송	0.0	1823.2	770.2	1554.8	1520.3	11079.7
금융 및 보험	0.0	1223.0	515.0	1194.0	2133.3	1495.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	4.7	166.0	650.0	342.6	1070.5
공공행정 및 국방	0.0	0.0	0.0	0.0	0.0	0.0
교육 및 보건	0.0	0.0	0.0	0.0	9.3	17.2
사회 및 기타서비스	0.0	0.0	0.1	16.6	5.7	80.0
기타	0.0	0.0	0.0	0.0	0.0	0.0
합계	0.0	6806.6	7066.0	15164.2	12221.3	29893.4

자료: 지식경제부

<표 3-6> 산업별 목적별 외국인직접투자실적(전체)

(단위: 미화 백만 불)

산업명	1기(1990년-1995년)		2기(1996년-2001년)		3기(2002년-2008년)	
	M&A	Greenfield	M&A	Greenfield	M&A	Greenfield
농림수산품	0.0	0.0	0.6	223.9	0.1	2.7
광산품	0.0	6.1	17.0	1954.2	624.4	1748.4
음식료품	0.0	4.9	9.8	24.7	8.1	4.3
섬유 및 가죽제품	0.0	536.1	685.5	517.3	83.1	318.1
목재 및 종이제품	0.0	521.1	844.2	359.2	167.3	1066.8
인쇄 및 복제	0.0	5.2	338.6	74.7	44.3	499.2
석유 및 석탄제품	0.0	331.6	427.9	959.4	312.7	380.5
화학제품	0.0	38.4	262.0	587.5	309.6	376.7
비금속 광물제품	0.0	516.8	1891.9	1557.7	1498.5	4790.3
제1차 금속제품	0.0	73.5	29.8	23.4	68.0	59.1
금속제품	0.0	49.7	113.8	89.2	291.6	253.4
일반기계	0.0	274.7	309.0	766.9	389.1	723.1
전기 및 전자기기	0.0	882.0	411.5	1021.4	1274.6	2368.5
정밀기기	0.0	3.9	15.3	29.0	23.0	64.7
수송장비	0.0	0.0	126.1	206.2	171.7	157.7
기타 제조업제품	0.0	0.0	0.0	0.0	0.1	0.1
전력, 가스 및 수도	0.0	17.8	8.3	1.2	463.1	0.0
건설	0.0	818.4	45.6	1352.1	714.8	1086.4
도소매	0.2	12.9	214.2	1763.4	1191.3	2279.2
음식점 및 숙박	0.0	257.0	23.1	191.8	7.9	370.3
운수	0.0	177.9	114.3	1494.7	1626.0	1315.8
통신 및 방송	0.0	1918.4	890.5	1797.7	1611.4	11743.4
금융 및 보험	0.0	1230.0	603.7	1399.4	2689.7	1885.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	81.8	260.2	1018.9	565.9	1768.6
공공행정 및 국방	0.0	9.5	2.0	4.1	6.7	12.5
교육 및 보건	0.0	4.7	8.0	16.1	42.6	79.0
사회 및 기타서비스	0.0	14.9	0.5	75.4	13.7	190.5
기타	0.0	0.0	0.0	0.0	0.0	0.0
합계	0.2	7787.3	7653.4	17509.5	14199.2	33545.0

<표 3-7> 산업연관표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산 업	산업연관표	한국표준산업분류
농림수산품	01	01, 02, 03, 05
광산품	02	06, 07, 08, 10, 11, 12
음식료품	03	15, 16
섬유 및 가죽제품	04	13, 14, 17, 18, 19
목재 및 종이제품	05	20, 21
인쇄, 출판 및 복제	06	22
석유 및 석탄제품	07	23
화학제품	08	24, 25
비금속 광물제품	09	26
제1차 금속제품	10	27
금속제품	11	28
일반기계	12	29
전기 및 전자기기	13	30, 31, 32
정밀기기	14	33
수송장비	15	34, 35
가구 및 기타 제조업제품	16	36, 37
전력, 가스 및 수도	17	40, 41
건설	18	42, 45, 46
도소매	19	47, 50, 51, 52
음식점 및 숙박	20	55, 56
운수 및 보관	21	60, 61, 62, 63
통신 및 방송	22	64
금융 및 보험	23	65, 66, 67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4	58, 68, 69, 70, 71, 72, 74 75
공공행정 및 국방	25	38, 76, 84, 96
교육 및 보건	26	80, 85, 86, 73
사회 및 기타서비스	27	59, 87, 88, 90, 91, 92, 93, 95
기타	28	99

다. 파급효과(취업 · 고용, 생산유발)

(1) 취업 · 고용유발인원의 추정

○ 외국인직접투자가 한국의 일자리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모형을 사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유발한 일자리규모를 추정. <표 3-8>과 <표 3-9>는 인센티브수혜요건을 만족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실적을 바탕으로 도출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취업 및 고용파급효과를 나타낸 것이고, <표 3-10>과 <표 3-11>은 전체 외국인투자기업군의 투자금액을 바탕으로 도출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취업 및 고용파급효과를 나타냄. 아래 설명은 <표 3-8>과 <표 3-9>를 바탕으로 함을 주의 바람

- 1기(1990년-1995년)에 유입된 인센티브 수혜조건에 부합하는 외투기업의 직접투자금액은 약 68억달러로 집계되었는데, 산업전체에 유발한 취업인원은 158,285명으로 도출됨. 자영업자나 무임금가사노동자를 제외한 고용유발인원은 122,881명으로 추정되었음. 음식점 및 숙박, 금융 및 보험 그리고 통신산업 순으로 취업유발인원이 타산업에 비해 크게 나타남. 음식점 및 숙박산업으로의 유입금액의 상대적 크기는 금융 및 통신산업에 적었지만, 취업유발효과는 더 크게 나타남. 이는 음식점 및 숙박산업의 생산활동 및 고용의 고유한 특징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짐
- 2기(1996년-2001년)에 유입된 인센티브 수혜조건에 부합하는 외투기업의 직접투자금액은 약 222억달러로 전기에 비해 절대적 규모가 크게 증가. 2기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산업전체에 유발한 취업인원은 462,226명으로 도출. 자영업자나 무임금가사노동자를 제외한 고용유발인원은 314,334명으로 추정. 도소매, 금융 및 보험, 운수산업 순으로 취업유발인원이 타산업에 비해 큼
- 3기(2002년-2008년)에 유입된 인센티브 수혜조건에 부합하는 외투기업의 직접투자금액은 약 421억달러로 전기에 비해 약 1.9배 정도 증가함. 3기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산업전체에 유발한 취업인원은 559,806명으로 도출됨. 자영업자나 무임금가사노동자를 제외한 고용유발인원은 410,985명으로 추정되었음. 도소매, 운수 그리고 통신 및 방송 산업 순으로 취업유발인원이 타산업에 비해 크게 나타남

<표 3-8> 인센티브 수혜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취업유발효과

(단위: 명)

산업명	1기 (1990년-1995년)	2기 (1996년-2001년)	3기 (2002년-2008년)
농림수산품	3,350	28,057	12,603
광산품	961	22,806	16,590
음식료품	664	1,743	2,048
섬유 및 가죽제품	11,580	22,445	6,070
목재 및 종이제품	5,647	15,059	11,703
인쇄 및 복제	1,014	9,589	7,848
석유 및 석탄제품	455	1,021	579
화학제품	2,158	10,537	7,847
비금속 광물제품	6,093	31,673	34,689
제1차 금속제품	1,164	2,037	2,065
금속제품	1,290	5,917	8,513
일반기계	3,018	13,184	9,328
전기 및 전자기기	8,790	9,149	19,902
정밀기기	154	951	1,588
수송장비	246	3,623	3,344
기타제조업제품	377	860	1,112
전력, 가스 및 수도	607	2,108	2,918
건설	4,268	9,689	10,673
도소매	6,581	128,078	145,516
음식점 및 숙박	37,936	22,358	25,551
운수	5,709	31,895	63,670
통신 및 방송	18,066	14,586	53,727
금융 및 보험	30,713	40,886	40,75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4,275	19,856	50,513
공공행정 및 국방	0	0	535
교육 및 보건	1,895	7,601	4,812
사회 및 기타서비스	1,271	6,517	15,306
합계	158,285	462,226	559,806

<표 3-9> 인센티브 수혜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고용유발효과

(단위: 명)

산업명	1기 (1990년-1995년)	2기 (1996년-2001년)	3기 (2001년-2008년)
농림수산품	337	2,073	1,199
광산품	949	20,650	15,278
음식료품	617	1,282	1,481
섬유 및 가죽제품	9,972	19,561	5,080
목재 및 종이제품	5,362	13,077	10,348
인쇄 및 복제	967	7,936	6,459
석유 및 석탄제품	453	1,008	571
화학제품	2,117	10,087	7,491
비금속 광물제품	5,951	29,199	32,008
제1차 금속제품	1,151	1,953	2,005
금속제품	1,228	4,939	7,093
일반기계	2,937	12,079	8,600
전기 및 전자기기	8,674	8,874	19,292
정밀기기	150	879	1,490
수송장비	243	3,558	3,270
기타 제조업제품	359	669	873
전력, 가스 및 수도	607	2,108	2,913
건설	4,074	9,202	10,583
도소매	2,336	51,900	66,699
음식점 및 숙박	16,117	9,713	11,969
운수	4,404	23,036	43,892
통신 및 방송	17,947	14,156	52,343
금융 및 보험	30,517	40,604	40,349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3,059	15,811	45,546
공공행정 및 국방	0	0	535
교육 및 보건	1,689	6,819	4,395
사회 및 기타서비스	665	3,161	9,224
합계	122,881	314,334	410,985

<표 3-10> 전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취업유발효과

(단위: 명)

산업명	1기 (1990년–1995년)	2기 (1996년–2001년)	3기 (2002년–2008년)
농림수산품	3,976	31,603	15,094
광산품	1,212	23,329	17,535
음식료품	796	2,037	2,447
섬유 및 가죽제품	12,043	23,133	6,627
목재 및 종이제품	6,152	16,001	12,657
인쇄 및 복제	1,260	10,426	8,487
석유 및 석탄제품	485	1,065	627
화학제품	2,632	11,288	8,783
비금속 광물제품	6,951	33,413	36,595
제1차 금속제품	1,544	2,567	2,502
금속제품	1,852	7,459	10,040
일반기계	3,759	14,382	10,570
전기 및 전자기기	9,243	9,764	20,898
정밀기기	230	1,141	1,739
수송장비	290	3,731	3,611
기타 제조업제품	475	1,025	1,321
전력, 가스 및 수도	772	2,338	3,323
건설	11,403	23,732	24,479
도소매	8,452	136,423	159,874
음식점 및 숙박	41,075	27,046	30,351
운수	6,271	35,385	69,593
통신 및 방송	19,062	16,743	57,271
금융 및 보험	31,935	47,094	49,988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5,821	25,413	62,691
공공행정 및 국방	179	112	805
교육 및 보건	2,276	9,256	7,054
사회 및 기타서비스	2,068	9,320	19,201
합계	182,215	525,227	644,163

<표 3-11> 전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고용유발효과

(단위: 명)

산업명	1기 (1990년-1995년)	2기 (1996년-2001년)	3기 (2001년-2008년)
농림수산품	400	2,335	1,436
광산품	1,198	21,124	16,149
음식료품	739	1,498	1,769
섬유 및 가죽제품	10,371	20,161	5,546
목재 및 종이제품	5,841	13,894	11,190
인쇄 및 복제	1,202	8,628	6,985
석유 및 석탄제품	482	1,052	619
화학제품	2,582	10,805	8,384
비금속 광물제품	6,789	30,803	33,766
제1차 금속제품	1,527	2,461	2,429
금속제품	1,763	6,226	8,366
일반기계	3,658	13,176	9,745
전기 및 전자기기	9,121	9,470	20,258
정밀기기	224	1,054	1,632
수송장비	286	3,664	3,531
기타 제조업제품	452	798	1,037
전력, 가스 및 수도	772	2,338	3,317
건설	10,886	22,539	24,274
도소매	3,000	55,282	73,280
음식점 및 숙박	17,450	11,750	14,217
운수	4,837	25,557	47,975
통신 및 방송	18,936	16,250	55,797
금융 및 보험	31,732	46,768	49,489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4,164	20,237	56,526
공공행정 및 국방	179	112	805
교육 및 보건	2,028	8,304	6,443
사회 및 기타서비스	1,081	4,520	11,571
합계	141,700	360,807	476,536

○ 앞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유발한 일자리규모를 추정하였음. 이와 더불어 목적별로 M&A와 greenfield형으로 구분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유발한 일자리가 목적별로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봄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자료로 인해 개별기업의 투자를 목적별로 나눌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에서 산업별 목적별 외국인직접투자를 본 연구의 분석기간에 맞게 재정리하여 각 산업의 목적

별 비율을 구함

- 산업별 목적별로 구해진 비율에 각 기간의 총투자금액을 인센티브수혜기업들의 투자실적과 외국인투자 전체실적을 적용하여 각 산업과 기간에 대해 M&A형 투자와 greenfield형 투자로 나누어 자료를 정리함

○ <표 3-12>와 <표 3-13>은 인센티브수혜요건을 만족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실적을 바탕으로 도출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취업 및 고용파급효과를 목적별로 나타낸 표임. 동일한 방법으로 <표 3-14>와 <표 3-15>는 전체 외국인투자기업군의 투자금액을 바탕으로 도출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취업 및 고용파급효과를 목적별로 나타낸 표임. 목적별 투자의 고용파급효과는 인센티브수혜요건을 만족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표 3-12>와 <표 3-13>을 이용하여 설명함[14)]

- 1기(1990년-1995년)에 유입된 인센티브 수혜조건에 부합하는 외투기업의 직접투자 중에서 M&A형 투자가 없기 때문에 취업 및 고용 유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인센티브 수혜조건 기업이 유발한 취업인원은 165,295명(고용인원 127,553명)은 모두 green field형 투자에 의해 유발된 것임
- 2기(1996년-2001년)에 외국인직접투자가 산업전체에 유발한 취업인원은 469,446명으로 도출되었으며, 이 중 132,696명은 M&A에 의해 유발된 취업인원이며, 336,750명은 greenfield형 투자에 의해 유발된 취업인원임. 자영업자나 무임금가사노동자를 제외한 고용유발인원은 320,061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중 101,118명은 M&A형 투자에 의해 유발된 고용인원이며, 218,943명은 greenfield형 투자에 의해 유발된 고용인원임. M&A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투자금액에서 34.78%이며, 취업유발인원에서 28.4%, 고용유발인원에서 31.6%를 차지해, 투자금액에 비해 취업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greenfield형 투자보다 다소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3기(2002년-2008년)에 외국인직접투자가 산업전체에 유발한 취업인원은 575,860명으로 도출됨. 이 중 169,114명은 M&A에 의해 유발된 취업인원이며, 406,746명은 greenfield형 투자에 의해 유발된 취업인원임. 자영업자나 무임금가사노동자를 제외한 고용유발인원은 422,220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중

14)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목적별 자료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제한된 자료는 연도별로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앞서 <표 3-8>~<표 3-11>에서 살펴본 결과와 다소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음

124,771명은 M&A형 투자에 의해 유발된 고용인원이며, 297,449명은 greenfield형 투자에 의해 유발된 고용인원임. M&A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투자금액에서 29.02%이며, 취업유발인원에서 29.3%, 고용유발인원에서 29.5%를 차지해, 1기에 비해 M&A형이 취업 및 고용유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상승하였으며, 반면 고용유발효과는 다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2> 인센티브 수혜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목적별 취업유발효과

(단위: 명)

산업명	1기(1990년-1995년)		2기(1996년-2001년)		3기(2002년-2008년)	
	M&A	Greenfield	M&A	Greenfield	M&A	Greenfield
농림수산품	0	3,449	3,730	23,727	2,941	10,151
광산품	0	985	2,056	18,593	4,486	12,792
음식료품	0	684	484	1,293	471	1,660
섬유 및 가죽제품	0	12,110	12,364	9,843	1,473	5,025
목재 및 종이제품	0	5,759	10,219	5,372	1,934	9,951
인쇄 및 복제	0	1,049	6,671	3,203	1,137	7,344
석유 및 석탄제품	0	467	337	732	209	377
화학제품	0	2,215	3,980	6,687	2,735	5,307
비금속 광물제품	0	6,252	17,273	14,928	8,387	26,320
제1차 금속제품	0	1,173	706	1,346	793	1,317
금속제품	0	1,308	2,551	3,591	3,713	5,104
일반기계	0	3,062	3,882	9,112	3,197	6,248
전기 및 전자기기	0	8,805	2,875	7,045	6,327	13,229
정밀기기	0	156	313	644	456	1,155
수송장비	0	255	1,139	2,287	1,371	1,990
기타 제조업제품	0	391	284	579	294	841
전력, 가스 및 수도	0	624	796	1,315	1,295	1,722
건설	0	4,300	1,053	9,125	3,865	7,268
도소매	0	6,725	22,857	105,323	44,040	105,318
음식점 및 숙박	0	41,296	6,177	16,713	5,179	21,698
운수	0	5,971	5,141	32,026	28,620	37,932
통신 및 방송	0	18,052	4,795	9,930	7,115	46,722
금융 및 보험	0	32,554	13,033	28,784	21,461	21,553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	4,430	5,264	14,636	12,934	39,286
공공행정 및 국방	0	0	0	0	208	347
교육 및 보건	0	1,925	2,617	5,155	1,384	3,511
사회 및 기타서비스	0	1,297	2,099	4,761	3,088	12,579
기타	0	0	0	0	0	0
합계	0	165,295	132,696	336,750	169,114	406,746

<표 3-13> 인센티브 수혜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목적별 고용유발효과

(단위: 명)

산업명	1기(1990년-1995년)		2기(1996년-2001년)		3기(2002년-2008년)	
	M&A	Greenfield	M&A	Greenfield	M&A	Greenfield
농림수산품	0	347	276	1,753	280	966
광산품	0	973	1,862	16,835	4,131	11,780
음식료품	0	635	356	952	341	1,200
섬유 및 가죽제품	0	10,428	10,775	8,578	1,233	4,206
목재 및 종이제품	0	5,468	8,874	4,664	1,710	8,798
인쇄 및 복제	0	1,001	5,521	2,651	935	6,044
석유 및 석탄제품	0	465	333	723	206	372
화학제품	0	2,173	3,810	6,401	2,611	5,066
비금속 광물제품	0	6,107	15,923	13,762	7,739	24,285
제1차 금속제품	0	1,160	676	1,290	770	1,279
금속제품	0	1,244	2,130	2,998	3,094	4,253
일반기계	0	2,981	3,556	8,348	2,947	5,761
전기 및 전자기기	0	8,689	2,788	6,833	6,133	12,824
정밀기기	0	152	289	595	428	1,084
수송장비	0	251	1,119	2,246	1,341	1,946
기타 제조업제품	0	372	221	450	231	660
전력, 가스 및 수도	0	624	796	1,315	1,293	1,719
건설	0	4,105	1,000	8,667	3,833	7,207
도소매	0	2,387	9,262	42,679	20,186	48,274
음식점 및 숙박	0	17,545	2,684	7,261	2,426	10,164
운수	0	4,606	3,713	23,131	19,730	26,149
통신 및 방송	0	17,933	4,653	9,637	6,931	45,519
금융 및 보험	0	32,347	12,943	28,586	21,247	21,338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	3,169	4,192	11,654	11,662	35,422
공공행정 및 국방	0	0	0	0	208	347
교육 및 보건	0	1,715	2,348	4,625	1,264	3,206
사회 및 기타서비스	0	678	1,018	2,309	1,861	7,581
기타	0	0	0	0	0	0
합계	0	127,553	101,118	218,943	124,771	297,449

<표 3-14>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목적별 취업유발효과

(단위: 명)

산업명	1기(1990년-1995년)		2기(1996년-2001년)		3기(2002년-2008년)	
	M&A	Greenfield	M&A	Greenfield	M&A	Greenfield
농림수산품	0	4,081	4,124	27,342	3,611	12,083
광산품	0	1,238	2,126	19,089	4,751	13,494
음식료품	0	817	541	1,556	589	1,959
섬유 및 가죽제품	0	12,571	12,713	10,218	1,622	5,461
목재 및 종이제품	0	6,265	10,693	5,871	2,139	10,724
인쇄 및 복제	0	1,299	7,068	3,672	1,277	7,865
석유 및 석탄제품	0	497	347	770	228	408
화학제품	0	2,694	4,162	7,312	3,089	5,921
비금속 광물제품	0	7,121	17,851	16,185	8,949	27,734
제1차 금속제품	0	1,557	834	1,791	978	1,583
금속제품	0	1,875	2,871	4,915	4,362	6,040
일반기계	0	3,815	4,155	10,090	3,658	7,079
전기 및 전자기기	0	9,265	2,996	7,573	6,665	13,919
정밀기기	0	235	372	793	506	1,263
수송장비	0	299	1,156	2,387	1,475	2,166
기타 제조업제품	0	490	310	729	365	986
전력, 가스 및 수도	0	790	872	1,480	1,532	1,901
건설	0	11,492	1,653	23,443	9,438	15,934
도소매	11	8,613	24,153	113,083	48,825	115,584
음식점 및 숙박	0	44,572	6,999	20,957	6,041	25,863
운수	0	6,538	5,531	35,312	31,347	41,262
통신 및 방송	0	19,078	5,500	11,478	7,661	49,718
금융 및 보험	0	33,800	14,788	33,531	26,776	26,117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	6,000	6,367	19,350	16,422	48,515
공공행정 및 국방	0	195	39	77	306	524
교육 및 보건	0	2,313	3,035	6,441	2,185	5,025
사회 및 기타서비스	0	2,118	2,333	7,744	3,721	16,018
기타	0	0	0	0	0	0
합계	13	189,628	143,589	393,190	198,517	465,146

<표 3-15>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목적별 고용유발효과

(단위: 명)

산업명	1기(1990년-1995년)		2기(1996년-2001년)		3기(2002년-2008년)	
	M&A	Greenfield	M&A	Greenfield	M&A	Greenfield
농림수산품	0	411	305	2,020	344	1,150
광산품	0	1,223	1,925	17,285	4,375	12,427
음식료품	0	758	398	1,145	426	1,417
섬유 및 가죽제품	0	10,825	11,079	8,905	1,357	4,571
목재 및 종이제품	0	5,948	9,286	5,098	1,891	9,482
인쇄 및 복제	0	1,239	5,850	3,039	1,051	6,473
석유 및 석탄제품	0	494	343	761	225	402
화학제품	0	2,643	3,984	6,999	2,949	5,652
비금속 광물제품	0	6,955	16,456	14,920	8,258	25,591
제1차 금속제품	0	1,540	800	1,717	950	1,537
금속제품	0	1,785	2,396	4,102	3,635	5,033
일반기계	0	3,713	3,806	9,244	3,372	6,526
전기 및 전자기기	0	9,142	2,906	7,345	6,461	13,492
정밀기기	0	228	344	733	474	1,185
수송장비	0	295	1,135	2,344	1,443	2,117
기타 제조업제품	0	466	241	567	286	774
전력, 가스 및 수도	0	790	872	1,480	1,529	1,898
건설	0	10,971	1,570	22,265	9,359	15,801
도소매	4	3,057	9,787	45,824	22,379	52,979
음식점 및 숙박	0	18,936	3,041	9,105	2,830	12,115
운수	0	5,043	3,995	25,505	21,610	28,445
통신 및 방송	0	18,952	5,338	11,139	7,464	48,437
금융 및 보험	0	33,585	14,686	33,300	26,510	25,85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	4,293	5,070	15,409	14,807	43,744
공공행정 및 국방	0	195	39	77	306	524
교육 및 보건	0	2,061	2,723	5,779	1,995	4,589
사회 및 기타서비스	0	1,107	1,131	3,756	2,242	9,654
기타	0	0	0	0	0	0
합계	5	146,656	109,505	259,862	148,528	341,870

○ 지금까지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유발되는 취업 및 고용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봄. 분석결과와 같이 높은 일자리창출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은 외국인직접투자의 높은 증가율에 비해 취업 및 고용효과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임

○ <표 3-16>는 인센티브 수혜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의 외국인직접투자를 기준으로 일자리창출효과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표임.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은 2기에 414%, 3기에 72% 증가한 반면 고용유발효과는 각각 156%, 31%, 취업유발효과는 192%, 21%의 증가밖에 나타나지 않음

<표 3-16> 인센티브 수혜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의 고용 및 취업유발효과 종합

	수준			증가율	
	1기(90~95)	2기(96~01)	3기(02~08)	1기→2기	2기→3기
총 고용유발효과(명)	122,881	314,334	410,985	155.8%	30.7%
고용유발계수(명/백만달러)	18.07	14.16	9.76	−21.6%	−31.1%
고용유발계수(명/10억원)	23.18	11.53	8.79	−50.2%	−23.8%
총 취업유발효과(증가율)	158,285	462,226	559,806	192.0%	21.1%
취업유발계수(명/백만달러)	23.28	20.82	13.30	−10.6%	−36.1%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29.85	16.95	11.97	−43.2%	−29.4%
외국인투자금액(백만달러)	6,800	22,200	42,100	226.5%	89.6%
외국인투자금액(십억원)	5,302	27,262	46,761	414.2%	71.5%

○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고용계수와 취업계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임. t기의 총 고용(취업)유발효과는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음

총 고용유발효과 $_t$ = 고용계수 $_t$ × 생산유발계수 $_t$ × 60외국인직접투자액 $_t$

– 위의 식을 각 요소의 변화율에 의한 효과로 분해하기 위해 로그 차분하면 다음과 같이 <표 3-17>15)로 나타낼 수 있음

<표 3-17> 고용유발효과에 대한 분해

	총고용유발 로그차분	고용계수 로그차분	생산유발계수 로그차분	외국인투자 로그차분
3기~2기	0.268 (100%)	−0.404 (−150%)	0.032 (12%)	0.640 (238%)
2기~1기	0.939 (100%)	−0.335 (−35.7%)	0.091 (9.7%)	1.183 (126%)

–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총고용유발 로그차분값은 고용계수로그차분, 생산유발계수로그차분, 외국인투자로그차분의 합과 같음. 이와 같은 관계를 이용하여 고용유발을 감소시켰던 요소를 찾아보면, 바로 고용계수에서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음

15) 효과 분해시 원화를 기준으로 분석함

– 예를 들어 설명하면, 2기에 비해 3기에 늘어난 고용유발효과는 외국인투자 증가가 그 효과의 238%(0.640/0.269)의 기여를 하는 반면에 고용계수는 그 효과에 –150%(–0.404/0.269)에 기여, 생산유발계수의 증가는 그 효과의 12%(0.032/0.269)에 기여

–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고용(취업)계수와 생산유발계수가 1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는 가정 하에서 외국인투자의 고용유발효과를 나타내면, <표 3–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때의 고용유발효과의 증가율은 투자금액의 증가율과 동일함

<표 3-18> 고용(취업)계수 고정시 고용(취업)유발효과 예측표

		1기	2기	3기
고용 유발 효과	실제	122,881	314,334	410,985
	계수고정시	122,881	631,804	1,083,698
	차이(증가율)	–	317,470(101.0%)	672,713(163.7%)
취업 유발 효과	실제	158,285	462,226	559,806
	계수고정시	158,285	813,836.71	1,395,929.07
	차이(증가율)	–	351,611(76.1%)	836,123 (149.4%)

⑵ 생산유발효과의 추정

○ 3장 제4절 가. 분석모형에서 살펴보았듯이 외국인직접투자의 일자리창출효과를 구하기 위해선 먼저 외국인직접투자가 우리 경제의 산출물증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계산하여야 함. 따라서 일자리창출효과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생산유발효과를 참고적으로 제시함

– 1기(1990년–1995년)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약 68억달러로 집계되었는데, 산업전체에 유발한 생산유발액은 약 8조 3천억원으로 도출됨. 통신 및 방송, 금융 및 보험 그리고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 순으로 생산유발액이 타산업에 비해 크게 나타남

– 2기(1996년–2001년)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은 약 222억달러로 전기에 비해 절대적 규모가 크게 증가함. 2기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산업전체에 유발한 생산액은 약 46조 원으로 도출됨. 통신 및 방송, 금융 및 보험 그리고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산업 순으로 생산유발액이 타산업에 비해 크게 나타남

– 3기(2002년–2008년)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은 약 421억달러로 전기

에 비해 약 1.9배 정도 증가함. 3기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산업전체에 유발한 생산액은 약 83조원으로 도출됨. 통신 및 방송, 비금속 광물제품 그리고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순으로 생산유발액이 타산업에 비해 크게 나타남

<표 3-19> 인센티브 수혜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유발효과

(단위: 10억원)

산업명	1기 (1990년-1995년)	2기 (1996년-2001년)	3기 (2002년-2008년)
농림수산품	43	482	296
광산품	70	3,177	3,085
음식료품	77	364	526
섬유 및 가죽제품	511	2,060	706
목재 및 종이제품	564	2,395	2,255
인쇄 및 복제	51	727	877
석유 및 석탄제품	358	2,981	3,189
화학제품	268	2,885	2,897
비금속 광물제품	520	4,994	7,983
제1차 금속제품	287	1,046	2,040
금속제품	90	553	1,280
일반기계	251	1,831	1,881
전기 및 전자기기	895	2,329	6,141
정밀기기	10	104	222
수송장비	31	870	1,173
기타제조업제품	17	64	137
전력, 가스 및 수도	128	923	1,967
건설	257	770	1,019
도소매	123	3,098	5,733
음식점 및 숙박	205	671	1,036
운수	254	2,085	5,244
통신 및 방송	1,494	3,900	17,316
금융 및 보험	1,149	3,711	6,53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403	3,210	6,715
공공행정 및 국방	0	0	53
교육 및 보건	67	356	301
사회 및 기타서비스	22	206	872
기타	183	1,101	1,574
합계	8,329	46,890	83,049

<표 3-20>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유발효과

(단위: 10억원)

산업명	1기 (1990년-1995년)	2기 (1996년-2001년)	3기 (2002년-2008년)
농림수산품	51	543	354
광산품	89	3,250	3,261
음식료품	92	425	628
섬유 및 가죽제품	532	2,123	771
목재 및 종이제품	614	2,544	2,439
인쇄 및 복제	64	790	948
석유 및 석탄제품	381	3,111	3,457
화학제품	327	3,090	3,242
비금속 광물제품	593	5,268	8,422
제1차 금속제품	380	1,318	2,471
금속제품	130	697	1,510
일반기계	313	1,997	2,132
전기 및 전자기기	941	2,486	6,449
정밀기기	15	125	243
수송장비	36	896	1,266
기타제조업제품	21	77	162
전력, 가스 및 수도	163	1,023	2,240
건설	686	1,887	2,338
도소매	158	3,300	6,299
음식점 및 숙박	221	812	1,231
운수	279	2,314	5,732
통신 및 방송	1,577	4,476	18,459
금융 및 보험	1,195	4,274	8,01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549	4,108	8,334
공공행정 및 국방	7	7	79
교육 및 보건	81	434	441
사회 및 기타서비스	36	294	1,094
기타	208	1,240	1,781
합계	9,739	52,908	93,794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가.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일자리창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였음.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일자리창출은 주로 도소매, 방송 및 통신, 금융 및 보험과 같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타산업에 비해 급격히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과, 서비스 산업의 취업계수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 상대적으로 취업유발효과가 큰 고부가가치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기업들의 선도적인 육성 및 국내기업들의 투자증진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점적인 유치가 병행하는 정책이 국내일자리창출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라 여겨짐

나. 결과해석상 주의사항

○ 산업연관분석모델 자체가 본질적으로 정태적(static) 분석방법이기 때문에, 추정치에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따른 자본축적 및 타산업 부문과의 시간흐름에 따른 상호연관에 따른 파급효과는 배제되어 있음. 따라서 위 결과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국내일자리창출규모를 과소추정했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음. 또한 산업연관표 자체가 5년마다 발표되어 산업간 연관관계의 연도별 변화를 분석에 완벽하게 반영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위와 같은 산업연관분석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수들 간의 상호의존적 반응효과를 동태적으로 반영하여 정책변화나 특정사건의 파급효과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계산하는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사용해야 함
- 하지만 CGE의 경우 변수의 설정 및 에 대한 연구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며, 변수에 대한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지 않을 때 분석의 타당성에 논란의 여지가 많음
- 반면 산업연관분석 모형의 경우 중앙은행이 제공하여 신뢰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산업연관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책이나 외국인직접투자와 같은 투자의 외생적 충격의 단기적인 파급효과를 계산하는데 용이함

○ 금융 및 서비스산업과 같이 취업 및 고용계수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크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해 일자리창출의 효과가 가장 큰 산업분야라고 주장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
- 강성진·이홍식(2010)에서 지적되어 있듯이, 특정 산업의 취업계수가 크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

음. 따라서 이러한 산업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진출은 국내기업의 도태를 가져와 오히려 일자리감소의 가능성이 존재

○ 현재 가용한 자료 하에서 특정 외투기업이 한국을 투자지역으로서 선택한 동기가 투자환경의 개선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그와 무관한 독립적인 의사결정의 산물인지 식별이 불가능함

- 투자환경개선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유입금액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에는 제약이 따름. 따라서 추정된 외국인직접투자의 일자리창출효과의 크기에는 일정부분 오차가 존재할 수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해 유발되는 취업 및 고용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외국인직접투자의 높은 증가율에 비해 취업 및 고용효과는 그에 미치지 못함. 원화기준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은 2기에 414%, 3기에 72% 증가한 반면 고용유발효과는 각각 156%, 31%, 취업유발효과는 192%, 21%의 증가밖에 나타나지 않음

○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고용계수와 취업계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며 고용(취업)계수와 생산유발계수가 1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는 가정 하에서 외국인투자의 고용유발효과를 나타내면, 고용유발효과의 증가율은 투자금액의 증가율과 동일함

제4장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고용영향평가

제1절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⑴ 정책목표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정책목표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유인방안을 살펴보고 이러한 유인방안이 현실에 얼마나 적합한가 그리고 실현가능성이 높은가를 평가

○ (평가지표) ① 목표가 현실에 얼마나 적합한가, ② 정책이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고용관련계획 포함)을 반영하고 있는가, ③ 목표가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등

○ (평가방법) 연구수행자가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해당정책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정성적으로 판단
  -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수행

⑵ 사업추진체계(전달체계)의 효율성 평가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전달체계(사업의 추진체계)가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개별 사업추진 단위간 협의·연계가 잘 이뤄지고 있는가 등을 평가

○ 정책추진체계의 합리성

– (평가지표) ① 정책의 추진체계가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② 개별 사업추진 단위간 협의·연계가 잘 이뤄지고 있는가 등
– (평가방법) 연구수행자가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해당정책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정성적으로 판단

○ 정책집행의 적절성
– (평가지표) ① 정책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② 정책비용의 집행체계는 적절한가, ③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책임관리체계는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④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확산이 잘 이뤄지고 있는가 등
– (평가방법) ① 자체정부업무평가보고서, 국회 등 유관기관의 정책평가보고서 등 ② 연구수행자가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해당정책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정성적으로 판단

⑶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고용영향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 외국인직접투자가 각 지역별 투자유치전략과 연계되어 있고 이는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만큼 투자유인으로서 인적자원 확충방안이 모색되고 이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선순환체계를 마련
– 이러한 제도 개선방안의 모색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에 따른 추가적인 고용창출규모를 추정함으로써 제도개선에 따른 고용효과를 제시

나. 연구방법

○ (설문 및 심층조사를 위한 연구방향 설정) 정책담당자, 투자유치관련 전문가 및 담당자, 투자기업 등을 방문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및 설문방향을 설정

○ (설문조사) 외국인직접투자기업 및 관련정책담당자(투자유치담당)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평가지표를 통해 설문조사를 수행
– 설문조사는 업종별, 지역별, 투자유형별로 외국인투자기업을 표본추출하여 평

가목적에 부합하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 사업의 목표부합성, 전달체계의 효율성, 고용창출효과의 제고방안, 정책의 수용성 등을 조사

- 설문조사의 표본수는 300개를 대상으로 하며,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조사를 수행. 실제 회수된 유효응답표본 숫자는 총 241개임

○ (심층면접 실시)

- 투자유치활성화 관련한 기관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영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심층면접을 수행. 총 31개의 기업 중 회수된 유효응답숫자는 30개임

○ (조사결과 해석에서의 유의점)

- 설문조사의 경우는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국내의 현행 FDI정책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부정적 응답이 나올 개연성이 높음
- 반면, 심층면접의 경우는 투자유치활성화 관련한 기관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보다는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두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의미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실태조사 분석 결과

가. 조사개요 및 응답업체 특성

(1) 조사개요

○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

- 설문조사는 2010년 5월 중에 이루어졌으며 전문조사회사에서 담당
- 외투기업의 표본수는 300개였으며, 유효한 회수표본수는 241개임

○ 설문조사 대상기업의 선정은 1) 외국인투자지역 2) 자유무역지역 3) 경제자유

구역 4) 기타 지역(이 세 지역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외국인직접투자의 내용과 과제
- 투자유형
  - 한국의 투자매력에 대한 평가
  - 한국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애로사항
  - 향후 투자계획
  - 외국인투자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투자인프라 및 정책과제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고용영향평가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 목표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평가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추진체계의 적절성 평가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평가
  - 외국인직접투자활성화정책의 고용효과제고를 위한 종합 의견

⑵ 응답업체의 특성

○ 응답업체별 특성을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6.5%를 차지하였고, 노동조합유무 항목에 대해 노동조합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14.5%로 조사됨

○ 응답업체의 입지 유형을 보면 외국인투자지역 22.8%, 자유무역지역 5.4%M 경제자유구역 3.7%이며 전체의 77.2%는 이들 지역외에 입주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외국인직접투자 유형은 그린필드형이 62.7%이고 M&A형이 33.6%를 차지함

○ 2009년 매출액별 비중을 보면, 100억 이상 1,000억 미만인 업체로 24.1%로 1순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10억 이상 50억 미만이 16.2%, 10억 미만인 응답업체가 10.8%를 보이고 있음

<표 4-1> 응답업체 특성

(단위: 명, %)

구분		응답업체 수	비율
전체		241	100
업종	제조업	112	46.5
	비제조업	129	53.5
노동조합유무	있다	35	14.5
	없다	206	85.5
외국인투자 및 무역관련 특별지역-대분류	외국인투자 및 무역관련특별지역	55	22.8
	기타	186	77.2
외국인투자 및 무역관련 특별지역-중분류	외국인투자지역	33	13.7
	자유무역지역	13	5.4
	경제자유구역	9	3.7
	기타	186	77.2
외국인투자 및 무역관련 특별지역-소분류	단지형	21	8.7
	개별형	12	5
	산업단지형	11	4.6
	공항, 항만물류형	2	0.8
	인천	6	2.5
	부산, 진해	2	0.8
	광양	1	0.4
	기타	186	77.2
외국인직접투자 유형	그린필드형	151	62.7
	M&A형	81	33.6
	무응답	9	3.7
2009년 매출액별	10억 미만	26	10.8
	50억 미만	39	16.2
	100억 미만	22	9.1
	1,000억 미만	58	24.1
	1,000억 이상	22	9.1
	무응답	74	30.7

○ 업종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업종의 57.7%가 제품시장의 규모가 정체되는 성숙단계에 있으며, 24.9%는 제품시장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단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유형이 M&A형인 경우의 14.8%가 제품시장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쇠퇴 단계이며, 그린필드형에 비해서 10.8% 큰 비중을 가짐

○ 2009년 매출액별로 응답업체를 나누어 살펴보면,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응답업

체의 53.8%가 성숙 단계에 있고 30.8%가 초기 단계에 해당함을 알 수 있음

- 매출액이 50억 이상 100억 미만의 72.7%가 성숙 단계에 있고 성장하는 단계에는 9.1%가 해당

<표 4-2> 업종 특성

(단위: 명, %)

구분		제품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초기 단계		제품시장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단계		제품시장의 규모가 정체되는 성숙 단계		제품시장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쇠퇴 단계		무응답	
		응답자	비중	응답자	비중	응답자	비중	응답자	비중	응답자	비중
전체		22	9.1	60	24.9	139	57.7	18	7.5	2	0.8
업종	제조업	9	8.0	33	29.5	59	52.7	11	9.8	0	0.0
	비제조업	13	10.1	27	20.9	80	62.0	7	5.4	2	1.6
노동조합 유무	있다	0	0.0	10	28.6	22	62.9	3	8.6	0	0.0
	없다	22	10.7	50	24.3	117	56.8	15	7.3	2	1.0
외국인 투자 특별지역	특별지역	5	9.1	15	27.3	30	54.5	4	7.3	1	1.8
	기타	17	9.1	45	24.2	109	58.6	14	7.5	1	0.5
외국인직접투자 유형	그린필드형	15	9.9	38	25.2	90	59.6	6	4.0	2	1.3
	M&A형	7	8.6	17	21.0	45	55.6	12	14.8	0	0.0
	무응답	0	0.0	5	55.6	4	44.4	0	0.0	0	0.0
2009년 매출액별	10억 미만	8	30.8	3	11.5	14	53.8	1	3.8	0	0.0
	50억 미만	3	7.7	7	17.9	24	61.5	5	12.8	0	0.0
	100억 미만	3	13.6	2	9.1	16	72.7	1	4.5	0	0.0
	1,000억 미만	1	1.7	17	29.3	39	67.2	1	1.7	0	0.0
	1,000억 이상	0	0.0	7	31.8	12	54.5	2	9.1	1	4.5
	무응답	7	9.5	24	32.4	34	45.9	8	10.8	1	1.4

○ 조사대상기업이 속한 업종의 기술력을 세계최고 수준과 비교한 문항에 대해 응답업체의 기술수준이 70~90%라는 응답이 34.4%, 50-70%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4.5%, 90-100%라고 응답한 비율이 16.6%의 순으로 나타남

○ 외국인직접투자유형별로는 M&A형의 44.4%가 70~90%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함. 또한, 20009년 매출액이 1,000억 이상인 업종의 45.5%가 90~100%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3> 귀사의 기술력

(단위: 명, %)

구분		30% 미만		30-50%		50-70%		70-90%		90-100%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5	6.2	35	14.5	59	24.5	83	34.4	40	16.6	9	3.7
업종	제조업	5	4.5	11	9.8	20	17.9	51	45.5	24	21.4	1	0.9
	비제조업	10	7.8	24	18.6	39	30.2	32	24.8	16	12.4	8	6.2
노동조합유무	있다	1	2.9	1	2.9	5	14.3	14	40.0	14	40.0	0	0.0
	없다	14	6.8	34	16.5	54	26.2	69	33.5	26	12.6	9	4.4
외국인투자 특별지역	특별지역	3	5.5	3	5.5	14	25.5	20	36.4	15	27.3	0	0.0
	기타	12	6.5	32	17.2	45	24.2	63	33.9	25	13.4	9	4.8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	그린필드형	12	7.9	25	16.6	41	27.2	43	28.5	25	16.6	5	3.3
	M&A형	2	2.5	10	12.3	16	19.8	36	44.4	15	18.5	2	2.5
	무응답	1	11.1	0	0.0	2	22.2	4	44.4	0	0.0	2	22.2
2009년 매출액별	10억 미만	2	7.7	8	30.8	6	23.1	8	30.8	2	7.7	0	0.0
	50억 미만	2	5.1	6	15.4	9	23.1	17	43.6	5	12.8	0	0.0
	100억 미만	2	9.1	5	22.7	5	22.7	5	22.7	5	22.7	0	0.0
	1,000억 미만	0	0.0	2	3.4	18	31.0	28	48.3	7	12.1	3	5.2
	1,000억 이상	2	9.1	0	0.0	0	0.0	9	40.9	10	45.5	1	4.5
	무응답	7	9.5	14	18.9	21	28.4	16	21.6	11	14.9	5	6.8

○ 응답업체가 속한 업종의 경우 우리나라가 갖는 장점에 대해 5점척도한 평가를 보면, "중국 등 인근 아시아시장의 규모가 크다" 문항에 대한 전체 응답업체의 평균 점수는 3.69로 1순위를 차지했고, 2순위는 평균 점수가 3.43점인 "한국에서 고품질 생산과 고생산성이 가능하다" 로 나타남

<표 4-4> 한국시장이 갖는 장점

(단위: 5점척도)

구분		저임금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생산원가가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 시장의 규모가 크다	인근 아시아 시장의 규모가 크다	한국에서 고품질 생산과 고생산성이 가능하다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전체		2.19	2.35	2.99	3.69	3.43	3.37
업종	제조업	2.20	2.45	3.04	3.63	3.68	3.46
	비제조업	2.19	2.25	2.95	3.74	3.18	3.28
노동조합 유무	있다	2.26	2.44	3.20	3.63	3.65	3.57
	없다	2.18	2.33	2.96	3.70	3.39	3.33
외국인투자 특별지역	특별지역	2.33	2.41	2.98	3.67	3.63	3.35
	기타	2.15	2.33	2.99	3.70	3.37	3.38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	그린필드형	2.24	2.31	2.98	3.62	3.42	3.40
	M&A형	2.14	2.44	2.97	3.83	3.56	3.38
	무응답	1.89	2.22	3.33	3.67	2.67	2.89
2009년 매출액별	10억 미만	2.12	2.08	2.69	3.58	3.21	3.42
	50억 미만	2.15	2.56	3.13	3.92	3.39	3.21
	100억 미만	2.00	2.24	3.05	3.77	4.00	3.62
	1,000억 미만	2.28	2.42	3.02	3.94	3.37	3.46
	1,000억 이상	2.32	2.59	2.82	3.59	3.95	3.73
	무응답	2.19	2.22	3.04	3.41	3.22	3.18

○ 2009년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생산/기능단순노무직이 평균적으로 51.76명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 많은 편임

○ 외국인투자 및 무역관련 특별지역-소분류에서 부산, 진해 지역은 생산/기능 단순노무직의 인력이 평균적으로 348.00명으로 드러남

○ 사무/관리/영업, 연구개발 기술직, 생산/기능단순노무직에서 2009년 매출액이 높은 업종일수록 평균인력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표 4-5> 2009년 인력현황

(단위: 명)

구분		사무/관리/영업		연구개발 기술직		생산/기능단순노무직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전체		231	38.25	231	10.99	229	51.76
업종	제조업	104	48.41	104	13.43	103	79.74
	비제조업	127	29.93	127	8.99	126	28.90
노동조합유무	있다	33	128.03	33	31.27	33	213.67
	없다	198	23.29	198	7.61	196	24.51
외국인투자 및 무역관련특별 지역-대분류	특별지역	53	48.57	53	16.34	53	90.64
	기타	178	35.18	178	9.40	176	40.06
외국인투자 및 무역관련 특별지역 -중분류	외국인투자지역	32	29.41	32	17.91	32	58.88
	자유무역지역	13	64.69	13	14.85	13	140.08
	경제자유구역	8	99.00	8	12.50	8	137.38
	기타	178	35.18	178	9.40	176	40.06
외국인투자 및 무역관련 특별지역 -소분류	단지형	20	34.85	20	8.50	20	77.70
	개별형	12	20.33	12	33.58	12	27.50
	산업단지형	11	54.55	11	17.55	11	114.91
	공항, 항만물류형	2	120.50	2	0.00	2	278.50
	인천	5	70.20	5	20.00	5	78.80
	부산, 진해	2	217.50	2	0.00	2	348.00
	광양	1	6.00	1	0.00	1	9.00
	기타	178	35.18	178	9.40	176	40.06
외국인직접투자 유형	그린필드형	145	34.63	145	10.48	144	41.65
	M&A형	79	47.10	79	12.72	79	71.70
	무응답	7	13.29	7	2.14	6	32.00
2009년 매출액별	10억 미만	25	4.84	25	0.32	25	1.36
	50억 미만	39	6.77	39	1.41	38	7.13
	100억 미만	22	15.00	22	7.09	22	12.32
	1,000억 미만	58	37.17	58	18.52	58	42.26
	1,000억 이상	21	195.29	21	44.57	21	267.52
	무응답	66	28.24	66	4.70	65	49.37

○ 평균 근속년수에 대해 보면, 전체 응답업체의 근속년수의 평균이 5.64년임을 볼 수 있음

○ 외국인투자 및 무역관련 특별지역-소분류 중 부산, 진해 지역 업종의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년수가 10.00년으로 상대적으로 높지만, 사례수가 1로서 매우 적은 편임

○ 2009년 매출액이 커질수록 평균 근속년수도 3.36년에서 9.89년으로 점차 많아지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남

<표 4-6> 평균 근속년수

(단위: 명, 년)

구분		사례수	평균
전체		227	5.64
업종	제조업	104	7.04
	비제조업	123	4.46
노동조합유무	있다	33	8.91
	없다	194	5.08
외국인투자 및 무역관련 특별지역-대분류	외국인투자 및 무역관련 특별지역	51	7.52
	기타	176	5.09
외국인투자 및 무역관련 특별지역-중분류	외국인투자지역	31	7.22
	자유무역지역	13	8.35
	경제자유구역	7	7.29
	기타	176	5.09
외국인투자 및 무역관련 특별지역-소분류	단지형	19	8.61
	개별형	12	5.02
	산업단지형	11	8.65
	공항, 항만물류형	2	6.65
	인천	5	7.20
	부산, 진해	1	10.00
	광양	1	5.00
	기타	176	5.09
외국인직접투자유형	그린필드형	146	5.56
	M&A형	76	5.75
	무응답	5	6.34
2009년 매출액별	10억 미만	23	3.36
	50억 미만	39	4.46
	100억 미만	22	5.82
	1,000억 미만	57	6.19
	1,000억 이상	20	9.89
	무응답	66	5.30

○ 평균연령을 보면, 전체 평균은 37.37세이고, 외국인투자 및 무역관련 특별지역-소분류 중 공항, 항만 지역의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32.50세로 가장 낮은 편임

<표 4-7> 평균연령

(단위: 명, 세)

구분		사례수	평균
전체		230	37.37
업종	제조업	106	37.68
	비제조업	124	37.11
노동조합유무	있다	34	38.36
	없다	196	37.20
외국인투자 및 무역관련 특별지역-대분류	외국인투자 및 무역관련 특별지역	53	38.18
	기타	177	37.13
외국인투자 및 무역관련 특별지역-중분류	외국인투자지역	31	37.10
	자유무역지역	13	37.32
	경제자유구역	9	43.16
	기타	177	37.13
외국인투자 및 무역관련 특별지역-소분류	단지형	19	36.89
	개별형	12	37.44
	산업단지형	11	38.19
	공항, 항만물류형	2	32.50
	인천	6	44.17
	부산, 진해	2	41.70
	광양	1	40.00
	기타	177	37.13
외국인직접투자 유형	그린필드형	147	37.30
	M&A형	77	37.50
	무응답	6	37.50
2009년 매출액별	10억 미만	24	40.58
	50억 미만	39	37.95
	100억 미만	22	35.68
	1,000억 미만	58	35.99
	1,000억 이상	21	37.44
	무응답	66	37.62

○ 경영권소유를 보면 전체 응답업체의 56.0%가 외국자본 쪽에 경영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09년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업종의 73.1%가 외국자본을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임

<표 4-8> 귀사의 경영권 위치

(단위: 명, %)

구분		국내자본		외국자본		국내자본 50% + 외국 50%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전체		99	41.1	135	56.0	5	2.1	2	0.8
업종	제조업	55	49.1	53	47.3	3	2.7	1	0.9
	비제조업	44	34.1	82	63.6	2	1.6	1	0.8
노동조합 유무	있다	14	40.0	20	57.1	1	2.9	0	0.0
	없다	85	41.3	115	55.8	4	1.9	2	1.0
외국인투자 특별지역	특별지역	28	50.9	26	47.3	1	1.8	0	0.0
	기타	71	38.2	109	58.6	4	2.2	2	1.1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	그린필드형	40	26.5	107	70.9	4	2.6	0	0.0
	M&A형	55	67.9	25	30.9	1	1.2	0	0.0
	무응답	4	44.4	3	33.3	0	0.0	2	22.2
2009년 매출액별	10억 미만	7	26.9	19	73.1	0	0.0	0	0.0
	50억 미만	18	46.2	19	48.7	1	2.6	1	2.6
	100억 미만	10	45.5	11	50.0	1	4.5	0	0.0
	1,000억 미만	28	48.3	29	50.0	1	1.7	0	0.0
	1,000억 이상	9	40.9	13	59.1	0	0.0	0	0.0
	무응답	27	36.5	44	59.5	2	2.7	1	1.4

○ 외국자본이 경영권을 획득할 당시 투자방식을 보면 전체의 83.8%가 신규설립 방식이었으며 2009년 매출액이 50억 이상 100억 미만인 업종은 100%가 신규 설립방식으로 투자

– 외국인직접투자유형에서 M&A형이 신규설립방식과 인수합병의 투자방식을 택한 비율은 각각 50.0%로 같았고, 이는 다른 조사항목에서는 투자방식에 대한 비율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임

<표 4-9> 외국자본이 경영권 획득시 투자방식

(단위: 명, %)

구분		신규설립방식		인수합병		무응답	
		명	%	명	%	명	%
전체		119	83.8	22	15.5	1	0.7
업종	제조업	46	80.7	11	19.3	0	0.0
	비제조업	73	85.9	11	12.9	1	1.2
노동조합 유무	있다	14	66.7	7	33.3	0	0.0
	없다	105	86.8	15	12.4	1	0.8
외국인투자 특별지역	특별지역	21	77.8	6	22.2	0	0.0
	기타	98	85.2	16	13.9	1	0.9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	그린필드형	104	93.7	7	6.3	0	0.0
	M&A형	13	50.0	13	50.0	0	0.0
	무응답	2	40.0	2	40.0	1	20.0
2009년 매출액별	10억 미만	17	89.5	2	10.5	0	0.0
	50억 미만	19	90.5	2	9.5	0	0.0
	100억 미만	12	100.0	0	0.0	0	0.0
	1,000억 미만	25	83.3	5	16.7	0	0.0
	1,000억 이상	8	61.5	5	38.5	0	0.0
	무응답	38	80.9	8	17.0	1	2.1

나. 외국인직접투자의 내용

(1)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에서는 전체인 1순위는 그린필드형으로 62.7%, 그 다음으로는 M&A 형이 33.6%의 비율을 보임

○ 특별히, 2009년 매출액이 10억 미만 업종의 80.8%가 그린필드형을 답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남

<표 4-10>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단위: 명, %)

구분		그린필드형		M&A형		무응답	
		명	%	명	%	명	%
전체		151	62.7	81	33.6	9	3.7
업종	제조업	64	57.1	42	37.5	6	5.4
	비제조업	87	67.4	39	30.2	3	2.3
노동조합유무	있다	18	51.4	16	45.7	1	2.9
	없다	133	64.6	65	31.6	8	3.9
외국인투자 특별지역	특별지역	32	58.2	19	34.5	4	7.3
	기타	119	64.0	62	33.3	5	2.7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	그린필드형	151	100.0	0	0.0	0	0.0
	M&A형	0	0.0	81	100.0	0	0.0
	무응답	0	0.0	0	0.0	9	100.0
2009년 매출액별	10억 미만	21	80.8	4	15.4	1	3.8
	50억 미만	25	64.1	13	33.3	1	2.6
	100억 미만	15	68.2	7	31.8	0	0.0
	1,000억 미만	36	62.1	21	36.2	1	1.7
	1,000억 이상	13	59.1	9	40.9	0	0.0
	무응답	41	55.4	27	36.5	6	8.1

⑵ 외국자본의 한국투자동기 및 한국의 투자지로서 장점

○ 외국자본의 한국투자동기의 5점척도를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시장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는 응답이 3.64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비교적 높은 투자수익률 예상(3.27)으로 나타남

- 한국정부의 다양한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2.32점으로 낮았으며 저임금의 노동력활용은 2.34점, 생산원가가 상대적으로 낮다 2.4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4-11> 외국자본의 한국투자동기

(단위: 5점척도)

구분		저임금 노동력	다양한 세제 혜택	상대적 낮은 생산 원가	매력적인 한국 시장	아시아 시장 전진 기지	높은 투자수 익률 예상	고품질 고생산 가능	양질의 노동력 활용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전체		2.34	2.32	2.45	3.64	3.05	3.27	3.06	3.29
업종	제조업	2.50	2.45	2.69	3.54	3.06	3.36	3.30	3.43
	비제조업	2.19	2.20	2.21	3.73	3.04	3.19	2.83	3.17
노동조합유무	있다	2.58	2.94	2.88	3.73	3.30	3.41	3.61	3.73
	없다	2.30	2.22	2.37	3.62	3.01	3.25	2.96	3.22
외국인투자 특별지역	특별지역	2.62	2.67	2.69	3.52	3.15	3.09	3.30	3.41
	기타	2.25	2.22	2.38	3.68	3.02	3.33	2.99	3.26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	그린필드형	2.34	2.36	2.45	3.64	2.94	3.20	3.01	3.28
	M&A형	2.36	2.32	2.47	3.60	3.30	3.39	3.18	3.36
	무응답	2.14	1.57	2.29	4.00	2.71	3.38	3.00	2.86
2009년 매출액별	10억 미만	2.04	2.20	2.08	3.65	3.17	3.04	3.00	3.25
	50억 미만	2.21	1.79	2.24	3.50	3.08	3.00	2.76	3.13
	100억 미만	2.43	2.57	2.85	3.82	3.30	3.36	3.35	3.48
	1,000억 미만	2.28	2.28	2.60	3.75	3.06	3.45	3.15	3.25
	1,000억 이상	2.77	3.00	2.91	3.41	3.18	3.50	3.45	3.68
	무응답	2.40	2.41	2.31	3.64	2.86	3.26	2.96	3.25

○ 외국자본의 한국투자에 대한 매력 요소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6.5%가 한국시장의 규모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이는 중국이나 아시아 시장진출의 교두보로서의 위치와 조건이라고 답한 비율(23.7%)보다 22.8% 높은 수치임
- 외국인투자 및 무역관련 특별지역의 경우에만 중국이나 아시아 시장진출의 교두보로서의 위치와 조건(29.1%)이 한국시장의 규모(27.3%)보다 더 매력적인 요소인 것으로 나타남

<표 4-12> 외국자본의 한국투자에 대한 매력요소(1순위)

(단위: 명, %)

구분		한국시장의 규모		중국이나 아시아 시장진출의 교두보로서 위치와 조건		양질의 노동력		사회 간접자본의 질		한국정부의 특혜조치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12	46.5	57	23.7	20	8.3	5	2.1	5	2.1
업종	제조업	46	41.1	21	18.8	13	11.6	2	1.8	4	3.6
	비제조업	66	51.2	36	27.9	7	5.4	3	2.3	1	0.8
노동조합 유무	있다	12	34.3	12	34.3	3	8.6	0	0.0	0	0.0
	없다	100	48.5	45	21.8	17	8.3	5	2.4	5	2.4
외국인투자 특별지역	특별지역	15	27.3	16	29.1	9	16.4	2	3.6	3	5.5
	기타	97	52.2	41	22.0	11	5.9	3	1.6	2	1.1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	그린필드형	77	51.0	35	23.2	12	7.9	2	1.3	2	1.3
	M&A형	30	37.0	21	25.9	8	9.9	3	3.7	3	3.7
	무응답	5	55.6	1	11.1	0	0.0	0	0.0	0	0.0

(3) 한국에서의 경영활동의 애로사항 및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

○ 한국에서 경영활동 중 애로사항으로 한국 내 시장상황이 22.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행정정차 및 정부서비스(17.0%)로 나타남

<표 4-13> 경영활동 중 애로사항(1순위)

(단위: 명, %)

구분		행정절차 정부 서비스		자금 조달 시스템		사회간접 자본		의사소통 문제		근로자의 생산성		임금수준		근로자 복리후생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41	17.0	17	7.1	1	0.4	7	2.9	6	2.5	17	7.1	8	3.3
업종	제조업	13	11.6	7	6.3	1	0.9	2	1.8	5	4.5	10	8.9	5	4.5
	비제조업	28	21.7	10	7.8	0	0.0	5	3.9	1	0.8	7	5.4	3	2.3
노동조합 유무	있다	5	14.3	1	2.9	1	2.9	1	2.9	1	2.9	3	8.6	0	0.0
	없다	36	17.5	16	7.8	0	0.0	6	2.9	5	2.4	14	6.8	8	3.9
외국인 투자 특별지역	특별지역	14	25.5	2	3.6	0	0.0	1	1.8	1	1.8	5	9.1	3	5.5
	기타	27	14.5	15	8.1	1	0.5	6	3.2	5	2.7	12	6.5	5	2.7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	그린 필드형	25	16.6	10	6.6	1	0.7	6	4.0	4	2.6	12	7.9	7	4.6
	M&A형	15	18.5	7	8.6	0	0.0	1	1.2	2	2.5	4	4.9	1	1.2
	무응답	1	11.1	0	0.0	0	0.0	0	0.0	0	0.0	1	11.1	0	0.0

<표 4-13(계속)> 경영활동 중 애로사항(1순위)

(단위: 명, %)

구분		한국 내 시장상황		전반적 노사관계		정치, 사회적 환경		인재확보		투자인센티브		규제 및 법령		노조의 경영권 참여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53	22.0	7	2.9	3	1.2	23	9.5	4	1.7	18	7.5	3	1.2
업종	제조업	19	17.0	5	4.5	3	2.7	14	12.5	3	2.7	11	9.8	0	0.0
	비제조업	34	26.4	2	1.6	0	0.0	9	7.0	1	0.8	7	5.4	3	2.3
노동조합 유무	있다	9	25.7	5	14.3	1	2.9	0	0.0	2	5.7	2	5.7	1	2.9
	없다	44	21.4	2	1.0	2	1.0	23	11.2	2	1.0	16	7.8	2	1.0
외국인 투자 특별지역	특별지역	9	16.4	2	3.6	2	3.6	5	9.1	2	3.6	3	5.5	2	3.6
	기타	44	23.7	5	2.7	1	0.5	18	9.7	2	1.1	15	8.1	1	0.5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	그린 필드형	29	19.2	4	2.6	1	0.7	13	8.6	3	2.0	11	7.3	2	1.3
	M&A형	22	27.2	3	3.7	2	2.5	10	12.3	1	1.2	5	6.2	1	1.2
	무응답	2	22.2	0	0.0	0	0.0	0	0.0	0	0.0	2	22.2	0	0.0

<표 4-13(계속)> 경영활동 중 애로사항(1순위)

(단위: 명, %)

구분		근로자의 영어 능력		파견근로자 기간 제한		근로자의 직무 전문성		세무행정 등 조세제도		기타		없다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2	0.8	3	1.2	2	0.8	9	3.7	3	1.2	10	4.1	4	1.7
업종	제조업	1	0.9	2	1.8	2	1.8	1	0.9	3	2.7	4	3.6	1	0.9
	비제조업	1	0.8	1	0.8	0	0.0	8	6.2	0	0.0	6	4.7	3	2.3
노동조합 유무	있다	0	0.0	1	2.9	1	2.9	0	0.0	0	0.0	1	2.9	0	0.0
	없다	2	1.0	2	1.0	1	0.5	9	4.4	3	1.5	9	4.4	4	1.9
외국인 투자 특별지역	특별지역	0	0.0	1	1.8	1	1.8	1	1.8	1	1.8	0	0.0	0	0.0
	기타	2	1.1	2	1.1	1	0.5	8	4.3	2	1.1	10	5.4	4	2.2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	그린 필드형	2	1.3	3	2.0	0	0.0	8	5.3	2	1.3	7	4.6	1	0.7
	M&A형	0	0.0	0	0.0	1	1.2	1	1.2	1	1.2	3	3.7	1	1.2
	무응답	0	0.0	0	0.0	1	11.1	0	0.0	0	0.0	0	0.0	2	22.2

○ 시급하게 개선할 사항 1순위에 대해 행정절차 및 정부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한 업종이 전체의 18.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한국 내 시장사항(13.7%)으로 나타남

<표 4-14> 시급하게 개선할 사항(1순위)

(단위: 명, %)

구분		행정절차 정부 서비스		자금 조달 시스템		사회간접 자본		의사소통 문제		근로자의 생산성		임금수준		근로자 복리후생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45	18.7	18	7.5	2	0.8	6	2.5	4	1.7	15	6.2	7	2.9
업종	제조업	18	16.1	6	5.4	2	1.8	1	0.9	4	3.6	6	5.4	5	4.5
	비제조업	27	20.9	12	9.3	0	0.0	5	3.9	0	0.0	9	7.0	2	1.6
노동조합 유무	있다	6	17.1	1	2.9	0	0.0	0	0.0	0	0.0	3	8.6	1	2.9
	없다	39	18.9	17	8.3	2	1.0	6	2.9	4	1.9	12	5.8	6	2.9
외국인 투자 특별지역	특별지역	10	18.2	1	1.8	1	1.8	1	1.8	1	1.8	3	5.5	2	3.6
	기타	35	18.8	17	9.1	1	0.5	5	2.7	3	1.6	12	6.5	5	2.7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	그린 필드형	35	23.2	10	6.6	2	1.3	4	2.6	1	0.7	11	7.3	5	3.3
	M&A형	9	11.1	8	9.9	0	0.0	2	2.5	3	3.7	4	4.9	2	2.5
	무응답	1	11.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표 4-14(계속)> 시급하게 개선할 사항(1순위)

(단위: 명, %)

구분		한국 내 시장상황		전반적 노사관계		정치, 사회적 환경		인재확보		투자인센티브		규제 및 법령		노조의 경영권 참여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33	13.7	6	2.5	4	1.7	23	9.5	7	2.9	25	10.4	1	0.4
업종	제조업	11	9.8	4	3.6	2	1.8	14	12.5	6	5.4	13	11.6	1	0.9
	비제조업	22	17.1	2	1.6	2	1.6	9	7.0	1	0.8	12	9.3	0	0.0
노동조합 유무	있다	5	14.3	4	11.4	2	5.7	2	5.7	2	5.7	3	8.6	1	2.9
	없다	28	13.6	2	1.0	2	1.0	21	10.2	5	2.4	22	10.7	0	0.0
외국인 투자 특별지역	특별지역	8	14.5	2	3.6	2	3.6	6	10.9	3	5.5	7	12.7	0	0.0
	기타	25	13.4	4	2.2	2	1.1	17	9.1	4	2.2	18	9.7	1	0.5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	그린 필드형	19	12.6	3	2.0	3	2.0	14	9.3	4	2.6	15	9.9	1	0.7
	M&A형	12	14.8	3	3.7	1	1.2	8	9.9	3	3.7	8	9.9	0	0.0
	무응답	2	22.2	0	0.0	0	0.0	1	11.1	0	0.0	2	22.2	0	0.0

<표 4-14(계속)> 시급하게 개선할 사항(1순위)

(단위: 명, %)

구분		근로자의 영어 능력		파견근로자 기간 제한		근로자의 직무 전문성		세무행정 등 조세제도		기타		없다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5	2.1	3	1.2	2	0.8	3	1.2	1	0.4	10	4.1	4	1.7
업종	제조업	2	1.8	3	2.7	2	1.8	1	0.9	0	0.0	3	2.7	3	2.7
	비제조업	3	2.3	0	0.0	0	0.0	2	1.6	1	0.8	7	5.4	1	0.8
노동조합 유무	있다	0	0.0	2	5.7	1	2.9	0	0.0	1	2.9	0	0.0	0	0.0
	없다	5	2.4	1	0.5	1	0.5	3	1.5	0	0.0	10	4.9	4	1.9
외국인 투자 특별지역	특별지역	1	1.8	2	3.6	1	1.8	1	1.8	0	0.0	2	3.6	1	1.8
	기타	4	2.2	1	0.5	1	0.5	2	1.1	1	0.5	8	4.3	3	1.6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	그린필드형	2	1.3	2	1.3	2	1.3	1	0.7	0	0.0	6	4.0	3	2.0
	M&A형	3	3.7	1	1.2	0	0.0	2	2.5	1	1.2	4	4.9	1	1.2
	무응답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 향후 투자계획

○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서 현 사업규모유지가 53.1%가 가장 높게 나타남

– 향후 투자계획 사업장 이전시 제3국으로 신규사업장을 물색하겠다고 응답한 10개 사 중 6개사가 투자 후보지로 중국을 선택

<표 4-15> 향후 투자계획

(단위: 명, %)

구분		한국내에서 사업규모를 확장		현 사업규모를 유지		사업규모를 축소		제3국으로 신규사업장 물색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89	36.9	128	53.1	12	5.0	10	4.1	2	0.8
업종	제조업	39	34.8	59	52.7	6	5.4	6	5.4	2	1.8
	비제조업	50	38.8	69	53.5	6	4.7	4	3.1	0	0.0
노동조합 유무	있다	14	40.0	17	48.6	3	8.6	1	2.9	0	0.0
	없다	75	36.4	111	53.9	9	4.4	9	4.4	2	1.0
외국인투자 특별지역	특별지역	21	38.2	29	52.7	1	1.8	4	7.3	0	0.0
	기타	68	36.6	99	53.2	11	5.9	6	3.2	2	1.1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	그린필드형	56	37.1	85	56.3	4	2.6	5	3.3	1	0.7
	M&A형	29	35.8	40	49.4	8	9.9	4	4.9	0	0.0
	무응답	4	44.4	3	33.3	0	0.0	1	11.1	1	11.1

○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결정과 장기적 사업계획결정에 있어 한국의 노사관계를 얼마나 고려하는 가에 대해 전체의 73.6%가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함

<표 4-16> 투자결정시 한국의 노사관계 고려도

(단위: 명, %)

구분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별로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다		약간 중요하게 고려된다		매우 중요하게 고려된다		무응답		평균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20	8.3	43	17.8	88	36.5	87	36.1	3	1.2	3.02
업종	제조업	2	1.8	19	17.0	37	33.0	54	48.2	0	0.0	3.28
	비제조업	18	14.0	24	18.6	51	39.5	33	25.6	3	2.3	2.79
노동조합 유무	있다	1	2.9	1	2.9	13	37.1	20	57.1	0	0.0	3.49
	없다	19	9.2	42	20.4	75	36.4	67	32.5	3	1.5	2.94
외국인투자 특별지역	특별지역	3	5.5	8	14.5	21	38.2	23	41.8	0	0.0	3.16
	기타	17	9.1	35	18.8	67	36.0	64	34.4	3	1.6	2.97
외국인직접 투자 유형	그린필드형	16	10.6	28	18.5	53	35.1	52	34.4	2	1.3	2.95
	M&A형	4	4.9	14	17.3	28	34.6	34	42.0	1	1.2	3.15
	무응답	0	0.0	1	11.1	7	77.8	1	11.1	0	0.0	3.00

○ 2010년 한국에 대한 투자실적에 대해 전체 66.4%가 비슷하다고 응답하였고, 16.2%는 확대를, 17.0%는 축소되었다고 응답함

<표 4-17> 올해 한국투자실적

(단위: 명, %)

구분		확대		축소		비슷함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전체		39	16.2	41	17.0	160	66.4	1	0.4
업종	제조업	23	20.5	16	14.3	72	64.3	1	0.9
	비제조업	16	12.4	25	19.4	88	68.2	0	0.0
노동조합 유무	있다	6	17.1	4	11.4	25	71.4	0	0.0
	없다	33	16.0	37	18.0	135	65.5	1	0.5
외국인투자 특별지역	특별지역	10	18.2	13	23.6	32	58.2	0	0.0
	기타	29	15.6	28	15.1	128	68.8	1	0.5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	그린필드형	23	15.2	21	13.9	107	70.9	0	0.0
	M&A형	13	16.0	18	22.2	50	61.7	0	0.0
	무응답	3	33.3	2	22.2	3	33.3	1	11.1

○ 올해 한국투자실적 확대이유를 보면 전체의 38.5%가 제품개발 및 신규사업추진을, 그리고 30.8%는 내수 및 수출 호조 전망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선택

<표 4-18> 올해 한국투자실적_투자확대의 이유

(단위: 명, %)

구분		제품개발 및 신규사업 추진		노후설비 교체 수요 증가		내수 및 수출 호조 전망		투자환경 개선 기대감		기타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5	38.5	6	15.4	12	30.8	4	10.3	2	5.1
업종	제조업	7	30.4	6	26.1	7	30.4	2	8.7	1	4.3
	비제조업	8	50.0	0	0.0	5	31.3	2	12.5	1	6.3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	그린필드형	8	34.8	4	17.4	9	39.1	1	4.3	1	4.3
	M&A형	6	46.2	1	7.7	2	15.4	3	23.1	1	7.7
	무응답	1	33.3	1	33.3	1	33.3	0	0.0	0	0.0

○ 올해 한국투자실적 축소의 이유를 보면 전체의 56.1%가 경기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생각하고 있음

<표 4-19> 올해 한국투자실적_투자축소의 이유

(단위: 명, %)

구분		투자자금 조달애로		경기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		기타	
		명	%	명	%	명	%
전체		5	12.2	23	56.1	13	31.7
업종	제조업	3	18.8	9	56.3	4	25.0
	비제조업	2	8.0	14	56.0	9	36.0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	그린필드형	4	19.0	10	47.6	7	33.3
	M&A형	1	5.6	12	66.7	5	27.8
	무응답	0	0.0	1	50.0	1	50.0

⑸ 국내투자환경에 대한 평가

○ 국내투자환경에 대해 5점척도로 평가한 결과를 보면, IT정보화 수준이 3.83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지리상의 이점(3.27점), 시장잠재력(3.2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20> 국내투자환경

(단위: 5점척도)

구분	시장 잠재력	투자 수익성	지리상의 이점	인적자원 수준	IT정보화 수준	투자인센티브 제도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전체	3.25	3.06	3.27	3.37	3.83	2.78
구분	행정 규제 완화	법,제도 일관성/투명성	인력 및 노무 환경	금융 환경	조세 환경	주거 환경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전체	2.57	2.59	2.87	2.84	2.80	3.00

○ 개선해야 할 투자인프라를 살펴보면 1순위는 전체 응답업체의 32.4%가 응답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노동시장 구축이고, 그 다음으로 29.5%가 전문지식을 갖춘 우수인력 확보로 지적되어 우수인력의 공급체계 구축이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표 4-21> 개선해야 할 투자인프라(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FTA 등 대외개방 확대		투자인센티브 제도 확대		유연하고 탄력적인 노동시장 구축		도로/항만/통신 등 SOC 확대		전문지식을 갖춘 우수인력 확보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39	16.2	58	24.1	78	32.4	13	5.4	71	29.5

구분	금융 및 자본시장 발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국내정주여건 개선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전체	60	24.9	66	27.4	12	5.0	13	5.4

○ 외투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서 전체 응답업체의 32.4%는 조세지원확충/제도간소화를, 그리고 32.4%는 환율안정정책 시행이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정책과제라고 지적

<표 4-22> 외투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규제완화		조세지원 확충/제도 간소화		금융지원 확충		산업입지 지원 및 규제간소화		적정인력 수급의 어려움		세제혜택 증가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75	31.1	78	32.4	47	19.5	52	21.6	41	17.0	32	13.3
구분	환율안정 정책 시행		인허가 규제완화		기타		결재시 불안한 어음제도		외국인투자 유치를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홍보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78	32.4	53	22.0	49	20.3	1	0.4	1	0.4	7	2.9

○ 조사대상업체가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단점에 대한 질문에서 해당업체수가 많지 않지만 14개 업체가 부지확장의 어려움을 지적하였고, 그 다음으로 교통 불편 및 체증(12개 업체), 연관기업과 접근성이 떨어짐(11개 업체)등으로 나타남

<표 4-23> 해당지역의 단점(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부지확장의 어려움		교통불편 및 체증		도심지역과 접근성이 떨어짐		소음, 진동 등 공해		배후도시 형성 미흡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4	5.8	12	5.0	10	4.1	6	2.5	8	3.3

구분	연관기업과 접근성이 떨어짐		입지규제		높은 임대료		해당사항없음	
	명	%	명	%	명	%	명	%
전체	11	4.6	5	2.1	2	0.8	191	79.3

다.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목표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평가

(1)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목표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1) 목표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이 국민경제의 발전 및 고용창출이라는 목표에 얼마나 적합하며 이러한 목표가 실현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 먼저 목표의 적합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 5점, 다소 그렇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하여 평가한 결과 국민경제에 기여가 3.85점, 고용영향에 기여가 3.90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표 4-24> 목표의 적합성

(단위: 5점척도)

구분		사례수	국민경제에기여	고용영향에기여
			평균	평균
전체		241	3.85	3.90
업종	제조업	112	3.90	3.89
	비제조업	129	3.81	3.91
노동조합유무	있다	35	3.94	4.12
	없다	206	3.84	3.86
외국인투자 특별지역	특별지역	55	4.00	4.04
	기타	186	3.81	3.86
외국인직접투자 유형	그린필드형	151	3.91	3.96
	M&A형	81	3.78	3.84
	무응답	9	3.50	3.33
2009년 매출액별	10억 미만	26	3.81	3.88
	50억 미만	39	4.03	4.08
	100억 미만	22	3.73	3.73
	1,000억 미만	58	3.85	3.96
	1,000억 이상	22	4.10	4.24
	무응답	74	3.74	3.71

○ 다음으로 목표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경제에 기여와 고용영향에 기여가 각각 3.56점으로 나타나 목표의 적합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임

<표 4-25>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실현가능성

(단위: 5점척도)

구분		사례수	국민경제에기여	고용영향에기여
			평균	평균
전체		241	3.55	3.56
업종	제조업	112	3.53	3.49
	비제조업	129	3.56	3.62
노동조합유무	있다	35	3.45	3.55
	없다	206	3.56	3.56
외국인투자 특별지역	특별지역	55	3.68	3.62
	기타	186	3.51	3.54
외국인직접투자 유형	그린필드형	151	3.60	3.63
	M&A형	81	3.46	3.45
	무응답	9	3.33	3.17
2009년 매출액별	10억 미만	26	3.69	3.77
	50억 미만	39	3.74	3.68
	100억 미만	22	3.64	3.59
	1,000억 미만	58	3.58	3.64
	1,000억 이상	22	3.71	3.67
	무응답	74	3.28	3.30

2) 고용영향목표 고려여부

○ 외국인투자유치 및 활성화정책의 계획 및 목표 내에 고용영향(고용유지 및 창출, 인적자원개발, 인력의 양성 및 공급)이 고려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52.3%)하였으며, 28.6%는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19.1%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

<표 4-26> 고용영향목표 고려여부

(단위: 명, %)

구분		고려하고 있다		고려하고 있지 않다		잘 모르겠다	
		명	%	명	%	명	%
전체		69	28.6	46	19.1	126	52.3
업종	제조업	36	32.1	23	20.5	53	47.3
	비제조업	33	25.6	23	17.8	73	56.6
노동조합 유무	있다	14	40.0	6	17.1	15	42.9
	없다	55	26.7	40	19.4	111	53.9
외국인투자 특별지역	특별지역	22	40.0	3	5.5	30	54.5
	기타	47	25.3	43	23.1	96	51.6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	그린필드형	44	29.1	29	19.2	78	51.7
	M&A형	23	28.4	16	19.8	42	51.9
	무응답	2	22.2	1	11.1	6	66.7

3) 고용영향목표 고려방안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목표에 고용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긍정적으로 응답한 자의 비중이 전체 63.1%로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외국인투자 및 무역관련 특별지역에 속한 응답업체의 경우 그렇지 않은 응답업체보다 고용영향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비중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음

<표 4-27> 고용영향목표 고려방안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2	0.8	6	2.5	62	25.7	108	44.8	44	18.3	19	7.9	3.84
업종	제조업	1	0.9	1	0.9	31	27.7	51	45.5	22	19.6	6	5.4	3.87
	비제조업	1	0.8	5	3.9	31	24.0	57	44.2	22	17.1	13	10.1	3.81
노동조합 유무	있다	1	2.9	1	2.9	5	14.3	17	48.6	8	22.9	3	8.6	3.94
	없다	1	0.5	5	2.4	57	27.7	91	44.2	36	17.5	16	7.8	3.82
외국인 투자 특별 지역	특별지역	0	0.0	3	5.5	12	21.8	26	47.3	12	21.8	2	3.6	3.89
	기타	2	1.1	3	1.6	50	26.9	82	44.1	32	17.2	17	9.1	3.82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	그린 필드형	2	1.3	4	2.6	32	21.2	70	46.4	31	20.5	12	7.9	3.89
	M&A형	0	0.0	1	1.2	27	33.3	35	43.2	12	14.8	6	7.4	3.77
	무응답	0	0.0	1	11.1	3	33.3	3	33.3	1	11.1	1	11.1	3.50

라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추진체계의 적절성 평가

(1)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지원정책의 필요성

○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을 설정하고 조세감면, 관세혜택, 임대료감면 등과 같은 입지지원정책과 더불어 현금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정책의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으며, 5점척도 평균으로 비교하면 입지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7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임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지원정책의 지원요건 및 대상의 적절성에 관한 설문에서 입지지원정책와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에 대하여는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현금지원에 대하여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냄

· 현금지원제도는 파급효과를 고려한 선별적 투자유치, 협상력제고를 위해 각국에서 도입중인 제도이나 설문 응답자들이 이러한 점을 인식하지 못하여 부정적 응답이 나왔을 수도 있음. 이하의 내용에서도 현금지원제도에 대한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74점으로 현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3.37점)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그린필드형의 경우 입지지원정책에 상대적으로 강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M&A형은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표 4-28> 외투유치활성화지원정책 필요성

(단위: 5점척도)

구분		입지지원정책	현금지원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
		평균	평균	평균
전체		3.79	3.37	3.74
업종	제조업	3.93	3.43	3.85
	비제조업	3.68	3.32	3.64
노동조합 유무	있다	4.00	3.23	3.86
	없다	3.76	3.40	3.71
외국인투자 특별지역	특별지역	4.00	3.48	3.93
	기타	3.73	3.34	3.68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	그린필드형	3.85	3.39	3.78
	M&A형	3.68	3.33	3.70
	무응답	3.88	3.38	3.25

⑵ 외국인투지유치활성화정책의 지원요건 및 대상의 적절성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의 지원요건 및 대상이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을 5점척도로 평가(점수가 높을수록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음)한 결과 입지지원정책은 3.25점으로 나타났고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정책은 3.19점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 현금지원정책은 2.97점을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을 보여줌

<표 4-29>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지원요건의 적절성

(단위: 5점척도)

구분		입지지원정책	현금지원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
		평균	평균	평균
전체		3.25	2.97	3.19
업종	제조업	3.27	2.97	3.21
	비제조업	3.23	2.96	3.17
노동조합 유무	있다	3.34	2.91	3.19
	없다	3.23	2.98	3.19
외국인투자 특별지역	특별지역	3.24	2.96	3.20
	기타	3.25	2.97	3.19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	그린필드형	3.29	2.99	3.17
	M&A형	3.21	3.00	3.26
	무응답	2.88	2.25	2.88

(3)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지원수준의 적절성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의 지원요건 및 대상이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을 5점척도로 평가(점수가 높을수록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음)한 결과 입지지원정책은 3.10점으로 나타났고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정책은 3.03점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 현금지원정책은 2.85점을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을 보여줌

<표 4-30> 지원수준의 적절성_입지지원정책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5	2.1	30	12.4	120	49.8	50	20.7	5	2.1	31	12.9	3.10
업종	제조업	4	3.6	13	11.6	55	49.1	25	22.3	3	2.7	12	10.7	3.10
	비제조업	1	0.8	17	13.2	65	50.4	25	19.4	2	1.6	19	14.7	3.09
노동조합 유무	있다	1	2.9	8	22.9	13	37.1	9	25.7	0	0.0	4	11.4	2.97
	없다	4	1.9	22	10.7	107	51.9	41	19.9	5	2.4	27	13.1	3.12
외국인투자 특별지역	특별지역	0	0.0	10	18.2	28	50.9	11	20.0	1	1.8	5	9.1	3.06
	기타	5	2.7	20	10.8	92	49.5	39	21.0	4	2.2	26	14.0	3.11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	그린필드형	3	2.0	20	13.2	74	49.0	32	21.2	4	2.6	18	11.9	3.11
	M&A형	2	2.5	8	9.9	44	54.3	16	19.8	1	1.2	10	12.3	3.08
	무응답	0	0.0	2	22.2	2	22.2	2	22.2	0	0.0	3	33.3	3.00

⑷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지원체계의 적절성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의 지원 체계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을 5점척도로 평가(점수가 높을수록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음)한 결과 세 가지 지원정책 모두 3점 미만을 기록

– 입지지원정책은 2.95점이고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정책은 2.90점이며 현금지원정책은 2.79점을 기록

<표 4-31> 지원체계의 적절성

(단위: 5점척도)

구분		입지지원정책	현금지원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
		평균	평균	평균
전체		2.95	2.79	2.90
업종	제조업	2.98	2.75	2.94
	비제조업	2.93	2.82	2.86
노동조합 유무	있다	2.87	2.68	2.74
	없다	2.97	2.81	2.93
외국인투자 특별지역	특별지역	2.96	2.75	2.96
	기타	2.95	2.80	2.88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	그린필드형	2.98	2.83	2.89
	M&A형	2.94	2.82	2.96
	무응답	2.33	1.50	2.33

⑸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고용영향의 고려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지원요건이나 지원결정시 평가항목 그리고 지원에 따른 의무내용에서 고용영향(고용창출이나 교육훈련 등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이에 비해 현금지원정책은 2.85점을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을 보여줌

○ 먼저 입지지원정책의 고용영향 고려여부에 관한 설문에서 전체 81.3%가 '아니오'라고 응답

– 업종별로 살펴보면 '아니오'라고 답한 응답업체의 비중이 비제조업의 경우 83.7%로 제조업에 비해 더 높음

<표 4-32> 입지지원정책_고려여부

(단위: 명, %)

구분		예		아니오		무응답	
		명	%	명	%	명	%
전체		16	6.6	196	81.3	29	12.0
업종	제조업	11	9.8	88	78.6	13	11.6
	비제조업	5	3.9	108	83.7	16	12.4
노동조합 유무	있다	4	11.4	29	82.9	2	5.7
	없다	12	5.8	167	81.1	27	13.1
외국인투자 특별지역	특별지역	9	16.4	39	70.9	7	12.7
	기타	7	3.8	157	84.4	22	11.8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	그린필드형	10	6.6	129	85.4	12	7.9
	M&A형	5	6.2	66	81.5	10	12.3
	무응답	1	11.1	1	11.1	7	77.8

○ 현금지원정책이 고용영향을 고려하고 있는가에 관해 전체 81.7%가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으며, 그린필드형의 경우 그 비중이 85.4%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표 4-33> 현금지원_고려여부

(단위: 명, %)

구분		예		아니오		무응답	
		명	%	명	%	명	%
전체		15	6.2	197	81.7	29	12.0
업종	제조업	10	8.9	89	79.5	13	11.6
	비제조업	5	3.9	108	83.7	16	12.4
노동조합 유무	있다	4	11.4	29	82.9	2	5.7
	없다	11	5.3	168	81.6	27	13.1
외국인투자 특별지역	특별지역	8	14.5	40	72.7	7	12.7
	기타	7	3.8	157	84.4	22	11.8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	그린필드형	10	6.6	129	85.4	12	7.9
	M&A형	5	6.2	66	81.5	10	12.3
	무응답	0	0.0	2	22.2	7	77.8

○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정책이 고용영향을 고려하고 있는가에 대해 전체 응답업체 중 83.0%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2009년 매출액 기준 10억 미만 응답업체의 경우 그 비중이 92.3%에 이르고 있음

<표 4-34>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_고려여부

(단위: 명, %)

구분		예		아니오		무응답	
		명	%	명	%	명	%
전체		12	5.0	200	83.0	29	12.0
업종	제조업	8	7.1	91	81.3	13	11.6
	비제조업	4	3.1	109	84.5	16	12.4
노동조합 유무	있다	4	11.4	29	82.9	2	5.7
	없다	8	3.9	171	83.0	27	13.1
외국인투자 특별지역	특별지역	7	12.7	41	74.5	7	12.7
	기타	5	2.7	159	85.5	22	11.8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	그린필드형	7	4.6	132	87.4	12	7.9
	M&A형	5	6.2	66	81.5	10	12.3
	무응답	0	0.0	2	22.2	7	77.8

⑹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사업집행과정의 적절성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 5점척도로 평가한 결과 2.84점을 기록하여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음

<표 4-35> 사업집행과정의 적절성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무응답		평균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9	3.7	36	14.9	149	61.8	19	7.9	28	11.6	2.84
업종	제조업	5	4.5	18	16.1	71	63.4	9	8.0	9	8.0	2.82
	비제조업	4	3.1	18	14.0	78	60.5	10	7.8	19	14.7	2.85
노동조합 유무	있다	0	0.0	8	22.9	19	54.3	4	11.4	4	11.4	2.87
	없다	9	4.4	28	13.6	130	63.1	15	7.3	24	11.7	2.83
외국인투자 특별 지역	특별지역	1	1.8	9	16.4	38	69.1	4	7.3	3	5.5	2.87
	기타	8	4.3	27	14.5	111	59.7	15	8.1	25	13.4	2.83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	그린필드형	1	3.0	6	18.2	24	72.7	1	3.0	1	3.0	2.78
	M&A형	0	0.0	1	7.7	9	69.2	2	15.4	1	7.7	3.08
	무응답	0	0.0	2	22.2	5	55.6	1	11.1	1	11.1	2.88

(7) 사업추진체계 내에 고용영향고려의 필요성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추진체계에 고용영향(고용창출 및 유지, 인적자원 개발, 인력 양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에 대한 질문을 5점척도로 평가한 결과 3.80점으로 나타나 고용영향고려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주고 있음

<표 4-36> 추진체계 내에 고용영향고려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3	1.2	4	1.7	66	27.4	106	44.0	40	16.6	22	9.1	3.80
업종	제조업	2	1.8	1	0.9	27	24.1	49	43.8	24	21.4	9	8.0	3.89
	비제조업	1	0.8	3	2.3	39	30.2	57	44.2	16	12.4	13	10.1	3.72
노동조합 유무	있다	0	0.0	1	2.9	8	22.9	15	42.9	6	17.1	5	14.3	3.87
	없다	3	1.5	3	1.5	58	28.2	91	44.2	34	16.5	17	8.3	3.79
외국인투자 특별 지역	특별지역	1	1.8	1	1.8	13	23.6	29	52.7	9	16.4	2	3.6	3.83
	기타	2	1.1	3	1.6	53	28.5	77	41.4	31	16.7	20	10.8	3.80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	그린필드형	2	1.3	2	1.3	40	26.5	71	47.0	23	15.2	13	8.6	3.80
	M&A형	1	1.2	2	2.5	24	29.6	32	39.5	16	19.8	6	7.4	3.80
	무응답	0	0.0	0	0.0	2	22.2	3	33.3	1	11.1	3	33.3	3.83

마.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평가

(1)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확산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성과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5점척도로 평가한 결과 2.79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확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표 4-37>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확산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평균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0	4.1	46	19.1	139	57.7	18	7.5	1	0.4	27	11.2	2.79
업종	제조업	6	5.4	19	17.0	69	61.6	9	8.0	0	0.0	9	8.0	2.79
	비제조업	4	3.1	27	20.9	70	54.3	9	7.0	1	0.8	18	14.0	2.78
노동조합 유무	있다	0	0.0	7	20.0	20	57.1	4	11.4	0	0.0	4	11.4	2.90
	없다	10	4.9	39	18.9	119	57.8	14	6.8	1	0.5	23	11.2	2.77
외국인 투자특별 지역	특별지역	1	1.8	12	21.8	34	61.8	5	9.1	0	0.0	3	5.5	2.83
	기타	9	4.8	34	18.3	105	56.5	13	7.0	1	0.5	24	12.9	2.77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	그린필드형	6	4.0	29	19.2	84	55.6	12	7.9	0	0.0	20	13.2	2.78
	M&A형	4	4.9	14	17.3	51	63.0	6	7.4	1	1.2	5	6.2	2.82
	무응답	0	0.0	3	33.3	4	44.4	0	0.0	0	0.0	2	22.2	2.57

⑵ 성과관리에서 고용영향의 고려여부

○ 외국인투자유치의 성과관리에서 고용영향평가요소가 고려되어 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업체 241개사 중 그렇다는 의견이 7.5%, 아니다라는 의견은 13.7%로 나타났으며 78.8%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

<표 4-38> 성과관리에서 고용영향의 고려여부

(단위: 명, %)

구분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명	%	명	%	명	%
전체		18	7.5	33	13.7	190	78.8
업종	제조업	11	9.8	15	13.4	86	76.8
	비제조업	7	5.4	18	14.0	104	80.6
노동조합 유무	있다	8	22.9	3	8.6	24	68.6
	없다	10	4.9	30	14.6	166	80.6
외국인투자 특별지역	특별지역	7	12.7	5	9.1	43	78.2
	기타	11	5.9	28	15.1	147	79.0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	그린필드형	11	7.3	20	13.2	120	79.5
	M&A형	6	7.4	13	16.0	62	76.5
	무응답	1	11.1	0	0.0	8	88.9

(3)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5점척도 기준에서 평점이 2.78점으로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음

<표 4-39>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무응답		평균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12	5.0	45	18.7	133	55.2	22	9.1	29	12.0	2.78
업종	제조업	7	6.3	16	14.3	67	59.8	13	11.6	9	8.0	2.83
	비제조업	5	3.9	29	22.5	66	51.2	9	7.0	20	15.5	2.72
노동조합 유무	있다	0	0.0	7	20.0	17	48.6	7	20.0	4	11.4	3.00
	없다	12	5.8	38	18.4	116	56.3	15	7.3	25	12.1	2.74
외국인 투자특별 지역	특별지역	2	3.6	7	12.7	37	67.3	7	12.7	2	3.6	2.92
	기타	10	5.4	38	20.4	96	51.6	15	8.1	27	14.5	2.73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	그린필드형	9	6.0	29	19.2	77	51.0	16	10.6	20	13.2	2.76
	M&A형	3	3.7	15	18.5	50	61.7	6	7.4	7	8.6	2.80
	무응답	0	0.0	1	11.1	6	66.7	0	0.0	2	22.2	2.86

(4)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에서 고용영향평가 고려여부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에서 고용영향평가를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75.9%이며 그렇다는 의견은 7.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표 4-40> 고용영향평가 고려

(단위: 명, %)

구분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명	%	명	%	명	%
전체		19	7.9	39	16.2	183	75.9
업종	제조업	11	9.8	17	15.2	84	75.0
	비제조업	8	6.2	22	17.1	99	76.7
노동조합 유무	있다	8	22.9	3	8.6	24	68.6
	없다	11	5.3	36	17.5	159	77.2
외국인투자 특별지역	특별지역	6	10.9	8	14.5	41	74.5
	기타	13	7.0	31	16.7	142	76.3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	그린필드형	8	5.3	31	20.5	112	74.2
	M&A형	10	12.3	8	9.9	63	77.8
	무응답	1	11.1	0	0.0	8	88.9

바.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

(1)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확산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이 국민경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해당지역산업의 연관효과 제고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4-41>에 제시되어 있음

- 표에서 보듯이 국민경제에 기여한다는 의견과 고용효과에 기여한다는 의견이 각각 3.67점으로 나타나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4-41> 외투활성화정책의 기여도

(단위: 5점척도)

구분		사례수	국민경제에기여	고용영향에기여
			평균	평균
전체		241	3.67	3.67
업종	제조업	112	3.64	3.63
	비제조업	129	3.70	3.71
노동조합유무	있다	35	3.82	3.94
	없다	206	3.65	3.63
외국인투자 특별지역	특별지역	55	3.57	3.57
	기타	186	3.71	3.71
외국인 직접투자 유형	그린필드형	151	3.69	3.71
	M&A형	81	3.65	3.61
	무응답	9	3.71	3.71
2009년 매출액별	10억 미만	26	3.73	3.69
	50억 미만	39	3.61	3.58
	100억 미만	22	3.43	3.52
	1,000억 미만	58	3.77	3.81
	1,000억 이상	22	3.86	3.86
	무응답	74	3.63	3.60

(2)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고용창출효과와 관련한 애로사항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이 고용창출효과와 관련하여 가장 큰 애로사항을 주관식으로 질문한 결과 우수인력확보를 응답한 비율이 7.1%로 나타났고, 3.3%는 인력 확보, 2.5%는 생산인력, 1.7%는 전문 인력을 선택하였음

○ 따라서 인력확보와 관련된 사항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중이 법, 문화, 언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음

<표 4-42> 고용창출효과시 가장 큰 애로사항

(단위: %)

구분		사례수	비 중
애로사항	무응답	139	57.7%
	없음	36	14.9%
	우수인력확보	17	7.1%
	인력확보	8	3.3%
	생산인력확보	6	2.5%
	전문인력확보	4	1.7%
	경직된 법제도/관련 법규	3	1.2%
	언어의 차이	3	1.2%
	문화의 차이	3	1.2%
	우수인력에 대한 고임금	3	1.2%
	규제의 제약	2	0.8%
	기술이전	2	0.8%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부족	2	0.8%
	젊은 인재 확보	1	0.4%
	회사적자라 고용창출 할 수없다	1	0.4%
	원자재의 기술력 저하	1	0.4%
	파견근로자 고용기간 제한	1	0.4%
	국내시장상황의 악화	1	0.4%
	국내시장 개척	1	0.4%
	환율문제	1	0.4%
	복지정책 미비	1	0.4%
	고용안전성 보장	1	0.4%
	회계 투명성	1	0.4%
	체계적인 시스템	1	0.4%
	3D업종의 회피현상	1	0.4%
	자금의 유통	1	0.4%
	세제혜택 제도	1	0.4%
	행정업무 간소화	1	0.4%
	행정업무 지원	1	0.4%
	직접투자국외 제3국 인력확보시 규제요건	1	0.4%
	기술인력 확보	1	0.4%
	장기인력 확보	1	0.4%
	기술경쟁력	1	0.4%
	영업경쟁력	1	0.4%
	외국어 가능인재확보	1	0.4%
	영어 가능 인재 확보	1	0.4%
	연구인력확보	1	0.4%
	동종업체, 후발업체들의 경쟁으로 성장가능성 예측 어려움	1	0.4%
	행정절차가 까다롭다	1	0.4%
	고용의 유연성	1	0.4%
	인력운용의 비유연성	1	0.4%
	고용된 직원들에 대한 외국어 및 실무교육의 지원	1	0.4%
	고용된 직원이 생소한 기술이라 처음부터 교육	1	0.4%
	은행 대출이 어렵다	1	0.4%
	국내노동법이 회사와 안맞는 경우가 있다	1	0.4%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전문지식 부족	1	0.4%
	외국투자자 비상주시 은행 및 정부기관 거래시 친필서명 요구	1	0.4%
계		241	100.0%

⑶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고용창출효과를 위한 투자제도 개선방안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이 기업의 고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사업내용에서 모색되어야할 제도적 개선방안을 주관식으로 질문한 결과 세금면제/조세지원/세제혜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이 3.3%로 나타남

○ 외국인투자지역 내 사업종목제한의 해제, 규제완화/규제간소화, 투자인센티브, 맞춤형 우수인력의 지속적인 교육제도가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각각 1.2%를 차지함 <표 4-43>

⑷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고용창출효과를 위한 노동시장정책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이 고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노동시장정책을 주관식으로 질문한 결과 지역 내 인력양성을 통해 고용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업체가 5.0%에 이르고 있음

○ 응답업체의 4.6%가 교육훈련, 그리고 1.2%가 외국어 함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표 4-44>

<표 4-43> 제도적 개선방안

(단위: %)

구분		사례수	%
제도적 개선방안	무응답	160	66.4%
	없음	43	17.8%
	세금면제/조세지원/세제혜택	8	3.3%
	외국인투자지역 내 사업종목제한의 해제	3	1.2%
	규제완화/규제간소화	3	1.2%
	투자인센티브	3	1.2%
	맞춤형 우수인력의 지속적인 교육제도	3	1.2%
	연구개발에 관한 지원	2	0.8%
	금융지원	2	0.8%
	투자유치지역 확대	1	0.4%
	외국인투자 기업 우대정책	1	0.4%
	일관된 투자유치 정책	1	0.4%
	경영상황에 따른 인력조정의 유연성 제고	1	0.4%
	고용의 유동성 완화	1	0.4%
	임대료감면	1	0.4%
	수출입관련 제도의 개선	1	0.4%
	어음제도 축소 등 금융제도 개선	1	0.4%
	산업경기의 활성화	1	0.4%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키울 수 있는 교육지원정책	1	0.4%
	인건비 개선	1	0.4%
	근로환경 개선	1	0.4%
	교육훈련비를 직업전문학교 교육생에게 지급	1	0.4%
	사후운영 불편을 해소하기위한 별도의 자문기구 필요	1	0.4%
	당사 마케팅에 대한 한국 내 부정적 인식	1	0.4%
	외국인 기술자 영입시 장기적인 기술이전	1	0.4%
	외국기술도입	1	0.4%
	IT산업기반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1	0.4%
	금감원등의 적극적 규제와 개입으로 업종의 선진화	1	0.4%
	전국적으로 회사전반고용을 기준했으면 한다	1	0.4%
	노사관계의 안전성	1	0.4%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1	0.4%
	취업비자 발급요건 완화	1	0.4%
	안정적인 급여시스템	1	0.4%
	외국인이 국내 거주시 거주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1	0.4%
	공무원의 경직된 사고 전환	1	0.4%
계		241	100.0%

<표 4-44> 필요한 노동시장정책

(단위: %)

구분		사례수	%
필요한 노동시장정책	무응답	152	63.1%
	없음	37	15.4%
	지역 내 인력양성	12	5.0%
	교육훈련	11	4.6%
	외국어 함양교육	3	1.2%
	외국인 고용확대	2	0.8%
	외국자본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확대	2	0.8%
	일자리정보 지원	2	0.8%
	정부의 투자지원/자금지원	2	0.8%
	현장실무에 바로 반영시킬수 있는 기업현장 실무 교육훈련	2	0.8%
	전반적인 홍보	2	0.8%
	빈 일자리 채우기	2	0.8%
	근무환경 개선	1	0.4%
	주거인정	1	0.4%
	여성인력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	1	0.4%
	외국인투자기업 직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1	0.4%
	외국인투자기업 직원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	1	0.4%
	업종에 맞는 직무 교육	1	0.4%
	전문지식교육	1	0.4%
	해당인력이 직무에 맞도록 연계해주는 시스템	1	0.4%
	정부의 고용지원	1	0.4%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 개발지원	1	0.4%
	생산성 향상	1	0.4%
	인턴제 확대	1	0.4%
	임시직 고용 계약기간 연장	1	0.4%
	투자지속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1	0.4%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1	0.4%
	전반적인 노사관계 선진화제도 정착	1	0.4%
	영어교육	1	0.4%
	기초과학기술분야의 학문 교육	1	0.4%
	신규직원 채용시 추가 인센티브제도 시행	1	0.4%
	전문 인력양성 교육	1	0.4%
	단순직 인력에게 세제지원 혜택	1	0.4%
	구인사업장과 구직 취업희망자의 연결	1	0.4%
	고용센터에 등록된 인력정보 네트웍이 필요	1	0.4%
	지역중심도시를 활성화해 지방에서도 인력확보를 용이	1	0.4%
	정책의 일관성 유지	1	0.4%
	인력유연성 확보를 위한 법 제도 개정	1	0.4%
	시장활성화가 선행	1	0.4%
계		241	100.0%

(5) 고용효과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예상되는 고용증가량

○ 만일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 고용증가를 묻는 설문에서 전체 응답업체의 24.5%는 5~10%의 고용증가를, 응답업체의 25.7%는 5% 미만의 고용증가를 예상하였고, 30.3%는 고용창출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함

<표 4-45> 고용증가정도

(단위: 명, %)

구분		고용창출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다		5% 미만 고용이 증가할 것이다		5-10%미만 고용이 증가할 것이다		10-20% 미만 고용이 증가할 것이다		30% 이상 고용이 증가할 것이다		무응답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73	30.3	62	25.7	59	24.5	16	6.6	15	6.2	16	6.6
업종	제조업	24	21.4	26	23.2	37	33.0	7	6.3	8	7.1	10	8.9
	비제조업	49	38.0	36	27.9	22	17.1	9	7.0	7	5.4	6	4.7
노동조합 유무	있다	2	5.7	13	37.1	12	34.3	4	11.4	2	5.7	2	5.7
	없다	71	34.5	49	23.8	47	22.8	12	5.8	13	6.3	14	6.8
외국인투자 특별지역	특별지역	11	20.0	11	20.0	24	43.6	4	7.3	2	3.6	3	5.5
	기타	62	33.3	51	27.4	35	18.8	12	6.5	13	7.0	13	7.0
외국인직접 투자 유형	그린필드형	46	30.5	39	25.8	36	23.8	11	7.3	11	7.3	8	5.3
	M&A형	26	32.1	22	27.2	22	27.2	4	4.9	4	4.9	3	3.7
	무응답	1	11.1	1	11.1	1	11.1	1	11.1	0	0.0	5	55.6
2009년 매출액별	10억 미만	10	38.5	7	26.9	4	15.4	1	3.8	4	15.4	0	0.0
	50억 미만	15	38.5	4	10.3	12	30.8	3	7.7	3	7.7	2	5.1
	100억 미만	6	27.3	7	31.8	3	13.6	3	13.6	2	9.1	1	4.5
	1,000억 미만	19	32.8	12	20.7	17	29.3	4	6.9	2	3.4	4	6.9
	1,000억 이상	3	13.6	7	31.8	9	40.9	1	4.5	0	0.0	2	9.1
	무응답	20	27.0	25	33.8	14	18.9	4	5.4	4	5.4	7	9.5

제3절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고용영향평가 심층조사 결과

가. 조사 개요 및 응답업체 특성

(1) 조사개요

○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및 무역관련 특별지역인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

층조사를 수행

- 심층조사는 2010년 5월 중에 이루어졌으며 전문 조사회사에서 담당하였으며 조사는 간략한 객관식 평가항목을 제시한 후 평가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음

○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목표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평가
- 목표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 고용영향 고려여부
- 고용영향목표 고려방안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추진체계의 적절성 평가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지원정책의 필요성 평가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지원정책의 지원요건의 적절성 평가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지원정책의 지원수준의 적절성 평가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지원정책의 지원체계의 적절성 평가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지원정책의 고용영향의 고려여부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지원정책의 사업집행과정의 적절성 평가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평가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지원정책의 필요성 평가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성과관리 평가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성과관리에서 고용영향 고려여부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지원정책의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 평가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지원정책의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에서의 고용영향 고려여부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고용영향에 대한 종합 의견
- 국민경제 및 고용효과에 대한 평가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고용효과제고시 애로사항

⑵ 응답기관의 특성

○ 심층조사 조사대상 기관은 모두 30개로 기관의 특성은 <표 4-46>과 같음

<표 4-46> 외국인투자 및 무역관련 특별지역 중 해당되는 부분

외국인투자 지역	11. 단지형(26.7%) 13. 단지+개별형(13.3%)	12. 개별형(10%)
자유무역지역	21. 산업단지형(마산, 군산, 대불, 익산, 동해, 율촌, 울산)(13.3%) 22. 공항, 항만 물류형(공항:인천국제공항, 항만 물류형: 인천, 부산, 광양, 포항)	
경제자유 구역	31. 인천(3.3%) 33. 광양(3.3%) 35. 전북(새만금·군산)(3.3%)	32. 부산·진해(10%) 34. 황해(평택·당진)(6.7%) 36. 대구경북(구미·경산·영천)(10%)

나.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목표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평가

⑴ 목표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평가와 평가이유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이 국민경제의 발전 및 고용창출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한 결과가 <표 4-47>에 제시됨

- 표에서 보듯이 대부분 응답기관은 목표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해 높은 평가 점수를 부여하고 있음

<표 4-47> 목표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점
1) “국민경제에 기여”라는 목표에 적합하다	1	2	3 (3.3%)	4 (46.7%)	5 (50%)	4.47
2) “고용영향에 기여”라는 목표에 적합하다	1	2	3 (3.3%)	4 (66.7%)	5 (30%)	4.27
3) “국민경제에 기여”는 실현가능성이 있다	1	2 (3.3%)	3 (3.3%)	4 (56.7%)	5 (36.7%)	4.27
4) “고용영향에 기여”는 실현가능성이 있다	1	2 (3.3%)	3 (6.7%)	4 (70%)	5 (20%)	4.07

○ <표 4-47>에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음

<표 4-48>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 이유

구분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 또는 기여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
1) 국민경제 측면	· 경제자유구역은 싱가폴, 중국 등 선진 경제특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하나, 현재 정부가 6개의 경제자유구역 이외에 강원(동해), 충청권(세종, 오송, 오창, 증평)의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고, 특히 세종시에 국내 대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을 적극유치하고 있어 지방에 있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유치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 실질적 특별한 지원 혜택 없다. 외투나 일반 중소기업이나 활성화 되지 않고 있음
2) 고용영향 측면	· 외국인투자유치는 외국자본의 국내 유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국가 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측면은 인정되나 고용측면에서는 경영비 절감, 기업이윤창출 등의 목적으로 최소한의 고용만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⑵ 외국인직접투자활성화정책의 고용영향 고려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계획 및 목표 내에 고용영향(고용유지 및 창출, 인적자원개발, 인력의 양성 및 공급)이 고려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응답기관의 76.7%가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고려하고 있지 않다 6.7%, 잘 모르겠다 16.7%로 나타남

○ 고용영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표 4-49>와 같음

⑶ 고용영향목표 고려방안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목표에 고용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 평점 4.50점으로 대부분 그렇다는 의견을 제시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이 해당 투자지역이나 투자기업의 고용영향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목표 및 계획내용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 <표 4-50>과 같은 의견을 제시

<표 4-49> 고용영향 고려하고 있다고 평가한 이유

○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시 고용창출 관련 인센티브(Cash Grant) 제공
- 생산공장 부지매입을 위한 입지보조금 지원: 분양가의 최대 50%내(장기 부상임대 가능)
- 건축비, 시설·장비 등 투자보조금 지원: 투자금액의 최대 10%내
- 고용보조금 지원: 20인 초과 신규고용시 초과인원 1인당 최대 월100만원, 6개월간 지원
-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20인 이상 고용 후 교육훈련시 교육훈련인원 1인당 최대 월 100만원, 6개월간 지원

○ 외국인투자기업(생산공장) 유치시 세금감면
-법인·소득세(5년간100%, 2년간 50%), 관세(5년간 100%), 취득·등록·재산세(15년간100%)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시 현금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

○ 교육훈련 보조 프로그램 및 기업활동지원 사업
- 한국어강좌, 사이버대학, 교육컨설팅, 구인지원, 외투기업정보소식지 발간 등 외투기업 활동지원사업을 진행

○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지원
- 입주기업의 종업원 고용, 민간산업 이주 및 주변 기업과의 업무 협조(기술 교류 등)
- 신규인원 채용시 인력 교육확대로 인한 기술 양성 및 발전
- 각 지역간 경쟁으로 집중화 및 연관기술 개발 가속화
-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학술적 자문과 지원

○ 투자협의 시 지역 내 고용창출효과 강조 및 고용효과를 높이도록 유도
- 투자금액(고용인원등 고려) 인센티브 제공의 차이
- 특정부지에 다수기업이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업종을 우선 유치

○ 기타
- 고용 및 교육훈련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통해 고용창출 및 숙련된 인력 고용 가능
- 고용 창출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체가 3년간 고용 규모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고용유지 가능토록 함.
- 외투기업 신기술 도입 시 국내 고용원 자국 초청 및 교육실시
- 기 채용한 고용원 이직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등 세심한 관리

<표 4-50> 고용영향목표 고려방안

○ 인센티브(Cash Grant) 강화
- 국비지원 확대
- 현금지원 확대 등의 인센티브제공의 활성화
-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

○ 인센티브제공 조건의 현실화
- 고용규모에 따른 차등적인 인센티브 제공
- 투자금액(FDI)이 아닌 고용규모에 따른 인센티브제공

○ 규제완화
- 지역경제 파급효과 심사시 고용창출부문의 가중치 부여
- 토지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비율 확대
- 보조금지급 기준의 완화

○ 기업지원시스템 강화
- 인력양성, 공급 방안 마련
- 단지 내 관련 업종간의 연계강화 방안 확충
- 중앙, 지방의 연계지원책 확보
- 전력공사 등 지원 시설의 확충

○ 정주여건 개선
- 임대료 인하 및 지원 폭 확대
- 지역별 여건에 맞는 주거, 교통, 문화, 복지 등의 지원책 마련

○ 기타
- 고용유발효과가 큰 업종 선별 유치
- 외국인투자유치 환경조성위한 국내 우수 기업의 투자유치 선행
- 지속적인 고용 유지 방안 마련

다.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추진체계의 적절성 평가

(1) 외국인투자유치지원정책의 필요성 및 지원요건의 적절성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을 설정하고 조세감면, 관세혜택, 임대료감면 등과 같은 입지지원정책과 더불어 현금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정책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입지지원정책은 4.63점,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정책은 4.47점, 현금지원정책에 대해서는 4.03점으로 나타남

<표 4-51>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지원정책의 필요성

	전혀 필요하지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평점
1) 입지지원정책	1	2	3 (3.3%)	4 (30%)	5 (66.7%)	4.63
2) 현금지원	1	2 (13.3%)	3 (20%)	4 (16.7%)	5 (50%)	4.03
3)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지원	1	2 (3.3%)	3 (10%)	4 (23.3%)	5 (63.3%)	4.47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지원정책의 지원요건 및 대상의 적절성에 대해 응답기관은 입지지원정책 3.83점,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 3.73점, 현금지원정책에 대해 3.40점수를 평가

<표 4-52> 지원요건 및 대상의 적절성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평점
1) 입지지원정책	1	2 (10%)	3 (23.3%)	4 (40%)	5 (26.7%)	3.83
2) 현금지원	1 (3.3%)	2 (13.3%)	3 (33.3%)	4 (40%)	5 (10%)	3.40
3)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지원	1	2 (6.7%)	3 (33.3%)	4 (40%)	5 (20%)	3.73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지원정책의 지원요건이나 대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은 <표 4-53>과 같음

<표 4-53> 지원요건이나 대상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및 개선방안

지원 정책	지원요건이나 대상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및 개선방안
1) 입지 지원 정책	○ 문제점 - 투자금액에 의한 부지면적 결정은 부적절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자체검증절차에 의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므로 사업부지 지원 정책은 불필요한 정책이라 판단 ○ 개선방안 - 투자금액의 하한한도 완화 - 외국인투자기업 유치환경조성 위해 국내기업에게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인센 티브 지원 - 수도권과 지방간의 입지지원조건 및 금액 차등화 - 해외 경쟁국에 비해 취약한 인센티브, 토지의 일정기간간 무상공급 등의 지원 - 투자실적에 따른 사후 지원, 굴기비용 부담 완화 위해 사전 지원정책 - 토지 구매와 더불어 임대에 관한 요건 확충 - 투자금액의 규모와 함께 고용 규모에 따른 입지지원책 마련 - 국가의 계획과 더불어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 현금 지원	○ 문제점 - 입주부지제공 및 현금지원은 이중지원이 될 소지가 있음 -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 현금 지원의 신청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움, 신청요건완화 필요 - 고용규모에 따른 현금지원책 마련 - 투자실적에 따른 사후지원이 아닌 굴기비용부담경감 위한 사전지원정책 - 현금지원 뿐 아니라 기업환경에 맞는 지원책 마련 - 외국인투자기업유치환경조성 위해 국내기업에게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인센티브 지원 - 현금지원업체 선정에 명확한 기준 마련
3)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지원	○개선방안 - 언론을 통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 - 지자체 및 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 - 유지지원 활동보다는 인센티브강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

⑵ 외국인투자유치지원정책의 지원수준의 적절성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지원정책의 지원수준의 적절성에 대해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 3.67점, 입지지원정책은 3.60점, 현금지원정책은 3.20

점수를 기록

<표 4-54> 지원수준의 적절성

	전혀 적절하지않다	적절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평점
1) 입지지원정책	1 (6.7%)	2 (10%)	3 (16.7%)	4 (50%)	5 (16.7%)	3.60
2) 현금지원	1 (10%)	2 (16.7%)	3 (26.7%)	4 (36.7%)	5 (10%)	3.20
3)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지원	1 (3.3%)	2 (3.3%)	3 (30%)	4 (50%)	5 (13.3%)	3.67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지원내용(지원수준, 지원방식, 지원기간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된 의견은 <표 4-55>과 같음

<표 4-55> 지원수준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및 개선방안

지원 정책	지원내용(지원수준)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및 개선방안
1) 입지 지원 정책	○ 문제점 - 국유지와 공유지에 따라 임대료감면액이 차등화 되어 있어 형평성 측면 문제 - 임대기간이 너무 김 ○ 개선방안 - 각종 인허가 과정을 통합한 원스톱서비스 행정체제 구축 - 열악한 지방재정상태를 감안한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에 국비지원규모 상향조정 - 해외 경쟁국 대비 미약한 지원수준의 확대 -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 상향 조정 - 조세감면 기준 완화 - 일반 산업단지와 차별화된 제도
2) 현금 지원	○ 개선방안 - 적극적인 현금지원 - 고용창출규모분야에 대한 현금지원 - 사업분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한 현금지원 - 현금지원규모의 현실화
3)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지원	○ 개선방안 - 지원금의 규모확충 필요 - 지방의 특성이 반영된 유치활동지원 - 지자체 자율적인 예산활용

⑶ 외국인투자유치지원정책의 지원체계의 적절성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지원정책의 지원체계(신청절차 등 행정체계)가 적절성에 대한 평가에서 입지지원정책은 3.63점,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 3.60점, 현금지원정책은 3.30점으로 나타남

<표 4-56> 지원체계의 적절성 평가

	전혀 적절하지않다	적절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평점
1) 입지지원정책	1 (3.3%)	2 (6.7%)	3 (23.3%)	4 (56.7%)	5 (10%)	3.63
2) 현금지원	1 (6.7%)	2 (13.3%)	3 (33.3%)	4 (36.7%)	5 (10%)	3.30
3)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지원	1 (3.3%)	2 (3.3%)	3 (33.3%)	4 (50%)	5 (10%)	3.60

○ 지원체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표 4-57> 지원체계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및 개선방안

지원정책	지원체계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및 개선방안
1) 입지 지원 정책	○ 문제점 - 각종 인허가사항이 분산되어 있어 산업용지 확보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림 - 단지형 외국인투자 지역을 지경부 내에 지정해주고 있지 않음 ○ 개선방안 - 각종 인허가제도의 간소화 - 입주검토에서 입주까지 체계적 지원 방안이 전무
2) 현금 지원	○ 문제점 - 현금지원과 입지지원 병행 지원 불가 -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시기도 정해져 있어 불편 ○ 개선방안 - 근거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제의 간소화 필요
3)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지원	○ 문제점 - 절차 또는 법률에 규제가 많아 유치활동에 어려운 부분이 많음 - KOTRA의 정보의 독점과 투자자와의 접촉에 방해 ○ 개선방안 - 지자체에 예산지원 요구 - 규제를 완화해야함

⑷ 외국인투자유치지원정책의 지원체계의 고용영향의 고려여부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지원정책이 지원요건이나 평가항목, 그리고 지원에 따른 의무내용에서 고용영향(고용창출이나 교육훈련 등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고려내용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표 4-58> 지원체계의 고용영향의 고려여부

지원정책	지원체계의 고용영향의 고려여부
1) 입지 지원 정책	- 투자규모 및 투자의 질적인 면뿐만 아니라 고용정도에 따라 차등지원 - 입지지원에 있어 비슷한 수준의 투자에서 고용정도에 따른 차등지원 - 주변 산·학·관의 업무 협약 MOU 체결 지원
2) 현금 지원	- 투자규모가 다소 적더라고 300명 이상 고용 시 현금 지원 대상에 포함 - 고용의 양과 질에 따른 현금 지원의 차등 - 업무 특성이 고려된 현금지원 기준 - 외국인투자기업유치시 기업이 고용지원보조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
3)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지원	- 고용을 많이 한 기업을 우선 적으로 지원 - 담당PM지정을 통한 관리 - 투자희망기업 상담 시 고용창출 효과 분석 자문 제공 - KOTRA와 지자체에 관계 전문가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⑸ 외국인투자유치지원정책의 사업집행과정의 적절성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지원정책이 잘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0%, 그렇지 않다 10%, 그저 그렇다 40%, 다소 그렇다 26.7%, 매우 그렇다 13.3%로 평점 3.23점으로 나타남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사업집행과정이 잘 집행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은 <표 4-59>과 같음

<표 4-59> 사업집행과정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와 개선방안

○ 문제점 - 경제자유구역의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어 국내 경제자유구역간의 불필요한 경쟁 심화 예상 - 중앙정부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반시설 등 지원 예산부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경쟁력 저하 - 과도한 규제로 인한 투자심리 압박 - 외국인의 Needs 파악 부족 - 투자유치 관련 해외 경쟁국의 전략파악 미흡 -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인센티브의 차별성 미흡 - 미흡한 정주여건 ○ 개선방안 - 선진 경제특구와 경쟁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별화된 투자유치전략 강구 - 정부주도의 과감한 규제완화와 획기적인 인센티브제도 도입, 개발 및 인센티브관련 예산을 확보 - 영호남권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한국 제2허브 공항의 조기 신설 -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창출 및 유치, 인력양성/개발 프로그램 운영 유도 등 - 각종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획기적으로 개선 - 학교, 병원 등 정주여건과 관련된 기반시설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필요

⑹ 외국인투자유치지원정책의 추진체계 내에 고용영향의 고려 필요성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사업의 추진체계에 고용영향(고용창출 및 유지, 인적자원 개발, 인력의 양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결과는 다음과 같음

- 다소 그렇다 50%, 매우 그렇다 43.3% 그리고 그저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각각 3.3%로 나타나 평점 4.33점을 보이고 있음

○ 고용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 추진체계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견을 종합한 결과는 <표 4-60>과 같음

<표 4-60> 추진체계 개선방안

- 고용의 질적수준을 고려한 평가안 마련
- 각종 보조금지원의 유연화 필요
- 각종 규제의 완화가 필요함
- 현금지원 요건 완화 및 규모 확대
- 인센티브 부여시 투자규모 외에 고용현황 등을 반영하는 정책 추진의 다각화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자격에 고용부분을 명확하게 명기
- 지역별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 지역과 외국인투자기업이 공동 성장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범정부적 차원의 접근 위해 지식경제부 소관의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을 총리실로 이관
- 지방자치단체조합 형태의 조직을 시·도 소속으로 분리·변경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방안 강구
- 외국인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에 관한 부정적 국민의식 해소될 필요가 있음
- 외국기업에 제공되고 있는 국가적, 지방적 인센티브를 내국인고용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

라.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평가

(1)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확산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성과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다소 그렇다 33.3%, 매우 그렇다 13.3%, 그저 그렇다 40%, 그렇지 않다 10%, 전혀 그렇지 않다 3.3%로 나타나 평점 3.43점을 보였음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성과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된 의견은 <표 4-61>과 같음

<표 4-61> 성과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FDI 신고금액과 도착금액의 차액에 관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외국인투자금액과 입지 면적에 따른 과도한 규제
- KOTRA의 전문성 결여
- FDI의 전·후방 연계효과가 고려되지 않음
- 외국인투자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배당이 적음

○ 개선방안
- FDI 신고금액과 도착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승진, 승급, 포승금지급 등의 지원근거 완화
- 다양한 FDI 평가방식 도입
- KOTRA의 전문성 확보

⑵ 성과관리에서 고용영향의 고려여부

○ 외국인투자유치의 성과관리에서 고용영향평가요소가 고려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그렇다 16.7%, 아니다 33.3% 잘 모르겠다 50%로 나타남

○ 성과관리에 고용영향평가가 고려되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4-62> 성과관리에 고려된 고용영향의 구체적인 내용

- 모든 외자기업에 대한 고용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기업의 고용목표와 실제 고용현황 등의 비교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 향후 고용목표보다 실제 고용인원이 상회할 경우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포상금기준금액 산정시 평가항목에 "고용창출효과(신규고용창출규모 등)" 반영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촉진에 관한 규정

- 외국인투자유치업무 담당으로서 성과관리의 달성목표 선정 시 목표에 대한 부담감 또는 본인의 의지로 달성하기 어려운 점. 기업의 경영활동 및 장래 목표에 대하여 충분하게 공유하지 못함으로써 성과관리에 목표로 내국인의 고용규모 및 인력과 고용기간 등을 목표로 정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

- 매분기별 고용창출효과 등을 파악하고 있으나, 고용은 기업경영방침 또는 상황에 따라 개별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므로 투자 후에 행정에서 고용문제를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 즉 민간경제를 제도적으로 마련된 장치가 없는 한 행정에서 직접 제어하기 곤란함

○ 성과관리에 고용영향이 고려되어 있지 않거나 되어 있더라도 미흡하다고 생각

하는 경우 성과관리를 통해 고용영향에 따른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가능성 및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표 4-63> 성과관리 고용영향 제고 구체적인 방안

- 고용효과가 높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외국기업의 경영활동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만들고 만들어진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도 및 지원사항이 연계되어야함
- 법, 조세, 고용유지 등에 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기존기업의 재투자유도 위한 제도 필요
- 고용인원에 대하여 인센티브지급근거가 없음. 승진, 승급, 포상금지급 등 지원이 필요함
- 투자유치성과평가시 투자금액기준으로 고용규모에 대한 고려가 없음
- 고용효과는 지금과 같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 고용규모라는 추가기준의 부담이 외국자본의 이탈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⑶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는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3.3%, 그렇지 않다 13.3%, 그저 그렇다 36.7%, 다소 그렇다 33.3%, 매우 그렇다 3.3%로 평점 3.34점으로 나타남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표 4-64>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 개선방안

- KOTRA의 옴부즈만제도를 보완할 지역별 전문 요원 및 전담부서의 신설 필요
- 입주유치가 완료되면 관리기관이 관리하는 것이 전부이므로 사후서비스가 부족, 사후관리전달 필요
- 인력공급의 측면이 부족, 체계적인 인력양성 필요
- 투자유치의 비밀보호를 요하는 유치활동자의 지나친 경계심으로 인하여 지원체계와 연계성이 미흡
- 계약직인 투자유치전문가의 업무안정이 문제, 때문에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 KOTRA 전문성확보 시급

라.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의 고용영향평가 고려여부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에서 고용영향평가를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그렇다 16.7%, 아니다 40%, 잘 모르겠다. 43.3%로 나타남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에서 고용영향평가가 고려되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4-65>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 고용영향의 구체적인 내용

- 사후관리적 측면에서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지방세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 모든 외자기업에 대한 고용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기업의 고용목표와 실제고용현황 등의 비교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 향후 고용목표보다 실제고용인원이 상회할 경우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3년 이상 고용규모유지, 3년 이내 해고시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 추정, 투자 이행 여부 확인, 투자이행각서징수 및 전담관리관 지정 등
-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실적 및 교육훈련에 따른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급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에서 고용영향평가를 고려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고려하고 있더라도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의 강화를 통해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된 의견은 다음과 같음

<표 4-66>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 고용효과제고방안

- 고용유지, 창출을 위한 전담부서 및 담당자 필요
- 고용인원쿼터조절을 실시하여 임대면적당 고용인원을 창출
- 효과적인 인력공급위한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필요
- 고용계획 이행여부의 지속적인 확인 필요
- 투자유치활동 개시 전 정확하고 치밀한 사전조사를 통해 정확한 투자유치활동을 지원
- 중앙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필요

마. 고용영향에 대한 종합의견

(1) 국민경제 및 고용효과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이 전반적으로 국민경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해당 지역산업의 연관효과제고 및 고용창출효과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외국인직접투자의 국민경제에 기여는 평점 4.30점으로 나타났고, 고용효과는 4.132점으로 집계됨

<표 4-67> 국민경제 및 고용효과

	전혀 적절하지않다	적절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평점
1) 국민경제에 기여	-	-	(6.7%)	(56.7%)	(36.7%)	4.30
2) 고용효과 (고용창출 및 유지, 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등) 제고	-	-	(20%)	(46.7%)	(33.3%)	4.13

(2) 고용효과제고시 가장 애로 사항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고용효과를 제고함에 있어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 제시된 의견은 <표 4-68>과 같음

(3)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 정책의 고용효과제고를 위한 실천적인 방안

○ 외국인직접투자활성화정책의 고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을 정리한 결과는 <표 4-69>와 같음

<표 4-68> 고용효과제고시 애로사항

○ 지원 체계 – 노조관계의 조율위한 기관의 부재 – 공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산업입지의 공급주체를 다각화 – 의료, 교육, 교통 등과 같은 정주여건 개선 – 구직자의 제조업 근무기피에 따른 지역 내 우수인력수급 문제 –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지역 내 인력양성 기관의 부족 – 외국인투자 성과를 투자금액으로 일률평가 –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 – 입주 후 관리체제의 미비 ○ 지원 수준 – 고용 창출에 따른 세금감면이나 부지임대료감면과 같은 추가혜택이 필요 – 경쟁국인 싱가폴, 중국 등에 비해 빈약한 인센티브 – 국비지원예산 부족 ○ 입지 여건 – 도심지역과 물리적 심리적 거리로 인한 인력수급이 어려움 – 수도권 집중현상과 세종시 등으로 지방투자 위축 – 지역 내 교육인프라 부족 – 대중교통 이용여건 열악 – 외국인의 정주여건 열악 – 내륙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통인프라의 부족 ○ 인력 수급 – 숙련된 기술인력 부족 및 저임금으로 인한 잦은 이직 – 첨단산업기술분야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이여서 고용창출효과는 미미 – 기업입주 후 인력고용 및 관리 애로 ○ 기타 – 저조한 입주 기업체의 고용의지

<표 4-69> 고용효과제고를 위한 실천적인 방안

– 싱가폴, 중국 등 선진 경제특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 강구 필요 – 정부주도로 과감한 규제완화와 획기적인 인센티브제도 도입, 개발 및 인센티브관련 국비지원 예산 증액 – 영호남권 해외접근성 강화를 위한 한국 제2 허브공항의 조기건설 – 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접촉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 대기업의 신수종사업 유치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 적극지원 – 행정절차 간소화 및 경제자유구역청 권한 강화 – 각종 인센티브 지원

○ 사업의 목표나 추진체계 또는 집행과정 및 성과관리에서 고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정리한 결과는 <표 4-70>과 같음

<표 4-70> 고용효과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 지원 체계 - 조세제도의 개선 - 고용규모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체계 마련 - 외국인투자단지에 입주시 각종 규제의 간소화 - 고용창출효과가 큰 물류·유통 등 서비스분야로 외자유치범위 확대 - 외국자본투자기업의 경영지원 - 인센티브제공시 실질적인 고용효과를 평가하는 다각화된 성과관리 체계 마련 -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앙정부 산하 기관으로 변경, 총리 책임 하에 개발 및 투자유치 추진 - 효율적 사업추진 위해 지방자치단체조합 형태의 조직을 시·도 소속으로 분리·변경 ○ 지원 수준 - 싱가폴, 중국 등 선진경제특구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 파격적인 현금지원 - 각종 보조금 및 현금지원제도의 국비지원규모를 상향 조정 - 임대형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장기간 사업유지시 기업의사에 따라 분양전환 가능하도록 제도 변경 - 고용규모가 큰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 ○ 입지여건 - 편의시설과 환경개선 등 정주여건의 개선 - 낮은 접근성으로 인한 지방투자 기피완화를 위해 교통인프라의 적극 지원 - 교육, 문화 시설의 확충으로 정주여건 조성하여 인구유입 유발 ○ 기타 - R&D 센터의 유치를 통한 고급인력의 고용 촉진 - 투자성과 평가시 고용규모 포함 - 지역 내 인력 고용시 인센티브 제공의 확대

⑷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 정책의 고용효과제고를 위한 노동시장정책

○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 정책의 고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노동시장정책(교육훈련, 지역 내 인력양성, 빈일자리채우기 등)에 대해 제시된 의견은 <표 4-71>과 같음

<표 4-71> 고용효과제고를 위한 노동시장정책

○ 지원 체계 - 노조관계의 해결, 조세제도 개선, 정주여건을 개선 - 지방노동청의 권한 강화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강력한 고용강제 정책 -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들의 재교육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 노동 수급 - 효율적인 인력배분을 위한 일자리현황 및 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확보 - 지역 내 인력활용 위한 교육훈련 실시 -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 지역 대학들과 연계를 통한 인력양성체제 마련 - 4년제 대학의 교육과정을 현실에 맞게 학문 연구와 특화된 직업교육 과정으로 구분 추진 - 2년제 전문대 교육과정을 산업트렌드에 맞게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정부지원 강화 ○ 기업이 필요한 숙련된 인력양성 및 공급 확대 - 마이스터고 등 실업계고 육성 ○기타 -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내외 기업 및 연구소 유치 등 신규 투자 - 영남권 신공항, 광역철도 및 도로망 공사 등 대규모 국책사업 확대 - 도시와 산업단지간 교통 연계망 확대 - 고용규모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관련업종의 규모화 달성, 집중화 및 해당산업관련 전문가 양성

○ 외국인직접투자활성화정책의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를 제고하도록 사업내용이 개선되는 경우 현재에 비해 고용창출이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의견결과는 다음과 같음

- 현재보다 고용창출이 5-10%미만 증가할 것이다가 4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현재보다 고용창출이 10-20% 미만 증가할 것이다가 30%, 현재보다 고용창출이 5% 미만 증가할 것이다가 20%, 현재보다 고용창출이 30% 이상 증가할 것이다가 3.3%로 조사됨

제5장 결론: 고용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경제규모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유입이 미미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FDI가 크게 증가

-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외환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외 방을 단행하고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대한 제한을 대폭 철회하는 개방화정책을 시행
- 외국인투자를 보호하는 조치 외에 외국인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조세 및 관세 지원제도, 현금지원제도, 산업단지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

○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영향파급효과분석 및 고용창출제고를 위한 투자유치개선 방향을 외국인투자유치정책적 측면과 투자유치지역의 고용연계성이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

○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고용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가. 입주 환경의 개선

○ 정주환경(교육, 문화, 교통 등) 개선, 특히 교육시설 및 문화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 조성하여 인구 유입 유발(일할 수 있는 인력 확충)

- 수도권집중의 심화로 인한 지방투자 기피완화를 위한 지방인프라의 적극 지원(산업단지 주변 도로건설 등)
- 외투기업의 수요처가 될 국내 대기업의 신규사업 지방투자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지원
- R&D센터의 유치를 통한 고급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고려

- 산업단지의 조성시 단지가 활성화되기까지 공단지역 내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토록 지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에 국내외 기업 및 연구소 등 유치

○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실시
- 지방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수도권과의 차별화
- 근본적으로 외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은 입지에 외투지역을 설치·지정

○ 입주심사시 고용영향고려 강화
- 입주심사시 고용창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외투기업의 신규입주시 당해기업의 인력채용을 신규로 일정 부분 충족하는 시스템 개발[16)]

나. 투자유치지원정책 개선

○ 인센티브시스템 개선
- 입주시 제출한 고용인원 대비해서 더 많이 인원을 고용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임대료감면의 혜택을 주는 방안 고려
- 고용창출효과가 큰 물류·유통 등 서비스분야로 외자유치범위를 확대하여 고용창출효과를 제고[17)]
-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에 대한 국비 지원규모(지방비에 대해 50% 매칭)를 상향 조정 (국비 50%→100%)
- 20년 이상 장기무상임대관련 국비 및 지방비 매칭비율(75%: 25%)을 국비 100%로 상향 조정 (지자체의 경우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부담능력이 없음)
-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비율 상향 조정 (국비 50%→100%)

○ 외투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지원을 통해 고용창출은 물론, 고용유지

16) 고용창출 규모를 명시하도록 강제할 경우 외투기업의 투자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음. 그러므로 고용창출이라는 정책목표와 외투 활성화라는 목표 사이의 trade-off를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해야 함
17) 현재 정부는 FDI를 통한 고용창출 확대를 위해 서비스 분야 FDI 강화 방안을 마련임

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함

○ 인센티브대상요건으로 투자금액이 낮더라도 고용창출이 많은 기업(특히, 서비스 업종) 포함

다. 성과관리 체계 개선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관리에 있어서도 관리 및 담당자의 성과관리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내국인 고용규모 및 고용기간 등 외국인투자기업유치로 인한 국내 경제기여도를 수치화 할 필요가 있음(추상적이며, 예측적인 측면의 성과관리는 지양하고 목표대비성과를 객관적 수치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으로 성과관리)
- 인센티브 등 지급시 실질적인 고용효과를 평가대상으로 삼는 등 다각화된 성과관리 및 평가 필요

○ 내국인고용규모에 따른 세제혜택과 임대료 감경, 현금지원 등의 절차를 고용성과별로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시스템

라. 노동시장정책개선

○ 기업에 필요한 전문분야의 교육 및 체계적 인력양성시스템 구축
-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일자리현황을 파악하여 이에 부합하는 교육훈련 등을 통한 지역 내 인력양성체계를 구축
- 지역대학들과 연계를 통한 인력양성체제를 마련하며, 외국인투자기업종사자들의 재교육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 지역 내 인력양성 및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업종의 전문화가 필요함.[18] 즉, 투자지역의 업종의 규모화 및 집중화를 도모하고 이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업종 전문가양성에 집중투자를 할 경우 인력수급의 미스매치가 완화

18) 이 정책은 반드시 외투유치 활성화 정책이라기보다는 사회 전반의 인력창출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임

○ 관련 법 제도 정비

- 외국투자기업에 국내 고용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고용정책이 필요
- 이를 위해 고용에 따른 차등인센티브부여제도 및 국내법상 고용을 유발하기 위한 법령 제도 개선 상황 등의 제도 정비 필요

▌참고문헌▌

강성진·서상원(2005),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전략적 유치방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강성진·손상학(2009), 「해외 및 외국인직접투자가 한국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국제경제연구』, 제15권, 2호, pp. 103-129.

강성진·이홍식(2006), 「직접투자의 탈산업화에 대한 영향분석」, 정책연구보고서 06-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__________(2010),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탈산업화에 미친 효과분석」, 『국제통상연구』, 제15권, 1호, pp. 129-151.

김영태·박장호·김영민(2008), 「외국인직접투자가 설비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조사통계월보』, 4월호, 한국은행.

김준동·강준구·김혁황·김민성·이성봉(2009),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효과 및 투자환경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남광희·윤성훈(2005), 「우리나라 FDI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2004),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창출실태」.

박성재·이규용(2009),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고용효과 분석」, 『노동리뷰』, 1월호, pp. 53-72.

송영남(2005), 「외국인직접투자유치의 저해요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아시아지역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치」, 『산업경제연구』, 제18권, 4호, pp. 1471-1488.

연태훈(2003), 「외국인직접투자의 산업 간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정책연구시리즈』 2003-05, 한국개발연구원.

_____(2004), 「외국인직접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고용창출』, 한국개발연구원.

오호영(2008), 「일자리 선진화 전략 -규제철폐와 외자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오호일·박창현(2006), 「세계 인수합병(M&A) 확대요인과 시사점」, 조사국 해외조사실 보고서, 한국은행.

이규용·박성재·이인재·이창수(2008),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고용효과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이동헌·손정원(2009),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전략의 성과와 한계: 영국 웨일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2권, 4호, pp. 438-453.

정세은·김봉한(2009), 「외국인직접투자의 생산성, 투자, 고용효과」, 『한국경제의 분석』, 제15권, 2호, pp. 105-160.

정종인·박장호(2007),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및 과제」, 조사국 산업지역팀 보고서, 한국은행.

홍재범(2008),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한국은행(2004), 『산업연관분석해설』.

<부록 Ⅰ>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ID				

현재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기관에서는 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의 고용영향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심층조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우리나라 외국인 외국인투자자정책의 활성화 및 내국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 5월

주 관 기 관: 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협 조 기 관: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관련기관
연구 책임자: 연세대학교 최강식 교수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 당 자: (주)아이알씨
▶ 회 신 처:

※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무기명 으로 처리되고, 통계분석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명		주소	시(도) 구(시/군) 동(면) 번지
업종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것 기준)	농축산업 광업( ) 식품제조업( ) 섬유직물의류제조업( ) 제지목재제조업( ) 화공제조업 ( ) 의약제조업( ) 비금속광물제조업 ( ) 금속제조업 ( ) 기계장비제조업( ) 전기전자제조업( ) 운송용기계제조업( ) 기타제조업 ( ) 도소매(유통)( ) 음식숙박업( ) 운수창고(물류)( ) 통신( ) 금융보험업 ( ) 부동산 임대( ) 비즈니스서비스업( ) 문화오락서비스업( ) 공공기타서비스업( ) 전기가스수도업( ) 건설업( )		
노동조합 유무	1. 있다 2. 없다	노조상급단체 (노조가 있는 경우)	1) 한국노총 2) 민주노총 3) 기타
응답자 소속		응답자 연락처	
응답자 성명/직급	(임원) / (e-mail)		
	(실무담당자) / (e-mail)		

1. 외국인투자 및 무역관련 특별지역 중 해당되는 부분

외국인투자지역	(1) 단지형 ( ) (2) 개별형 ( )
자유무역지역	(1) 산업단지형( ) (마산, 군산, 대불, 익산, 동해, 율촌, 울산 (2) 공항, 항만 물류형( ) (공항:인천국제공항, 항만 물류형: 인천,부산, 광양, 포항)
경제자유 구역	(1) 인천( ) (2) 부산·진해( ) (3) 광양( ) (4) 황해(평택·당진)( ) (5) 전북(새만금·군산)( ) (6) 대구경북(구미·경산·영천)( )
기타 지역	( )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투자유치 및 무역관련 특별지역을 지정하거나 세제지원, 입지지원, 현금지원,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본 설문조사는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고용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고용영향평가의 목적은 국가·지자체의 주요 사업·정책 및 법·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고용친화적 정책추진을 지원하는데 있으며 평가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책의 고유목표 달성도 및 정책과 고용과의 연계성 검토 결과
둘째, 해당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증감 수 및 질
셋째, 고용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제언

○ 따라서 여기서 고용영향의 의미는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에 따른 고용의 창출 및 유지, 인적자원개발, 인력의 양성 및 공급이라는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Ⅰ. 업종현황

1. 우리나라에서 귀사가 속한 업종의 특성은 다음 중 어디에 가장 가깝습니까?

(1) 제품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초기 단계에 있다.
(2) 제품시장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단계에 있다.
(3) 제품시장의 규모가 정체되는 성숙 단계에 있다.
(4) 제품시장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쇠퇴 단계에 있다.

2. 귀사가 속한 업종의 경우,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까?

(1) 30% 미만 수준 (2) 30- 50% 수준 (3) 50- 70% 수준 (4) 70 - 90% 수준
(5) 90-100% 수준

3. 귀사가 속한 업종의 경우, 우리나라가 갖는 장점이 무엇입니까? 다음 각 문항에 대해 5점척도로 평가해 주십시오.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저임금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 )
(2) 한국에서의 생산원가가 상대적으로 낮다………… ( )
(3) 한국시장의 규모가 크다………………………………( )
(4) 중국 등 인근 아시아시장의 규모가 크다………… ( )
(5) 한국에서 고품질 생산과 고생산성이 가능하다……( )
(6)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 )

4. 우리나라에 제조공장을 두고 귀사와 경쟁을 하고 있는 주된 경쟁업체의 수는 몇 개 정도입니까?

[ ] 개

5. 우리나라에 직접투자 방식으로 진출해있지 않지만 무역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외국의 경쟁사들도 존재합니까?

(1) 예([ ] 개) (2) 아니오

6. 귀사의 기술력은 국내의 다른 경쟁기업들에 비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1) 최저의 경쟁력 (2) 중하위 경쟁력 (3) 중간 수준의 경쟁력 (4) 중상위 경쟁력
(5) 최고의 경쟁력

7. 다음의 경쟁요소들에서 귀사가 국내의 다른 경쟁기업들에 비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7-1. 가격 경쟁력:

(1) 매우 낮음 (2) 낮은 편 (3) 비슷함 (4) 높은 편 (5) 매우 높음

7-2. 품질 경쟁력:

(1) 매우 낮음 (2) 낮은 편 (3) 비슷함 (4) 높은 편 (5) 매우 높음

8. 귀사의 최근 3년간 다음의 재무 상태를 아래의 표에 적어주십시오

연도	총자산	유형고정자산	매 출 액	수출액	수입액
2006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2007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2008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2009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9. 귀사의 연도별 인력현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영업/	연구개발 기술직	생산/기능/단순노무직
2006	명	명	명
2007	명	명	명
2008	명	명	명
2009	명	명	명

10. 2009년말 기준 귀사의 인력현황을 고용형태별로 적어주십시오

	사무/관리/영업/	연구개발 기술직	생산/기능/단순노무직
정규직근로자	명	명	명
비정규직근로자	명	명	명

※ 비정규직이라 함은 계약직근로자, 임시직근로자, 파견근로자, 촉탁, 파트타임, 하청근로자를 말하며 정규직 근로자는 이외에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11. 2009년말 기준 귀사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몇 년 정도입니까? ☐ **년**

12. 2009년말 기준 귀사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은 몇 세 정도입니까? ☐ **세**

13. 2009년말 기준 귀사에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 %

Ⅱ. 외국인직접투자의 내용

1. 귀사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은 어떤 형태입니까?

(1) 그린필드형　　　　(2) M&A형

1-1. 현재의 외국자본이 귀사에 처음 직접투자를 시작한 것은 언제입니까?

[　　　　] 년

1-2. 다음의 연도들에서 귀사의 납입자본금 총액과 외국인직접투자 자본의 비율을 적어주십시오.

연도	납입자본금 총액	외국인직접투자 비율
2000년 말	억원	%
2003년 말	억원	%
2006년 말	억원	%
2009년 말	억원	%

1-3. 귀사(한국법인)의 경영권은 다음 중 어느 쪽에 있습니까?

(1) 국내 자본 ☞ 1-4로 가시오　　　　(2) 외국 자본 ☞ 1-3-1로 가시오

※ 경영권이란 대내적으로는 종업원을 지휘·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며 대외적으로는 자기의 경영 이해와 자주성을 주장하고 경영의 유지·발전을 도모하는 권한임.

1-3-1. 외국자본이 경영권을 획득할 당시 투자방식은 다음 중 어떤 것이었습니까?

(1) 신규 설립 방식　　　　(2) 인수 합병

1-4. 귀사에 직접투자를 가장 많이 한 외국회사의 본사는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영국　(5) 프랑스　(6) 기타 (________________)

1-5. 외국자본의 한국 투자(진출) 동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에 대해 귀사에 투자한 외국 자본이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저임금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2) 한국 정부의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 )
(3) 한국에서의 생산원가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 )
(4)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시장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 )
(5) 중국 등 아시아시장에 대한 전진기지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 )
(6) 비교적 높은 투자수익률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 )
(7) 한국에서 고품질 생산과 고생산성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
(8)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2. 2009년 현재 귀사의 외국자본이 한국에 대한 투자에 매력을 느끼는 가장 큰 요소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1) 한국시장의 규모 (2) 중국이나 아시아 시장진출의 교두보로서의 위치와 조건
(3) 양질의 노동력 (4) 사회 간접자본의 질 (5) 한국정부의 특혜조치
(6) 우수한 연구개발역량 (7) 저임의 노동력 (8) 기타______________
(9) 전혀 매력을 느끼고 있지 않다

3. 귀사는 우리나라에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 금융업처럼 산업특성상 제조공장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3번을 체크해주십시오

(1) 그렇다 ([ ]개) (2) 아니다
(3) 산업의 특성상 제조공장이 필요 없다

3-1. 국내에서 귀사의 주된 사업내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국내시장을 겨냥한 생산 및 판매
(2) 아시아 혹은 국제시장을 겨냥한 생산 및 판매
(3)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신제품개발 및 생산

4. 다음 보기 중 귀사가 한국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중 가장 크게 애로를 느끼는 점 3가지와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 3가지를 골라서 우선순위대로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4-1) 경영활동을 하는 중 애로사항: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4-2) 시급하게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항: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보기>

(1) 행정절차 및 정부서비스	(2) 국내 금융자금 조달 시스템
(3) 전기·통신·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4) 문화·사회적 관행 차이에 따른 의사소통문제
(5) 근로자의 생산성	(6) 임금수준
(7) 근로자 복리후생(퇴직금 포함)	(8) 한국 내 시장상황
(9) 전반적 노사관계	(10) 정치·사회적 환경
(11) 인재확보	(12) 우대정책 및 투자인센티브
(13) 규제 및 법령	(14) 노조의 경영권 참여요구
(15) 근로자의 영어소통 능력	(16)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17) 파견근로자 고용기간 제한	(18) 근로자의 직무전문성
(19) 보훈대상자 의무채용 비율	(20)세무행정 등 조세제도
(21) 기타( )	

---

5. 귀사의 향후 투자계획은 어떻습니까?

(1) 한국내에서 사업규모를 확장 ☞ 6으로 이동
(2) 현 사업규모를 유지 ☞ 6으로 이동
(3) 사업규모를 축소 ☞ 6으로 이동
(4) 제3국으로 신규사업장 물색

5-1. 만약 사업장을 아시아권의 다른 나라로 옮긴다면, 어느 나라를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선택할 것이라고 추측하십니까?

(1) 중국 (2) 말레이시아 (3) 싱가포르 (4) 인도네시아 (5) 베트남
(6) 태국 (7) 대만 (8) 일본 (9) 필리핀 (10) 홍콩
(11) 기타(____________________)

5-2. 앞의 신규투자 후보국에 대한 투자 이유로서 가장 중요한 요인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1) 행정절차와 정부규제의 유연성 (2) 금융자본 비용 (3) 사회간접자본
(4) 근로자의 생산성 (5) 임금수준의 적정성 (6) 시장의 규모
(7) 시장의 성장가능성 (8) 노사관계의 안정성 (9) 사회정치적 안정성
(10) 우수인력 확보 (11) 기타 (____________________)

6.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결정이나 장기적 사업계획의 결정에 있어 한국의 노사관계가 어느 정도 고려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중요하게 고려된다 (2) 약간 중요하게 고려된다
(3) 별로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다 (4)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7. 귀사의 올해 한국 투자 실적은 지난 3년간 평균과 비교할 때 어떠했습니까?

(1) 확대☞ 7-1로 이동 (2) 축소☞ 7-2로 이동 (3) 비슷함☞ 8로 이동

7-1. 올해 투자확대의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 노사관계 제도의 선진화 (2) 신제품개발 및 신규사업추진 (3) 노후설비 교체 수요 증가
(4) 내수 및 수출 호조 전망 (5) 투자환경 개선 기대감 (6) 기타____________

7-2. 올해 투자축소의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 불안한 노사관계 (2) 투자자금 조달애로 (3) 경기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
(4) 기타____________

8. 다음은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매우 열악	다소 열악	보통이다	다소 우수	매우 우수
	1	2	3	4	5

(1) 시장잠재력························( ) (7) 행정규제 완화····················( )
(2) 투자수익성························( ) (8) 법 · 제도의 일관성/투명성 ···( )
(3) 지리상의 이점 ···················( ) (9) 인력 및 노무환경 ··············( )
(4) 인적자원수준······················( ) (10) 금융환경························( )
(5) IT 정보화 수준····················( ) (11) 조세환경························( )
(6) 투자 인센티브제도··············( ) (12) 주거환경························( )

9. 다음은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개선해야 할 투자인프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투자인프라를 다음 보기 중에서 모두 골라주십시오.

(1) FTA 등 대외개방 확대　(2) 투자인센티브제도 확대
(3) 유연하고 탄력적인 노동시장 구축　(4) 도로/항만/통신 등 SOC 확대
(5) 전문지식을 갖춘 우수인력 확보　(6) 금융 및 자본시장 발전
(7)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8) 국내 정주여건 개선

10. 다음은 외국인투자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급하게 시행해야할 정책과제를 다음 보기 중에서 모두 골라주십시오.

(1) 규제완화　(2) 조세지원 확충/제도 간소화　(3) 금융지원 확충
(4) 산업입지 지원 및 규제간소화　(5) 적정인력수급의 어려움　(6) 세제혜택 증가
(7) 환율안정정책 시행　(8) 인허가 규제완화　(10) 일관된 외국인투자 정책 필요
(11) 기타(구체적으로)

11. 귀사가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 부지확장의 어려움　(2) 교통불편 및 체증　(3) 도심지역과 접근성이 떨어짐
(4) 소음 진동 등 공해　(5) 배후도시 형성 미흡　(6) 연관기업과 접근성이 떨어짐
(7) 입지규제　(8) 기타 (구체적으로)

Ⅲ.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고용영향평가

1.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목표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평가

가. (목표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이 국민경제의 발전 및 고용창출이라는 목표에 얼마나 적합하며 이러한 목표가 실현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목표의 적합성	1) 국민경제에 기여	5	4	3	2	1
	2) 고용영향에 기여	5	4	3	2	1
실현 가능성	1) 국민경제에 기여	5	4	3	2	1
	2) 고용영향에 기여	5	4	3	2	1

나. (고용영향목표 고려여부)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정책의 계획 및 목표 내에 고용영향(고용유지 및 창출, 인적자원개발,인력의 양성 및 공급)이 고려되어 있습니까?

(1) 고려하고 있다 (2) 고려하고 있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다. (고용영향목표 고려방안)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목표에 고용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요?

(1) 매우 그렇다 (2) 다소 그렇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2.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추진체계의 적절성 평가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을 설정하고 조세감면, 관세혜택, 임대료감면 등과 같은 입지지원정책과 더불어 현금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정책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가. (필요성) 귀하는 다음과 같은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입지지원정책	5	4	3	2	1
현금지원	5	4	3	2	1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	5	4	3	2	1

나. (지원요건의 적절성) 귀하는 다음과 같은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의 지원요건 및 대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입지지원정책	5	4	3	2	1
현금지원	5	4	3	2	1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	5	4	3	2	1

다. (지원수준의 적절성) 귀하는 다음과 같은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의 지원내용(지원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입지지원정책	5	4	3	2	1
현금지원	5	4	3	2	1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	5	4	3	2	1

라. (지원체계의 적절성) 귀하는 다음과 같은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의 지원체계(신청절차 등 행정체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입지지원정책	5	4	3	2	1
현금지원	5	4	3	2	1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	5	4	3	2	1

마. (고용영향의 고려) 다음과 같은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지원요건이나 지원결정시 평가항목, 그리고 지원에 따른 의무내용에서 고용영향(고용창출이나 교육훈련 등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고려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여부
입지지원정책	예( ) 아니오( )
현금지원	예( ) 아니오( )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	예( ) 아니오( )

바. (사업집행과정의 적절성)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이 잘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다소 그렇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사. (추진체계 내에 고용영향 고려의 필요성)귀하가 생각하기에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사업의 추진체계에 고용영향(고용창출 및 유지, 인적자원개발, 인력의 양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다소 그렇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3.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평가

가.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확산)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성과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다소 그렇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나. (성과관리에서 고용영향의 고려여부) 외국인투자유치의 성과관리에서 고용영향평가요소가 고려되어 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3) 잘 모르겠다

다. (사후관리, 책임관리체계)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는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사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다소 그렇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라.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에서 고용영향평가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3) 잘 모르겠다

4.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 정책의 고용효과제고를 위한 종합 의견

가.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이 전반적으로 국민경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해당 지역산업의 연관효과 제고 및 고용창출효과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국민경제에 기여	5	4	3	2	1
2) 고용효과(고용창출 및 유지, 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등)	5	4	3	2	1

나. 귀사에서 생각하기에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이 고용창출효과와 관련하여 가장 큰 애로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가령, 우수인력 확보 등).

다.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이 기업의 고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사업내용에서 어떤 제도적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라.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이 고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노동시장정책(교육훈련, 지역 내 인력양성, 빈일자리채우기 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마. 만일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귀사의 고용은 현재보다 얼마나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고용창출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다
(2) 5% 미만 고용이 증가할 것이다
(3) 5-10%미만 고용이 증가할 것이다
(4) 10-20% 미만 고용이 증가할 것이다
(5) 30% 이상 고용이 증가할 것이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심층조사

ID				

현재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기관에서는 **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의 고용영향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심층조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우리나라 외국인 외국인투자정책의 활성화 및 내국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 5월

주 관 기 관: 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협 조 기 관: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관련기관
연구 책임자: 연세대학교 최강식 교수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 당 자: (주)아이알씨
▶ 회 신 처:

※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통계분석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관명		주소	시(도) 구(시/군) 동(면) 번지
소속부서		응답자 연락처	
응답자 성명/직급	(임원) / (e-mail)		
	(실무담당자) / (e-mail)		

※ LIST ID	※ 조사원	※ 검토자1	※ 검토자2	※ 검토자3

Ⅰ. 조사대상 기관 개요

1. 외국인투자 및 무역관련 특별지역 중 해당되는 부분

외국인투자지역	(1) 단지형 ( ) (2) 개별형 ( )
자유무역지역	(1) 산업단지형( ) (마산, 군산, 대불, 익산, 동해, 율촌, 울산 (2) 공항, 항만 물류형( ) (공항: 인천국제공항, 항만 물류형: 인천, 부산, 광양, 포항)
경제자유 구역	(1) 인천( ) (2) 부산·진해( ) (3) 광양( ) (4) 황해(평택·당진)( ) (5) 전북(새만금·군산)( ) (6) 대구경북(구미·경산·영천)( )

Ⅱ.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정책의 고용영향평가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투자유치 및 무역관련 특별지역을 지정하거나 세제지원, 입지지원, 현금지원,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본 심층조사는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고용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고용영향평가의 목적은 국가·지자체의 주요 사업·정책 및 법·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고용친화적 정책추진을 지원하는데 있으며 평가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책의 고유목표 달성도 및 정책과 고용과의 연계성 검토 결과
둘째, 해당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증감 수 및 질
셋째, 고용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제언

○ 따라서 여기서 고용영향의 의미는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에 따른 고용의 창출 및 유지, 인적자원개발, 인력의 양성 및 공급이라는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1.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목표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평가

가. (목표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가-1.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이 국민경제의 발전 및 고용창출이라는 목표에 얼마나 적합하며 이러한 목표가 실현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목표의 적합성	1) 국민경제에 기여	5	4	3	2	1
	2) 고용영향에 기여	5	4	3	2	1
실현 가능성	1) 국민경제에 기여	5	4	3	2	1
	2) 고용영향에 기여	5	4	3	2	1

가-2. 위 문항에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현실적으로 기여도가 낮다고 생각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 또는 기여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
국민경제 측면	
고용영향 측면	

나. (고용영향목표 고려여부)

나-1.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정책의 계획 및 목표 내에 고용영향(고용유지 및 창출, 인적자원개발, 인력의 양성 및 공급)이 고려되어 있습니까?

(1) 고려하고 있다 (2) 고려하고 있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나-2. 위 문항에서 고용영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고용영향목표 고려방안)

다-1.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목표에 고용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요?

(1) 매우 그렇다 (2) 다소 그렇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다-2.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정책이 해당 투자지역이나 투자기업의 고용영향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목표 및 계획의 내용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추진체계의 적절성 평가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을 설정하고 조세감면, 관세혜택, 임대료감면 등과 같은 입지지원정책과 더불어 현금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정책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가. (필요성) 귀하는 다음과 같은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입지지원정책	5	4	3	2	1
현금지원	5	4	3	2	1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	5	4	3	2	1

나. (지원요건의 적절성) 귀하는 다음과 같은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의 지원요건 및 대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입지지원정책	5	4	3	2	1
현금지원	5	4	3	2	1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	5	4	3	2	1

나-1. 지원요건이나 대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 및 개선방안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정책	지원요건이나 대상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및 개선방안
입지지원정책	
현금지원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	

다. (지원수준의 적절성) 귀하는 다음과 같은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의 지원내용(지원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입지지원정책	5	4	3	2	1
현금지원	5	4	3	2	1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	5	4	3	2	1

다-1. 지원내용(지원수준, 지원방식, 지원기간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 및 개선방안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정책	지원내용(지원수준)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 및 개선방안
입지지원정책	
현금지원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	

라. (지원체계의 적절성) 귀하는 다음과 같은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의 지원체계(신청절차 등 행정체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입지지원정책	5	4	3	2	1
현금지원	5	4	3	2	1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	5	4	3	2	1

라-1. 지원체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 및 개선방안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정책	지원체계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및 개선방안
입지지원정책	
현금지원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	

마. (고용영향의 고려) 다음과 같은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지원요건이나 지원결정시 평가항목, 그리고 지원에 따른 의무내용에서 고용영향(고용창출이나 교육훈련 등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고려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여부	고요영향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입지지원정책	예(　) 아니오(　)	
현금지원	예(　) 아니오(　)	
외국인투자유치활동지원	예(　) 아니오(　)	

바. (사업집행과정의 적절성)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이 잘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다소 그렇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바-1. (위 문항에서) 잘 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 (추진체계 내에 고용영향 고려의 필요성)귀하가 생각하기에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사업의 추진체계에 고용영향(고용창출 및 유지, 인적자원개발, 인력의 양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다소 그렇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사-1. 고용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 추진체계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평가

가.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확산)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성과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다소 그렇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가-1. (위 문항에서) 잘 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과관리에서 고용영향의 고려여부) 외국인투자유치의 성과관리에서 고용영향평가요소가 고려고려되어 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3) 잘 모르겠다

나-1. (위 문항에서) 성과관리에 고용영향평가가 고려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나-2. (위 문항에서) 성과관리에 고용영향이 고려되어 있지 않거나 되어 있더라도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면 성과관리를 통해 고용영향에 따른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가능성 및 구체적인 방안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후관리, 책임관리체계)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는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1) 매우 그렇다 (2) 다소 그렇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다-1. (위 문항에서) 잘 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2.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에서 고용영향평가를 고려하고 있는가?

(1) 그렇다 (2) 아니다 (3) 잘 모르겠다

다-3. (위 문항에서)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에서 고용영향평가가 고려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4. (위 문항에서) 고용영향평가를 고려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고려하고 있더라도 미흡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사후관리 및 책임관리체계의 강화를 통해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가능성 및 구체적인 방안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 고용영향에 대한 종합 의견

가.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이 전반적으로 국민경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해당 지역산업의 연관효과 제고 및 고용창출효과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국민경제에 기여	5	4	3	2	1
2) 고용효과(고용창출 및 유지, 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등)	5	4	3	2	1

나.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의 고용효과를 제고함에 있어 가장 애로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 내 인력수급 문제 등

다.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 정책의 고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1. 사업의 목표나 추진체계 또는 집행과정 및 성과관리에 고용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각종 인센티브, 행정절차체계, 지원요건의 연계 등).

다-2. 고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노동시장정책(교육훈련, 지역 내 인력양성, 빈일자리채우기 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3. 고용효과(인적자원개발,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창출)를 제고하도록 사업내용이 개선된다면 현재에 비해 고용창출이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1) 고용창출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다.
(2) 현재보다 고용창출이 5% 미만 증가할 것이다
(3) 현재보다 고용창출이 5-10%미만 증가할 것이다
(4) 현재보다 고용창출이 10-20% 미만 증가할 것이다
(5) 현재보다 고용창출이 20-30% 미만 증가할 것이다
(6) 현재보다 고용창출이 30% 이상 증가할 것이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부록 Ⅲ> 부표

<부록 1> 행태별 외국인직접투자실적

(단위: 미화 천불)

	1기(1990년-1995년)			
	M&A형		Greenfield형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농 · 축 · 수산 · 광업	0	0	13	33,110
제조업	0	0	1,674	3,907,746
서비스업	1	22,561	1,684	3,318,320
전기 · 가스 · 수도 · 건설	0	0	47	142,606
	2기(1996년-2001년)			
	M&A형		Greenfield형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농 · 축 · 수산 · 광업	6	2,497	64	331,539
제조업	588	10,962,060	3,372	17,212,891
서비스업	611	4,707,529	8,169	25,611,771
전기 · 가스 · 수도 · 건설	42	769,477	167	1,533,970
	3기(2002년-2008년)			
	M&A형		Greenfield형	
	신고건수	신고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농 · 축 · 수산 · 광업	7	3,414	71	28,045
제조업	925	8,607,568	3,685	14,676,105
서비스업	1,327	18,282,490	15,769	28,046,106
전기 · 가스 · 수도 · 건설	63	795,763	291	2,960,931

자료: 지식경제부

<부표 2> 주요 국가별 국내유입 외국인직접투자실적

(단위: 미화 백만달러)

국가명	1기(1990년-1995년)		2기(1996년-2001년)		3기(2002년-2008년)	
	건수	신고금액	건수	신고금액	건수	신고금액
미국	920	2,311	3,036	17,577	3,425	18,509
일본	1,265	1,756	2,441	6,023	3,661	10,614
네덜란드	138	1,048	363	8,690	515	7,092
영국	114	270	267	1,398	510	6,202
독일	175	392	449	4,324	601	3,454
싱가포르	59	120	277	2,176	542	3,139
프랑스	95	212	238	2,663	362	2,677
몰타	0	0	0	0	59	2,417
벨기에	15	34	45	851	101	2,371
중국	123	26	2,534	193	3,319	2,294
케이만군도	5	22	60	1,581	260	1,765
홍콩	112	198	280	1,103	555	1,738
호주	23	18	107	379	195	1,277
말레이시아	15	223	445	5,644	249	1,094
캐나다	28	27	177	2,624	310	973
아일랜드	19	238	96	1,114	101	898
룩셈부르크	9	4	56	120	114	885
스웨덴	40	45	60	379	69	823
스위스	87	158	165	557	159	686
버진아일랜드	30	35	177	461	303	541

자료: 지식경제부

<부표 3> 산업별 고용・취업유발계수[1)]

(단위: 명/10억원)

	1995년		2000년		2005년	
	고용	취업	고용	취업	고용	취업
농림수산품	13.853	91.381	7.6674	67.7026	7.2265	51.0575
광산품	19.075	21.947	9.8615	12.0886	8.2992	10.445
음식료품	18.339	49.482	9.4731	35.8852	7.9612	24.6625
섬유 및 가죽제품	32.828	40.853	17.0296	21.4441	13.2125	17.1978
목재 및 종이제품	18.715	22.872	11.2047	14.8242	9.416	12.2877
인쇄 및 복제	30.562	36.226	19.1738	25.3704	13.0314	17.0803
석유 및 석탄제품	3.199	3.987	1.0606	1.371	0.7495	0.9745
화학제품	17.224	20.98	8.889	11.388	6.6567	8.4796
비금속 광물제품	22.714	26.19	11.8826	14.5522	8.8065	11.044
제 1차 금속제품	12.452	15.021	6.2308	7.8068	4.0323	5.147
금속제품	23.976	28.278	14.4328	18.5242	10.0335	12.8786
일반기계	22.072	25.809	13.0858	16.1051	9.964	12.238
전기 및 전자기기	18.451	21.427	8.1297	10.0849	6.8913	8.3386
정밀기기	27.583	31.898	15.6259	19.0332	11.5809	13.8983
수송장비	19.419	22.656	11.56	14.1141	8.1966	9.9315
기타제조업제품	32.414	37.885	16.4588	22.4874	12.1777	16.4042
전력, 가스 및 수도	10.417	11.941	4.968	5.6837	3.1707	3.633
건설	27.319	31.578	17.8705	20.8467	14.8328	16.6238
도소매	25.506	62.982	20.1946	46.5473	15.1736	30.4302
음식점 및 숙박	86.679	196.24	19.8199	49.9831	16.457	37.7961
운수	23.012	30.418	13.8888	19.453	10.7084	15.4261
통신 및 방송	15.726	17.81	7.5676	10.0748	7.5265	9.6727
금융 및 보험	33.208	36.255	14.6167	15.9142	9.5998	10.4558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4.981	20.53	8.4907	10.9436	9.8403	11.6914
공공행정 및 국방	33.94	38.34	18.6958	20.6936	12.9535	14.7105
교육 및 보건	30.311	36.344	22.6008	26.7551	17.3695	20.1819
사회 및 기타서비스	38.555	71.735	20.7077	40.166	15.4515	24.8593
기타	29.752	69.941	13.6202	32.0695	12.5653	27.7557

자료: 한국은행, 『2005년 산업연관표』